

2014. 2

충청남도 지적사

충청남도

제 출 문

충청남도 도지사 귀하

본 결과물을 『충청남도 지적사』 편찬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4. 02. 06.

신흥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 구 진

책임연구원	신흥대학교	교 수	김추윤
연 구 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전 교수	류병찬
연구보조원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김별
보조원	신흥대학교	조교	고새잎

▣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서기관	손종영
예산군청	부군수	이종연
충남도청	토지관리과장	김덕만
도립청양대학	교수	이동현
명지전문대학	교수	지종덕
충남도청	전 지적과장	류광위

목 차

◆ 발간사
○ 도지사

◆ 축사
○ 도의회의장

◆ 화보(사진으로 본 충청남도사)
○ 새로 이사 온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주요기관의 전경 사진, 도청 주변의 전경을 찍은 항공사진 1장
○ 도 상징물 : 도목, 도화, 도조 등

◆ 화보(사진으로 본 충청남도 지적사)
○ 충청남도 지적과 업무 집무 모습
○ 대한지적공사 충청남도본부 건물 및 집무 모습
○ 지적관련 옛 지도(고지도, 과세지견취도, 관내 현황도 등)
○ 지적도부(양안,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등)
○ 측량기준점(1등~4등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등)
○ 지적측량도구(죽척, 나침반, 자, 측량기구 등)
○ 일제시 만든 삼각망도, 일제시 측량모습 사진 등
○ 지적관련 표창패, 감사패 등
○ 지적관련 문헌, 행정자료집, 지적서고 등 사진
○ 지적의 날 행사 사진
○ 지적상징표시석 준공 행사 사진
○ 기타 이소연과의 MOU 체결 홍보사진 등

◆ 표 목차

◆ 그림 목차

제1편 지적제도의 기원과 창설사

제1장 지적의 어원과 정의
제1절 지적의 어원
제2절 지적의 정의
제3절 지적이란 용어의 사용 연혁

제2장 지적제도의 기원
제1절 고조선 시대
제2절 부족국가 시대
제3절 삼국시대
1. 백제
1.1 건국과 멸망
1.2 지적관련 제도
1.2 백제의 도성과 측량기원
1.3 백제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1.4 백제 자<尺>의 기원과 개량
1.5 백제 왕경 부여의 조방제(條坊制)
1.6 백제 측량기술의 일본전파
2. 고구려
3. 신라
제4절 고려시대

제3장 지적제도의 태동과 창설
제1절 지적제도의 태동
1. 조선시대
2. 대한제국 시대
제2절 지적제도의 창설
1. 탁지부 토지조사국 설치
2. 관습조사 실시
3. 과세지견취도 작성
4. 토지조사사업
5. 삼림조사와 임적조사
6. 임야조사사업
7. 토지조사기념비
8.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평가

제2편 지적법령·4대 운영체제·지적공부의 변천사

제4장 지적관련 법령의 변천 연혁
제1절 조선 시대
제2절 대한제국 시대
제3절 일제 시대
제4절 광복 후 시대

제5장 지적제도 4대 운영체제의 변천 연혁
제1절 지적행정조직
1. 조선 말기
2. 대한제국 시대
3. 일제 시대
4. 광복 후 시대
제2절 지적측량조직
1. 대한제국 시대
2. 일제 시대
3. 광복 후 시대
제3절 지적교육조직
1. 대한제국 시대
2. 일제 시대
3. 광복 후 시대
제4절 지적연구조직
1. 대한지적협회 시대
2. 대한지적공사 시대
3.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 시대

제6장 지적공부의 변천과 전산화사업의 추진 연혁
제1절 지적공부의 변천
1. 지적대장
2. 지적도면
제2절 지목의 변천
1. 지목의 의의
2. 지목의 분류
3. 지목의 구분연혁
4. 지목의 표기
제3절 지적전산화사업의 추진

1. 지적대장의 전산화
2. 지적도면의 전산화

제3편 충청남도의 지적행정사

제7장 지적제도 3대 운영체제의 변천 연혁
제1절 지적행정 조직
1. 충청남도
2. 시・군
제2절 지적측량 조직
1. 조선지적협회
2. 대한지적공사
3. 지적측량업자
제3절 지적교육 조직
1. 경성 명진측량강습소
2. 대전공과학원
3. 충남도립청양대학
4. 지적연수원의 충남이전 추진

제8장 지적전산화사업 추진 연혁
제1절 지적대장의 전산화
1. 제1차 시범사업
2. 시・군확산사업
제2절 지적도면의 전산화
1. 제1차 시범사업
2. 시・군확산사업

제9장 신도시 건설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제2절 내포신도시

제10장 지적관련 우수 시책
제1절 지적・임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제2절 해안 미등록토지 일제조사등록 사업
제3절 지적・임야도 동일축척화 사업
제4절 지적문서관리시스템(CAMS) 구축사업

제5절 도로명 주소 도입 시범사업
제6절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시범사업
제7절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
제8절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구축 시범사업
제9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MOU 체결사업
제10절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비사업
제11절 그린지적 민원시스템구축 시범사업
제12절 지적측량 기준 상징물 설치
제13절 뉴새마을운동・자원봉사
제14절 제36회 지적의 날 행사
제15절 디지털 지적측량달인 경진대회
제16절 아신시 중심점표시 설치

제11장 지적관련 주요 업무
제1절 당진 대호지구 신규등록
제2절 서산 A・B지구 신규등록 사업
제3절 충남 양지회 운영 및 지적장학 사업
제4절 지적세미나 개최

제12장 지적관련 질의 및 회신
제1절 국토교통부
제2절 행정안전부
제3절 법무부
제4절 국토지리정보원
제5절 충청남도

제13장 지적관련 주요 판결
제1절 충청남도 관련 판결
1. 구한말 민사판결
2. 조선고등법원 판결
3.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제2절 전국 지적관련 대법원 판결
제3절 헌법재판소 판결

제14장 지적관련 주요 유관기관
제1절 충남의 지적관련 유관기관
1. 한국도량형 박물관

2.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표준연구원
제2절 전국의 지적관련 유관기관
1. 지적박물관
2. 측량박물관
3. 지도박물관
4. 토지주택박물관

제15장 지적관련 주요 인물
제1절 고대
제2절 근대
제3절 현대

제16장 언론에 비친 충청남도의 지적사
제1절 지적공부
제2절 지적측량
제3절 지적재조사
제4절 도로명 주소 및 기타

제17장 충청남도 지적의 향후 발전방향
제1절 2020지적행정발전계획
제2절 지적박물관 설립으로 역사적 자료의 영구 보존

<부 록>

1. 『충청남도 지적사(地籍史)』에 남기고 싶은 말
1.1 지적직공무원
1.2 대한지적공사 직원
1.3 지적측량업자
1.4 퇴직지적인
1.5 대학교수

2. 지적관련 통계
2.1 시·군별 지적공부 보존 현황(대장)
2.2 시·군별 지적공부 보존 현황(공유지연명부)

2.3 시·군별 지적공부 보존 현황(도면)
2.4 시군별・연대별 지적통계(수치측량지역 포함)
2.5 시군별・연대별 지적통계(수치측량지역)
2.6 시군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현황
2.7 시군별・연대별 토지이동정리 현황

3. 충청남도 지적인명록
3.1 지적공무원
3.2 대한지적공사 직원
3.3 지적측량업자
3.4 퇴직 지적공무원
3.5 퇴직 지적공사 직원

<참고문헌>

<편집후기>

제1편 지적제도의 기원과 창설사

제1장 지적의 어원과 정의

제1절 지적의 어원

지적(Cadastre)이란 용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으나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과 라틴어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두 가지 학설이 지배적이다.

프랑스의 어원(語源)학자인 브론데임(Blondheim)은 "지적(地籍 : Cadastre)이란 용어는 공책(Note Book) 또는 상업기록(Business Record)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

스페인의 국립농업연구소 일머(Ilmoor D.) 교수도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카타(Kata)는 "위에서 아래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스티콘(Stikhon)은 "부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합어로서 Katastikhon은 "위의 군주(君主)가 아래의 신민(臣民)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풀이하였다.[2)]

미국의 퍼듀대학 맥엔트리(J. McEntyre) 교수는 지적이란 2000년 전의 라틴어 카타스트럼(Catastrum)에서 그 근원이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인의 인두세등록부(人頭稅登錄簿 : Head Tax Register)를 뜻하는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 혹은 카타스트럼(Catastrum)이란 용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

그리고 프랑스의 정모네 대학 스테판 라비뉴(Stephane Lavigne) 교수는 목록(List)을 뜻하는 라틴어인 카피트라스트라(Capitrastra)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토지 경계를 표시하는데 사용된 돌" 또는 "지도처럼 사용된 편암조각"이라는 고대 언어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주장하였다[4)].

그 밖에 세르비아어에서 카다스터(Cadastre)란 뜻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중국에서 지(地)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 표면의 육지 부분과 해양 간석지 및 내륙수역을 포함하며(地指土地, 爲地球表層的陸地部分, 包括海洋滩涂和內陸水域), 적(籍)은 부책・청책・등기를 일컫는다.(籍有簿冊・淸冊・登記之說)

1)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0, *Need for a Multipurpose Cadastre*, Washington : National Academy Press, p.5.

2) Ilmoor D. 1954, *Cadastro Agricola*, Instituto National Agronomico, p.1.

3) J. McEntyre, 1978, *Land Survey Systems*, New York: Purdue University, pp.3~4.

4) Stephane Lavigne, 1996, *Le Cadastre De La Franc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6.

5) 대한지적공사 역, 1983, 『외국의 지적제도』(스페인 편), p.189.

안사고(顔師古)[6]는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7] 중의 적리민마, 보차기마(籍吏民馬, 補車騎馬)에서 “적(籍)”을 “모든 사람들의 호구로 얻어지는 것이다.(籍者, 總入籍錄而取之)”라고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적을 간단이 요약하여 토지등기부(所以, 地籍最簡要的說法是土地登記冊)라고 해석하였다. 중국의 역사에서 적(籍)은 세금의 뜻으로 쓰였으며, 세(稅)는 적(籍)에서 유래하였다.

1979년에 출판된 『사해(辭海)』[8]에서 지적을 “중국 역대 정부의 토지등기로 토지세의 근거가 된 책(中國歷代政府登記土地作爲田賦根據的冊籍)”이라고 기술하고 있어,[9] 지적(地籍)은 과세(課稅)의 뜻으로 쓰였고, 과세(課稅)는 지적(地籍)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Wikipedia에는 “The word cadastre came into English through French from Late Latin capitastrum, a register of the poll tax, and the Greek κατάστιχον katastikhon, a list or register, from κατὰ στίχον kata stikhon—literally, ‘down the line’, in the sense of ‘line by line’ along the directions and distances between the corners mentioned and marked by monuments in the metes and bounds.

The word forms the adjective cadastral, used in public administration, primarily for ownership and taxation purposes. The terminology for cadastral divisions may include counties, parishes, ridings, hundreds, sections, lots, blocks and city blocks.

Other languages have kept the original t sound in the second syllable (examples: Italian catasto, German Kataster, Czech katastr, Spanish catastro). In modern Greek, though, it has been replaced by κτηματολόγιο /ktimato'logio/‘라고 기술하고 있다.[10]

위와 같이 지적의 어원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이 그리스어인 카타스티콘(Katastikhon)과 라틴어인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 카타스트럼(Catastrum) 또는 카피트라스트라(Capitrastra) 및 중국어인 적(籍)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지적의 어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모두 토지에 대한 과

6) 안사고(顔師古)는 중국 당나라 초기의 학자로서 『한서漢書』에 주석을 가함으로써 전대(前代)의 여러 주석을 집대성했다. 『한서漢書』의 주석은 그의 문자학(文字學)·역사학의 온축(蘊蓄)으로, 오늘날도 『한서漢書』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22391&mobile&categoryId, 2012.12.25.)

7) 『한서』(漢書)를 저술한 후한의 반고<班固(32년~92년), 1세기경 중국의 역사가이다.>는 「무제기武帝紀」에서 무제(武帝 기원전 156년~82년)인 유철(劉徹)를 “웅재대략(雄才大略)”의 인물이라고 평가했으며, 무제는 황제 시절에 영토 확장에 남다른 정열을 바쳤고 신분·지역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선발하여 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정을 처리했다.
(http://mybox.happycampus.com/theonejs86/5435064/?agent_type=naver, 2012.12.25.)

8) 『사해』(辭海)라 함은 중국의 어휘사전을 말하는데, 중국은 사전에도 '바다 해'자를 붙여 사해(辭海)라고 한다.

9) 林增杰 主編, 潭峻·詹長根·曲衛東 副主編, 2011, 『地籍學』, 北京, 科學出版社, p.3.

10) http://en.wikipedia.org/wiki/Cadastre(2013.2.10).

세・기록 또는 목록을 의미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지적(Cadastre)의 어원과 의의

학자	언어	어원	의의
Blondheim (프랑스)	그리스어	Katastikhon	공책(Note Book) 또는 상업기록(Business Record)
Ilmoor D. (스페인)		Katastikhon	위의(Kata) 군주가 아래의 신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Stikhon)하는 제도
J.G.McEntryre (미국)	라틴어	Capitastrum, Catastrum	인두세등록부(Head Tax Rehister)
Stephane Lavigne (프랑스)		Capitrastra	목록(List)
林增杰 (중국)	중국어	籍	과세(課稅)

제2절 지적의 정의

지적이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는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발달하여 왔는데, 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용어에 관한 개념 정의가 변화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의라 함은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정의를 할 때에는 첫째, 정의는 피정의물(被定義物)의 본질적 속성을 말하여야 하며, 둘째, 정의의 객어(客語) 중에 주어의 의미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셋째, 정의에 있어서는 부정을 사용하면 아니 되고 넷째, 정의에는 비유를 피하여야 하며, 다섯째, 정의는 타당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11)]
따라서 지적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부단히 노력해왔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도대체 지적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할 때 지적인(地籍人, Cadasral People) 누구나 자신 있게 “지적”이라는 용어의 본질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지적인들은 곤혹스러워 할 것이며,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용어에 관한 개념 정의가 변화하여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표준적인 정의가 없으며 시대별・국가별・학자별로 개인의 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는 지적제도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며, 한 나라의 풍속과 역사를 밝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제도(C’est Une Institution Vivante)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진화 발전하는 제도[12)]이기 때문이며,

11) 이홍구, 1989, 『학문론서설』, 서울, 경인문화사, pp.200~206.

12) Stephane Lavigne, 1996, op.cit.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3.

둘째, 법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소유에 관한 전통과 관행 및 제도가 서로 다르고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여부・소유권의 증명방법・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유형 등이 국가마다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측량방법과 절차・지적도부의 종류와 작성방법・지적도면의 축척과 표기방법・지적정리와 정보처리 방법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며
넷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독립된 지적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체계에 의하여 지적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이란 무엇이며? 지적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지적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에 관하여 오랜 세월동안 많은 학자들 간에 논의되어 왔지만 어느 국가 또는 어느 시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지적의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는 완전한 해답이 없다.[13]
이러한 사유로 국가별로 지적이란 용어를 각각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지적제도를 분석할 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14] 따라서 국제측량사연맹(FIG) 지적분과위원회에서 각국의 지적전문가들이 모여 지적과 측량사, 측량사의 업무영역 등에 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외 학자의 주장과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내용 및 각종 유명사전 등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학자

원영희(元永喜) 교수는 “지적이라 함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써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15]라고 정의하였다.
박순표 외 2인은 “지적이라 함은 토지의 표면이나 공중 또는 지하를 막론한 모든 부동산을 지적행정과 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운용하는 국가의 관리 행위”[16]라고 정의하였으며, 강태석은 “지적이라 함은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이다.”[17]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류병찬은 “지적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 등에 대한 물리적 현황(物理的現況)과 법적권리(法的權利), 제한사항(制限事項) 및 의무사항(義務事項) 등을 조사

13) 헤리 리차드슨(H. Richardson)이 지역에 관한 유일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외는 완전한 해답이 없다고 지적하였듯이(H. W. Richardson, 1973, Regional Economic Grawth, London : Macmillan, p.6.) 지적의 개념정의 역시 같은 입장이다.

14) UN, 1996, *Land Administration Guideline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New York and Geneva, p.5.

15) 원영희, 1972(a), 『해설지적학』, 서울, 보문출판사, p.33.

16) 박순표 외 2인, 1993, 『지적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p.6.

17) 강태석, 1994, 『지적측량학』, 서울, 형설출판사, p.2.

·측량하여 공적도부에 등록·공시하는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체계(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18]라고 정의하였다.

2. 국외 학자

미국의 퍼듀대학 맥엔트리(J.G. McEntyre) 교수는 "지적이란 국가기관에 의하여 구획된 행정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양과 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인 등록이다.(A Cadastre is Consider as an Official Register of Quantity, Value, and Ownership of Real Estate Within the Area Administered By a Governmental Unit)"[19]라고 정의하였다.

대만의 국립중흥대학 래장(來璋) 교수는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경계·종류·면적·권리상태 및 사용상태 등을 기재한 도책(圖冊)을 말한다.(所謂地籍, 卽指記載土地位置, 界址, 種類, 面積, 權利狀態, 及使用情形等的圖冊而言. 爲比而測繪的地圖, 稱爲地籍圖, 爲比而編造的淸冊, 稱爲地籍冊)"[20]라고 정의하였다.

영국의 해외개발부 심프슨(S.R. Simpson)은 "지적이란 과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양과 가격 및 소유권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다.(A Public Register of Quantity, Value, and Ownership of the Immovable Property in a Country Complied to Serve as a Basis for Taxation)"[21]라고 정의하였다.

네덜란드의 국제항공측량 및 지구과학연구원(ITC) 헨센(J. Henssen) 교수는 "지적이란 어떤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 소유권과 관계된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등록하는 것이다.(Cadastre is a Methodically Arranged Public Inventory of Data Concerning Properties Within a Certain Country or District)"[22]라고 정의하였다.

영국의 데일(P.F. Dale) 교수는 "지적이란 법적 측면에서는 필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록이고, 조세 측면에서는 필지의 가치에 관한 재산권의 등록이며, 다목적 측면에서는 필지의 특성에 관한 등록이다.(Judical, a Register of Ownership of Parcels of Lands ; Fiscal, a Register of Properties Recording Their Value; Multipurpose, a Register of Attributes of Parcels of Land)"[23]라고 정의하였다.

프랑스의 정 모네(Jean-Monnet)대학 스테판 라비뉴(Stephane Lavigne) 교수는 "지적이란 개인이나 집단 소유의 세무나 토지·법률·경제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18) 류병찬, 2001, 『최신지적학』, 서울, 건웅출판사, p.16.

19) J. McEntyre, 1978, op.cit., p.4.

20) 래장(來璋), 1981, 『土地行政學』, 臺北, 中國地政研究所, p.23.

21) S.R. Simpson, 1984, *Land Law and Registration*, London : Surveyors Publication, pp.3~4.

22) J. Henssen, 1987, "Administration and Legal Aspects of Land Registration/Cadastre", Netherlands, ITC, Lecture Note, p.10.

23) P.F.Dale and J.D.Mclaughlin, 1988, *Land Information Man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p.255.

있는 자세한 설명이 기록된 토지 소유권의 목록(Dans son sens le plus large le cadastre peut etre defini comme un inventaire de la propriete fonciere don't il donne une description plus ou moins detailee destaillee destinee a repondre aux besoines individuels ou collectifs notamment en matiere fiscale, fonciere, juridique et economique)"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토지 소유권의 목록은 도면으로 된 지적도(plans cadastraux)와 문자서류로 기록된 대장(registers)으로 구성되며, 특히 지적제도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며, 한 나라의 풍속과 역사를 밝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제도로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에 맞춰서 진화(evolution) 발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여,[24] 지적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다.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의 임증걸(林增杰) 교수는 "지적이란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토지에 대한 권리・경계・수량・토질・용도 등의 기본사항(지적의 5대요소라고 함)을 기재한 도책(指國家爲一定目的, 記載 土地的權屬・界止・數量・質量(等級)・利用途(地類) 等 基本狀況(或稱 地籍5大要所) 的圖簿冊)"이라고 정의하였다.[25]

3. 전문기관

1983년에 미국의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는 "지적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기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의 종류와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A Cadastre May be Defined as a Record of Interests in Land, Encompassing Both the Nature and Extend of These Interests)"[26]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 국제측량사연맹(FIG)은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권리와 제한사항 및 의무사항 등 이해관계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필지중심의 최신 토지정보시스템이다.(A Cadastre is Normally a Parcel Based and Up-To-Date Land Information System Containing a Record of Interests in Land(eg. Rights, Restriction and Responsibilities)"[27]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적은 필지를 기하학적으로 묘사하여 도면에 등록한 사항이 소유권 또는 토지가격 등을 기록한 다른 기록들과 연결되어야 하며, 토지에 대한 평가・균등한 과세 등 조세 목적(Fiscal Purposes)과 토지의 양도 등 법적인 목적(Legal Purposes)을 위하여 설립되고,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과 그 밖의 행정목적(Other Administrative Purposes) 및 토지 관리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창설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4) Stephane Lavigne, 1996, op,cit, pp.3~4.

25) 林增杰 主編, 潭峻・詹長根・曲衛東 副主編, 2011, 『地籍學』, 北京, 科學出版社, pp.3~4.

26)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3,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a Multipurpose Cadastre*, Washington: National Academy Press, p.13.

27) FIG, 1995, *Statement on the Cadastre*, Canberra, Australia, p.9.

4. 전문기관 발간 사전

1989년에 미국의 측량 및 지도제작학회(American Congress on Surveying and Mapping)에서 발간한 측량관련 용어사전에는 “지적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면적·가격 및 소유권에 관한 공적인 등록(An Official Register of the Quantity, Value, and Ownership of Real Estate, Used in Apportioning Taxes)”이라고 기술하여 웹스터사전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1993년에 독일의 측량 및 지도청(Surveying and Mapping in Germany)에서 발간한 용어사전에는 “지적(Real Estate Cadastre)이란 동종의 부동산에 대한 목록과 도해적인 표시의 총칭을 일컫는 말로 다른 단어들과 연계하여 부동산지적·와인지적·수렵지적·제방지적·도로지적 등과 같이 사용되며 이는 어떤 임의의 지적에 관한 중요한 내용과 목적 또는 형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Sammelbenennung für Verzeichnisse und graphische Darstellungen gleichartiger Gegenstönde, die meist in Wortverbindungen wie beispiels-weise → Liegenscha ftskata -ster, Weinbaukataster, jagdkataster, Deichkataster, Leitung-skataster, Sielk -ataster, StraBenkataster gebraucht wird, um den wesentlichen Inhalt, den Zweck oder die Form eines bestimmten Katasters zu bezeichnen)”라고 기술하고 있다.

5. 현대적·종합적 정의

지적의 정의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내외 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전문기관 및 유명 사전 등에서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에 대한 과세·기록·목록·장부·등록·도책·도부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자들의 주장과 전문기관 및 유명 사전 등에서 기술한 서로 다른 정의를 포괄하여 현대적이며 종합적이고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지적의 정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이라 함은 “토지(Land)와 그 정착물(Fixture) 등에 대한 물리적 현황(Physical Condition)·법적권리(Legal Rights)·제한사항(Restrictions)·의무사항(Responsibilities) 등을 조사(Investigation)·측량(Surveying)하여 공적도부(Public Map & Book)에 등록(Registration)·공시(Public Announcement)하는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체계(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라고 정의할 수 있다.[28)]

이상 설명한 지적에 관한 국내외의 정의를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지적에 관한 국내외의 정의

구분	연 구 자	발표년도	지 적 의 정 의
	원영희	1979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

28) 류병찬, 2006, 『최신지적학』, 서울, 한국지적연구원. p.53.

국내학자			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써 토지의 위치 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
	박순표 외 2인	1993	○토지의 표면이나 공중 또는 지하를 막론한 모든 부동산을 지적행정과 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운용하는 국가의 관리 행위
	강태석	1994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
	류병찬	2001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 제한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등록·공시하는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체계
외국학자	J.G. McEntyre (미국)	1978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과 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인 등록
	래장 (대만)	1981	○토지의 위치·경계·종류·면적·권리상태 및 사용상태 등을 기재한 도책
	S.R. Simpson (영국)	1984	○과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수량과 소유권 및 가격을 등록하는 제도
	J. Henssen (네덜란드)	1987	○국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등록하는 제도
	P.F. Dale 외 1인	1988	○법적측면에서는 소유권의 등록이고 조세측면에서는 필지의 가치에 관한 재산권의 등록이며 다목적 측면에서는 필지의 특성에 관한 등록
	Stephane Lavigne (프랑스)	1996	○개인이나 집단 소유의 세무나 토지·법률·경제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기록된 토지 소유권의 목록
	임증걸 (중국)	2011	○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토지에 대한 권리·경계·수량·토질(등급)과 용도(지류) 등의 기본사항을 기재한 도책
전문기관	National Research Council (미국)	1983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 종류와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
	FIG (국제측량사연맹)	1995	○토지에 대한 권리(Rights)와 제한사항(Restrictions) 및 의무사항(Responsibilities) 등 이해관계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필지중심의 현대적인 토지정보시스템
전문기관 발간사전	ACSM (미국)	1989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면적·가격 및 소유권리를 등록하는 공적인 제도
	SMG (독일)	1993	○동종의 부동산에 대한 목록과 도해적인 표시의 총칭
현대적·종합적 정의		2013	○토지와 그 정착물 등에 대한 물리적 현황·법적권리·제한사항·의무사항 등을 조사·측량하여 공적도부에 등록·공시하는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체계

출처 : 류병찬, 2006, 『최신지적학』, 서울, 한국지적연구원, p.54.

제3절 지적이란 용어의 사용 연혁

지적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토지에 관한 호적(戶籍), 토지에 관한 이력(履歷) 또는 토지 소유권에 관한 호적(Letat Civil de la Propriete Fonciere)'이라는 의미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29] 일반적으로 지적(地籍)은 토지에 관한 호적이라고 할 수 있

29) Stephane Lavigne, 1996, op.cit.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4.

으며, 등기(登記)는 토지 소유권에 관한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신분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주민등록 또는 호적제도라고 하며, 국민의 재산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지적 또는 등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구려의 전부(田簿)와 도부(圖簿), 백제의 전적(田籍)과 도적(圖籍), 신라의 장적(帳籍), 고려와 조선의 양안(量案) 등과 같이 오늘날의 지적공부와 유사한 도부를 작성한 기록이 있으나, 지적(地籍)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하였는가에 대하여는 학자와 전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적학(地籍學)의 창시자(創始者)이며 시조(始祖)인 원영희 교수는 1908년에 제정된 삼림법 제19조에서 최초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30]
류병찬은 원영희 교수 보다 13년 앞선 1895년 고종 32년에 반포(頒布)된 내부관제(1895. 3.26 칙령 제53호) 제8조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31]
이어서 송영준은 2007년에 조선시대에 기록한 일성록(日省錄)의 내용을 인용하여 류병찬 보다 17년 앞선 1878년(고종 15) 8월에 작성된 함경감사 김세균의 보고문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32]
류병찬은 2009년에 정제두(鄭齊斗)가 1700년대초 조선 후기에 저술한 하곡집(霞谷集) 제22권 차록(箚錄)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33]
이어서 조인연 외 4인은 2012년에 1599년(선조 32년)에 작성한 수교등록(受敎謄錄)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34]
지금까지 밝혀진 지적이란 용어의 사용연혁을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대한제국시대, 일제 시대, 해방 후 시대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1.1 경국대전(經國大典)

토지에 관한 호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35]이

30) 원영희, 1972(b), 『한국지적사』, 서울, 보문출판사, p.552.

31) 류병찬, 2006, 『최신지적학』, 서울, 한국지적연구원, p.47. ; 원영희・이원준, 1988, 『신부동산공시법요론』, 서울, 형설출판사, pp.111~112.에서 각각 "지적(地籍)"이라는 용어가 현대식 법률인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에 처음 등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보다 약 13년 전인 고종 32년에 내부관제(1895.3.26. 칙령 제53호) 제8조에서 지적(地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2) 송영준, 2007, "과세지견취도 작성사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류병찬, 2009, "지적(地籍)'이란 용어의 사용연혁에 관한 연구(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지적』, 대한지적공사, pp.10~12.

34) 윤병찬・조인연・곽인선・최윤수・고종식, 2012, "조선후기 지적의 연혁과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제28권 제2호, pp.188~189.

35)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 함은 조선왕조의 세조가 즉위하여 최항(崔恒), 노사신(盧 思愼), 강희맹(姜希孟) 등이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7년(1476년)에 완성하고, 16년(1485년)에 간행하였다. 경국대전은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의 국가 조직과 정치·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법전이다.

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에 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으로 세조의 명에 의하여 편찬에 착수하여 1460년(세조 6) 7월에 호전(戶典)[36]편을 완성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의 보완과 개정을 거쳐 1485년(성종 16)년에 최종 발간하였다.
경국대전 제2권 호전편(戶典編)에 호적에 관한 조문<戶籍條>과 양전(量田)에 관한 조문<量田條>이 각각 규정되어 있었다.
호적조에는 "호적은 3년마다 다시 만들어 호조와 한성부 도 및 읍에 비치한다.(每三年改戶籍 藏於本曹・漢城府・本道・本邑)"라고 규정하였으며, 양전조(量田條)에는 "모든 전지(田地)는 6등급으로 구분하고 매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토지에 관한 적(籍)을 만들어 호조와 도 및 읍에 비치한다.(凡田分六等 每二十年 改量成籍 藏於本曹・本道・本邑)."[37]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조문에서 "토지에 관한 적"이 바로 지적(地籍)임을 알 수 있다.

1.2 수교등록(受敎謄錄)

수교(受敎)라 함은 조선왕조 시대에 국왕의 명령이 법으로 인정된 것으로 개별 단행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교등록(受敎謄錄)이라 함은 법전으로 편찬되기 이전에 제목 없이 연대순으로만 나열되어 있어 편찬 작업을 거치지 않은 수교집(受敎輯)을 말한다.
수교들이 집적되어 수교집이 형성되고, 수교집에서 장기간 시행될만한 것들을 뽑아서 법전에 규정하는 것이 조선의 원칙적인 법전 편찬방식이었다.[38]
이러한 수교등록에 기록된 지적(地籍)이란 용어는 1594년(선조 27년) 5월부터 1601년 4월 사이에 수교한 내용 중에서 1599년(선조 32년)에 예조(禮曹)의 계제사(稽制司)[39]에서 수교한 내용으로 "신우념충청전라경상강원등도사사위전간혹유지원기출처칙본승가지물야약험경식지지적기출곡칙수백석양돌(臣又念忠淸全羅慶尙江原等道寺社位田間或有之原其出處則本僧家之物也若驗耕食之地籍其出穀則數百石糧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40]

36) 호전(戶典)이라 함은 경국대전에서 정한 六典 중의 하나로써 戶曹가 관장하는 분야의 국정에 관한 사항인 財政・土地制度・租稅・貢賦・국민의 戶口・田宅 등의 기본원칙과 이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法典이다.

37) 법제처, 1965, 『경국대전』, 부산, 부산일보사, pp.157~158. ;『경국대전抄』, 1969, 서울, 경인문화사, p.167.

38) 조지만, 2010, "수교등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1권제1호, 통권 제63호, p.395.

39) 계제사(稽制司)는 예악(禮樂)·제사·연향(宴享)·외교·학교·과거 등 예조가 관할하는 일들과 관련된 각종 규례를 맡아 살피는 관청이었다. 왕의 즉위식, 조회(朝會)를 비롯한 국가와 왕실의 각종 의식(儀式), 원구단(圓丘壇)과 종묘 사직 등의 체제 및 이에 제사를 올릴 때 쓰는 각종 물품, 국장(國葬)과 왕·왕비 등에 대한 제사를 치를 때의 각종 규례, 죽은 왕에게 붙일 이름을 정하는 규례 등 왕과 왕실에 관련된 일이 중심이었다. 이밖에 경연(經筵)·사관(史官)·학교·과거 등의 제도로부터 중국에 대한 외교문서 및 왕비나 세자 등을 책봉하는 교서(敎書), 왕의 옥새 및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에서 쓰는 관인(官印), 천문현상, 물시계에 의한 시간측정 등에 이르는 일들을 상고하는 일도 맡았다.

40) 규장각한국학연구원(규 12867-1) ; 윤병찬・조인연・곽인선・최윤수・고종식, 2012, "조선후기 지적의 연혁과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제28권 제2호, pp.188~189. 재인용.

위와 같이 1590년대 말 조선시대에 예조 계제사에서 선조의 말씀을 기록한 수교등록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약험경식지지적(若驗耕食之地籍)”이란 “만약 농사를 지어 살아나가는 토지로 볼 것 같으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 지적(地籍)이란 용어의 개념은 단순한 토지(土地)의 의미로 사용하였다.[41]

1.3 하곡집(霞谷集)

하곡집(霞谷集)은 정제두(鄭齊斗, 1649~1736)[42]의 시문집(詩文集)으로 그의 현손(玄孫)[43]인 정문승(鄭文升)[44]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정제두가 죽은 후 그의 문인(門人)인 저촌(楮村) 심공(沈公)과 둔곡(遁谷) 이공(李公) 등이 유집(遺集)을 수집하다 미처 완성하기 전에 죽고 그 후에 완구(宛丘) 신공(申公)이 다시 이를 수정하여 35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후 문인들도 이 역을 맡을 사람이 없는데다 당시에 그의 저서는 조선 5백년동안의 사상계를 지배하고 중시되어 오던 주자학(朱子學)에 눌려 이단시되고 일반의 비난이 자자하여 이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가장(家藏)해 두었다가 재주갑(再周甲)[45]에 편초(片草)들이 많이 산실(散失)되자 이를 염려하여 현손인 문승이 다시 수집 편성하여 21권을 만들었다.

하곡집은 양명학(陽明學)의 내용을 담은 저서로서 최고일 뿐 아니라 양명학파의 저서로서도 손색이 없는 가장 종밀(綜密)한 문집이며,[46] 간지(刊地)와 간자(刊者)가 미상으로 조선왕조 철종년간(哲宗年間, 1849년~1863년)에 필사(筆寫)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47]

41) 윤병찬・조인연・곽인선・최윤수・고종식, 2012, 위의 논문, pp.188~189.

42) 정제두(鄭齊斗, 1649년~1736년)는 1649년(인조 27년)에 한성부 반석방(盤石坊)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안산(安山)으로 이사하였고, 다시 강화도의 하곡(霞谷)으로 둔세(遁世)하여 영주하였으며, 1736년에 88세의 생애를 마친 뒤에 문강(文康)이란 시호를 받았다. 정제두는 포은 정몽주(鄭夢周)의 11세손이고 우의정 정유성(鄭維城)의 손자였으며, 조선후기 시대의 양명학자로서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사앙(士仰), 호는 하곡(霞谷), 시호는 문강(文康)이며, 20세 되던 해인 1668년(현종 9년)에 별시 문과 초시에 급제했으나 정국의 혼란을 통탄, 벼슬을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1680년(숙종 6년)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가 되었으나 사퇴하였고, 1684년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잠시 지낸 뒤 다시 사직하였으며, 숙종 때 주부(主簿)·호조참의·회양부사(淮陽府使)·한성부윤, 경종 때 대사헌·이조참판, 영조 때 우찬성(右贊成)·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 등을 잠시 지냈을 뿐, 학문 연구에 일생을 바쳤다. 지식과 행동의 통일을 주장하는 양명학(陽明學)을 연구 발전시켜 최초로 사상적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저서로는 《하곡집(霞谷集)》, 《존언(存言)》, 《성학설(聖學說)》, 《경학집요(經學集要)》 등이 있다.(정제두 저, 윤남한 역, 1975, 『하곡집』, 대양서적, (http://100.naver. com, 2013.10.15.)

43) 현손(玄孫)이라 함은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를 의미한다.

44) 정문승(鄭文升, 1788년~1875년)의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윤지(允之), 호는 미당(美堂) 혹은 초천(蕉泉)이며, 판관 정술인(鄭述仁)의 아들로서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서 순조 10년(1810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세자익위사 세마(洗馬)가 된 인연으로 출세하여 담양 부사 등 여러 주군의 지방관을 역임하고 공조 판서・지의금부사・지중추부사・지돈녕부사 등을 거쳐 고종 12년(1875년) 숭정대부 판의금부사에 이르렀다. 청렴하고 근면하여 칭송을 받았고 글씨와 그림(산수화)에 능하였으며 고인장(古印章)에 조예가 있어 수집에 힘썼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http://seoul600.visitseoul.net, 2013.10.15.)

45) 주갑(周甲)이라 함은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로써 주갑(周甲)・화갑(華甲)・환력(還曆)・회갑(回甲) 등으로 사용한다.

46) http://kyujanggak.snu.ac.kr(2008.8.10.)

하곡집(霞谷集)은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간 것을 1966년 반환문화재로 돌려받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하곡집 본집은 22권 22책의 필사본으로 크게 정집(正集, 권 1~9), 부집(附集, 권10~11), 내집(內集, 권12~19), 외집(外集, 권20~22)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22는 차록(箚錄)이다. 권두에는 22권의 전체 목록과 정문승(鄭文升)이 본집을 편차(編次)[48]할 때 지은 목록발(目錄跋)이 실려 있다.
지적(地籍)이라는 용어는 1700년대 초에 정제두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철종년간(1849년~1863년)에 발간한 필사본 하곡집 제22권 외집(外集) 차록(箚錄)[49] 5장에 "--- 사상 즉응상사문부 구우전 대사객(司上 卽應上司文簿 □郵傳 待使客) 재용 즉공물응수창고수직(財用 卽貢物應需倉庫守直) 지적 안적(地籍 案籍) 인적 판적(人籍 版籍) 의약방술리(醫藥方術吏) 잡술양인리(雜術養人吏) ---" 라고 기록되어 있다.[50]
그리고 하곡집에서는 지적(地籍)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호구적(戶口籍)·병적(兵籍)·인적(人籍)·판적(版籍)·안적(案籍)·호적(戶籍)·천적(賤籍)[51]·전적(田籍)·산적(山籍)·산택적(山澤籍)·산택물산적(山澤物産籍)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52]
위와 같이 1700년대 초 조선 후기에 정제두(鄭齊斗)가 저술한 하곡집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지적(地籍)이란 "양안(量案)을 관리한 관직"을 지칭한 것으로 한국고전번역원(韓國古典飜譯院)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1.4 일성록(日省錄)

일성록(日省錄)은 조선 후기 1760년(영조 36년) 1월부터 정조(1752년~1800년)에 의하여 기록되기 시작하여 1910년 8월까지 임금의 입장에서 펴낸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국정 운영 내용을 기록한 사료로써 1973년 12월 31일에 국보 제153호로서 지정되었으며, 2,329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다.
1878년(고종 15년) 8월 27일에 작성된 일성록(日省錄)[53]에 영의정 이최응(李最應)

47) http://www.minchu.or.kr(2008.8.10.)

48) 편차라 함은 순서에 따라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49) 차록(箚錄)이라 함은 저자의 경세론에 관한 총괄적 저술인데 1~5장으로 분류된 것도 있으나 주제가 겹치기도 하고 제목만 있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등 기술 양식이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산재된 원고를 차록(箚錄)이란 이름으로 편집한 것인 듯하다.(http://www.minchu.or.kr, 2007.8)

50) 정제두, 1700년대초, 『하곡집(霞谷集)』 제22권 차록(箚錄), pp.560~561.

51) 천적이라 함은 노비의 호적 또는 노비문서를 말한다.(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 2008.9.14.)

52) 정제두, 1700년대초, 위의 책, pp.560~563. ; 류병찬, 2009, "지적(地籍)'이란 용어의 사용연혁에 관한 연구(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지적』, 대한지적공사, p.13.

이 아뢴 함경감사 김세균의 보고문에 “--- 해부지간광간벽지지적외첨증지호개면부세자야사즐집세(該府之間廣墾闢之地籍外添增之戶皆免賦稅者也查櫛執稅) ---”라고 기록되어 있다.[54]

위와 같이 1870년데 말에 작성된 일성록에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지적(地籍)이란 “땅과 호적”으로 해석되어 지(地)와 적(籍)을 나누어 해석하지 않은 오역된 것으로서 지적이란 용어의 사용근거로는 볼 수 없으며,[55] 이러한 사실은 한국고전번역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1.5 내부관제(內部官制)

1895년 3월 26일 고종 32년에 반포(頒布)된 내부관제(1895.3.26 칙령 제53호) 제8조에 판적국(版籍局)의 관장사무로서 “제1호에 호구적(戶口籍)에 관하는 사항, 제2호에 지적(地籍)에 관하는 사항, 제3호에 무세관유지(無稅官有地) 처분 및 관리에 관하는 사항, 제4호에 관유지 명목변환(名目變換)에 관하는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1895년에 내부관제(內部官制)에서 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지적(地籍)이란 오늘날의 지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국가의 규정에서는 최초로 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리기 위하여 2005년에 대한지적공사에서 발간한 한국지적백년사에서 한국의 근대적인 지적백년사의 기산점을 1895년으로 설정하였다.[56]

1905년 4월에 1차 개정된 내부분과규정(內部分課規程, 1905.4.12.) 제4조와 1907년 12월에 2차 개정된 내부관제(1905.2.26. 칙령 제15호) 제3조 및 1908년에 개정한 내부분과규정(1908.1.25.) 제2조에서 각각 지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1.6 각읍부세소장정(各邑賦稅所章程)

1895년 4월에 반포된 각읍부세소장정(各邑賦稅所章程, 1895.4.5. 칙령 제74호) 제3조에 각읍부세소사무 개항(槪項)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전제(田制) 및 지적(地籍)에 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일”, 제2호에 “지세 잡세 및 조세외 수입부과에 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일”, 제3호에 “포락(浦落), 성천(成川), 복사(覆沙), 해일(海溢) 및 기타 진결(陳結)을 검사하고 세감면에 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일” 등 이라고 규정

53) 『일성록』을 펴낸 목적은 정조(1752년, 영조 28년~1800년, 정조 24년)가 논어에 나오는 증자의 말 “오일삼성(吾日三省)”, 즉 “나는 매일 세 번 반성한다.”라는 말에 따라 날마다의 생활을 반성하기 위하여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책은 당시 펴낸 의도대로 임금이 국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조선왕조실록』을 보충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실록과는 달리 더욱 자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2011년 5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매일경제, 2011.5.25 제23면).

54) 송영준, 2007, “과세지견취도 작성사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서울대학교 규장각(http://e-kyujanggak.snu.ac.kr), 일성록, 고종 15년(1878) 8월 27일.

55) 윤병찬・조인연・곽인선・최윤수・고종식, 2012, 앞의 논문, p.191.

56) 대한지적공사, 2005, 『한국지적백년사』(역사편), p.3.

하였다.
위와 같이 1895년에 각읍부세소장정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지적이란 오늘날의 지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1.7 내부분과규정(內部分課規程)

1895년 4월에 제정된 내부분과규정(內部分課規程, 1895.4.17.) 제11조에 판적국에 "호적과(戶籍課)와 지적과(地籍課)"의 2개 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 지적과의 관장사무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 지적에 관하는 사항, 제2호에 무세관유지의 명목변환에 관하는 사항, 제3호에 관유지 명목변환(名目變換)에 관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1895년에 내부분과규정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지적이란 오늘날의 지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1905년 4월에 1차 개정된 내부분과규정(內部分課規程, 1905.4.12.) 제4조와 1907년 12월에 2차 개정된 내부관제(1905.2.26. 칙령 제15호) 제3조 및 1908년에 개정한 내부분과규정(1908.1.25.) 제2조에서 각각 지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1.8 각군세무장정(各郡稅務章程)

1895년 9월에 반포된 각군세무장정(各郡稅務章程 : 1895.9.5. 칙령 제162호) 제6조에 세무과 소장사무(所掌事務)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 "지세 및 호포전(號布錢) 기타 잡세(雜稅)의 부과·징수 병(幷) 송납(送納)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 제2호에 세무과 소장사무로써 "전제(田制) 및 지적(地籍)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이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1895년에 각군세무장정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지적이란 오늘날의 지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2. 대한제국시대

2.1 대구시가토지측량규정

대구시가토지측량규정(大邱市街土地測量規程, 1907.5.16. 대구재무관) 제3장 제2절 제131조에 "적산을 완결하였을 때에는 제12호 양식에 의하여 동리・지번・지목・면적・소유주를 기입한 지적부(地籍簿)를 조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1907년에 대구시가토지측량규정에서 지적부(地籍簿)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지적부란 오늘날의 지적공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2.2 삼림법

1908년에 제정된 삼림법(森林法 : 1908.1.21. 법률 제1호) 제19조에 "삼림산야(森林山野)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地積) 및 면적(面積)의 약도를 첨부ᄒᆞ야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ᄒᆞ되 기간내에 신고치 안이ᄒᆞᆫ

자는 총(總)히 국유로 견주(見做)홈"이라고 규정하고, 삼림법시행세칙(1908.4.21. 농상공부령 제65호) 제74조에 "삼림법 제19조에 의흔 보고는 제13호 양식 및 제14호 양식에 의홈이 가홈"이라고 규정하고, 제13호 양식에 "지적보고(地籍報告)"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1908년에 삼림법에서 지적보고(地籍報告)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지적(地籍)이란 오늘날의 지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국가의 법령에서는 최초로 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삼림법 제19조의 "지적(地積)"과 동법시행세칙 제13호 양식의 "지적(地籍)"이란 용어가 서로 달라 삼림법이 공포된 1908년 1월 24일 이후에 발간된 관보를 검색한 결과 삼림법 중 잘못 공포된 내용에 관한 정오(正誤)를 게재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4월 21일 공포된 삼림법시행세칙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양식에는 분명하게 "지적보고(地籍報告)"로 규정되어 있으며, 1975년 「지적법」을 전문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적(地積)과 면적(面積)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면적을 지적(地積) 또는 면적(面積)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삼림법 제19조의 "지적(地積)"이란 용어가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나 그 근거는 찾을 수 가 없었다.

3. 일제 시대

1913년에 제정된 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臨時土地調査局測量規程, 조선총독부훈령 제21호, 1913.4.22.) 제2조, 제9조를 비롯하여 1914년에 제정한 토지대장규칙(土地臺帳規則, 조선총독부령 제45호, 1914.4.25.) 제3조와 제4조, 1918년에 제정한 조선임야조사령(朝鮮林野調査令, 제령 제5호, 1918.5.1.) 제10조 등에 "지적(地籍) 또는 지적도(地籍圖)"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각종 지적관련 규정에 지적(地籍)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4. 해방 후 시대

1950년에 「지적법」(1950.12.1. 법률 제165호)을 제정하면서 지적(地籍)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아 지적(地籍)이란 용어는 1590년대 말 조선시대에 예조계제사에서 선조의 말씀을 기록한 수교등록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나, 단순한 토지(土地)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1700년대 초에 정제두가 하곡집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양안(量案)을 관리한 관직명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적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법규는 내부관제(1895.3.26. 칙령 제53호)라 할 수 있으며, 지적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근대적인 법은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이란 다른 학자들이 과거에 밝혀낸 것에 근거하여 연구를 거듭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듯이[57] 앞으로 새로운 고문헌이 발굴

되고 후학들이 계속하여 연구를 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지적이란 용어의 사용연혁을 다시 번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연구범위를 일본과 중국으로 확대한다면 지적(地籍)이란 용어의 사용연혁이 더욱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지적(地籍)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不動産)이라는 용어는 1898년에 발포한 전당포세칙(1898.11.14.. 농상공부회 제31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58]

이어서 1906년 1월 서울에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같은 해 7월 13일 대한제국에서 토지제도·법률제도·조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토지소관법기초위원회(土地所關法起草委員會)를 설치하고 토지소관법기초위원(土地所關法起草委員)을 임명하였으나, 일본은 같은 해 7월 24일에 이를 부동산법조사회(不動産法調査會)로 강제 대체하고 다시 위원을 임명함으로써[59]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토지가옥증명규칙(1906.10.26. 칙령 제65호)과 토지가옥증명규칙시행세칙(1906. 11.7. 법무부령 제4호)을 발포하고, 1910년 한일합병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이 입법과 규정 등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화 되었다.[60]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1590년대 말에 수교등록(受教謄錄)에서 사용한 지적이라는 용어보다 약 300여년 뒤늦게 사용하였으나,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발전은 지적학을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설명한 지적(地籍)이란 용어의 사용연혁을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지적이란 용어의 사용 연혁

구분	사용 시점	사용 용어	비고
경국대전(호전편)	1460년	토지에 관한 적(籍)	지적(地籍)의 뜻으로 사용
수교등록	1599년	지적(地籍)	토지의 뜻으로 사용
하곡집	1700년대 초	지적(地籍)	양안을 관리한 관직명으로 사용
일성록	1878년	지적(地籍)	땅과 호적의 뜻으로 사용
내부관제	1895.3.26. 칙령 제53호	지적(地籍)	오늘날과 동일한 지적(地籍)의 의미로 사용(규정에서 최초 사용)
각읍부세소장정	1895.4.5. 칙령 제74호	지적(地籍)	〃
내부분과규정	1895.4.17.	지적(地籍)	〃
각군세무장정	1895.9.5. 칙령 제162호	지적(地籍)	〃

57) 한국과학재단, 2007, 『미래를 만드는 한국의 과학자들』, 서울, 상상박물관, p.149.

58) 이창석, 2003, 『부동산학개론』,p.121.

59) 류병찬, 2008, 『신편한국지적사』, 서울, 건웅출판사, p.143.

60) 이창석, 2003, 『부동산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p.121.

대구시가토지측량규정	1895.5.16.	지적(地籍)	〃
삼림법	1908.1.21. 법률 제1호	지적(地籍)	오늘날과 동일한 지적(地籍)의 의미로 사용(법에서 최초 사용)

출처 : 류병찬, 2009, "지적(地籍)'이란 용어의 사용연혁에 관한 연구(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지적』, 대한지적공사, pp.47~57. 참고작성

제2장 지적제도의 기원

인류의 역사는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출발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공동체적 소유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씨족(氏族)이 점유하는 일정한 토지는 씨족구성원 전체의 소유에 속하였으며, 토지의 경작은 씨족구성원의 공동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생산된 수확물은 평등하게 분배·소비되었다.

그러나 돌도끼, 괭이 등과 나무로 만든 농기구가 철제 농기구 등으로 바뀌면서 생산도구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체적인 토지 소유제도가 점차 씨족원에 의한 사적 소유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유(私有) 재산제가 싹트면서 정치적 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져 국가라는 권력구조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61]

이러한 국가라는 권력구조가 나타나면서 지배자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관리와 과세 등을 위한 원시적인 지적제도가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동굴 또는 고분의 벽화·돌·점토판 등에 새긴 그림과 문자 등으로 지적제도의 기원을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지적의 역사는 국가라는 권력구조의 형성과 문자의 발명에 관한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일찍부터 시작된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족국가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관한 문자기록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문헌마다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과 연대 및 세부적인 내용 등을 약간씩 달리 서술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면적을 계량하거나 경작자 등을 기록하는 지적관련 제도가 있었다는 유적 또는 유물이나 사료 등 실물자료가 제한적이고 기록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이 곤란하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고사(檀奇古史)』, 『규원사화(揆園史話)』, 『제왕운기(帝王韻紀)』, 『단군세기(檀君世記)』,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환단고기(桓檀古記)』, 『신단실기(神壇實記)』, 『단군조선 47대(檀君朝鮮47代)』 등 우리나라의 문헌과 중국사기(中國史記)의 『조선열전(朝鮮列傳)』, 『한서(漢書)』의 서남이양월조선전(西南夷兩洊朝鮮傳),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 『삼국지(三國志)』의 위서(魏書)

61) 김경열(金庚烈), 1991, "한국의 토지제도와 정책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 『진서(晉書)』의 열전(列傳) 등 고문헌의 파편적인 기록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정사(正史)의 기록은 한족(漢族)이 우리나라 고대 국가를 중국에 조공(朝貢)을 바친 종속국(從屬國)의 관점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객관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형성·고대 국가의 발전과정·왕위의 계승·풍속·침략·조공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과세·측량·면적 계량·도면 작성 등 지적관련 제도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의 여러 가지 문헌과 『원문동이전(原文東夷傳)』[62] 및 『한글동이전』 [63]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대사의 지적관련 부분을 정리하였다.

제1절 고조선 시대

원시 시대는 인간이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시대로 구분하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이 본격화되고 농업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원시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고 사유(私有) 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고대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농경과 청동기문화에 바탕을 두고 성립한 고조선(古朝鮮)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성읍국가(城邑國家)[64]로서 기원전 2333년에 단군(檀君)이 세웠다는 단군조선(檀君朝鮮)과 기자조선(箕子朝鮮) 및 기원전 108년 중국의 한(漢)나라에 의해 멸망된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규원사화』의 조판기(肇判記)[65]의 첫머리에 “아주 오랜 옛날 음양(陰陽)이 갈라지지 않고 홍몽한 채 오래 닫혀 있었다. 하늘과 땅은 혼돈하여 아직 나누어 지지 않았고, 귀신도 매우 슬퍼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잡것에 쌓여 질서가 없었다. 바다도 흐리고 깊어 많은 생물들의 자취를 찾을 길 없었고, 우주는 단지 암흑의 큰 덩어리일 뿐이었다. 물과 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서로 밀치기를 수백만 년이었다.
하늘<天上界>에는 마침 한 큰 주신(主神)이 있었는데, 그를 환인(桓因)이라 하였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그 형체는 나타내지 않고 가장 높은 하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있는 곳은 수만리나 떨어진 곳이지만 언

62)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원문동이전(原文東夷傳)』, 서울, 서문문화사.

63)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한글동이전』, 서울, 서문문화사.

64) 성읍국가(城邑國家)라 함은 원시사회부터 고대국가의 성립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단계의 국가체제를 규정한 개념으로써 종래 역사학계에서는 ‘부족국가’(部族國家)란 개념을 사용했으나, 1970년대 초에 부족국가라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성읍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 2008.7.17.)

65) 조판기(肇判記)라 함은 성경의 창세기(創世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천지개벽(天地開闢)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으로. 조판(肇判)이란 말 자체가 세상을 처음 연다는 말이니, 창세와 같을 뿐 아니라 천지개벽과도 같으니 그 내용도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나 환하게 빛나고, 그 아래에는 다시 수많은 작은 신<小神>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환(桓)이란 광명(光名), 곧 환하게 빛나는 것으로 그 형체를 말하는 것이며, 인(因)이란 본원(本源)이니 곧 근본이며 만물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66]”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한 큰 주신은 환웅천황에게 명을 내려 “이제 사람과 그 밖에 만물을 다 만들었으니, 너무 아끼지 말고 무리를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하늘을 이어받아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도록 후손의 모범이 되게 하라.”하였다. 이어 천부인(天符印)[67] 세 개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천하에 펴라.”하였다. 환웅천황은 기쁘게 명을 받들어 천부인 셋을 가지고 풍백(風伯)과 우사(雨師)와 운사(雲師) 등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백두산>의 박달나무<檀木>아래로 내려왔다.

모든 무리들이 천황을 임금<君長>으로 추대하니 이분이 곧 신시씨(神市氏)이다. 초목과 금사가 생긴 후 또 십만 년이 지났다.[68]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환웅천황께서 풍백 석제라(釋提羅)를 시켜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의 해를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우사 왕금영(王錦營)으로 하여금 사람이 살 곳을 만들게 하고 소·말·개·돼지·독수리·호랑이 등의 짐승을 모아 목축 이용을 관장케 하고, 운사 육약비(陸若飛)로 하여금 남녀 혼례의 법을 정하게 하였다.[69]

이어서 규원사화의 태시기(太始記)에는 “신시씨가 세상에 내려온 지가 수천 년이다. 백성들과 산물이 늘어나고 지역이 더욱 넓어져서 다시 형벌을 주관하게 하고 병사를 주관하게 하며 선과 악을 주관하게 하며 백성을 감독할 직책을 두었다. 짐승으로 지칭되는 관명으로는 호가(虎加)·우가(牛加)·마가(馬加)·응가(鷹加)·노가(鷺加)라 부르는 성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이는 당시의 백성들이 소·말·개·돼지 등 짐승을 기르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범과 매와 해오라기는 나라 안에 사는 짐승들로써 이것으로 관직의 성격을 나타냈다.[70]”라고 기록되어 있어 “호가·우가·마가·응가·노가”라는 두 번째의 관직명으로 알려진 직책이 등장하고 있으며, 규원사화의 단군기(檀君記)에는 “신시씨는 동방인류의 조상으로 아주 오랜 옛날 나라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단군이전의 성인이다.[71]”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배달국 환웅천황(기원전 3898년~기원전 3805년)은 신지(神誌, 벼슬이름) 혁덕(赫德)에게 명하여 녹도문<鹿圖文[72] : 神誌文字, 사슴 발자국 모양>을 창제도

66) 북애 저, 고동영 역, 1986,『규원사화』, 서울, 한뿌리, p.9.

67) 천부인(天符印)이라 함은 신의 위력과 영험(靈驗)을 표상하는 부적과 도장을 말한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 2008.3.5.)

68) 북애 저, 고동영 역, 1986, 위의 책, pp.11~12.

69) 계연수 저, 임승국 역, 1986,『한단고기』, 서울, 정신세계사, p.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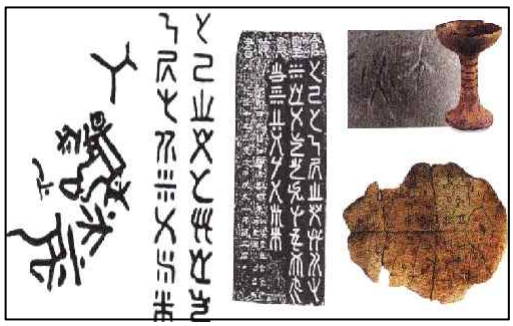
70) 계연수 저, 임승국 역, 1986, 앞의 책, p.17.

71) 계연수 저, 임승국 역, 1986, 위의 책, p.31.

72) 녹도문(鹿圖文)이라 함은 신시본기에 의하면 환웅천황이 신지(神誌) 혁덕(赫德)에게 문자를 만들라고 하였다. 혁덕은 사슴 발자국을 보고 생각이 떠올라 만가지 물건의 모양을 살펴 깨달음이 있어 문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태고문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형문자의 일종이다. 경남 남해군 낭하리(廊河里) 계곡과 만주 길림

록 하였으며[73], 녹도문은 한자의 모태라고 하는 갑골문자의 모태가 되는 문자로써, 수메르 설형문자(楔形文字 : 기원전 3500년경), 이집트 상형문자(기원전 3200년~기원전 3100년경) 보다 몇 세기 앞서는 세계 최초의 문자이다.[74]

신라 최치원(崔致遠)이 신지(神誌)가 쓴 비석을 보고 다시 한자로 옮겨 세상에 전하게 되었으며,[75] 환단고기 태백일사(太白逸史)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에 "환웅천황께서 신지 혁덕(赫德)에게 명하여 녹도(鹿圖)의 글로써 천부경을 기록케 하였다."[76]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림 1-36]과 같은 녹도란 문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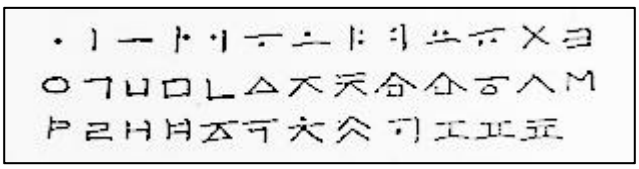


주 : 왼쪽부터 낭하리 고각, 영변지에 실린 녹도문, 창힐문자, 요녕성 여대시 윤가촌에서 출토된 고조선 토기의 문자
출처 : http://cafe.daum.net/upgradehanryu/3U5I/15(2008.6.24).

[그림 1-36] 녹도문(鹿圖文)

기원전 2181년<경자, 단군조선 제3대 가륵 2년>에 "아직 풍속이 하나같지 않았다. 지방마다 말이 서로 다 틀리고 형상으로 뜻을 나타내는 참글<녹도문>이 있다 해도 열 집 사는 마을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백리 되는 땅의 나라에서도 글을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삼랑 을보륵(乙普勒) 박사에게 명하여 [그림 1-37]과 같은 국문정음(國文正音) 38자를 만들어 이를 가림토(加臨土)라 하니 그 글은 다음과 같다.(庚子二年時俗尙不一方言相珠有象形表意之眞書十家之邑語多不通百里之國字難相解於是命三郎乙普勒誤正音三十八字是爲加臨土其文曰)"[77]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고대사회 즉 고조선이 개국되기 훨씬 전인 신시배달 건국 때부터 이미 녹도문과 가림토 문자를 창제하여 문자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37] 가림토(加臨土)

성 경박호(鏡珀湖) 선춘령(先春嶺)과 부오소리(夫烏蘇里)의 암석에 그때 새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글이 남아있다.

73) 계연수 저, 임승국 역, 1986, 위의 책, p.169.

74) http://cafe354.daum.net/_c21_/bbs_search_read(2008.3.5.)

75) 고동영, 1986,『단군조선 47대』, 서울, 한뿌리, p.14.

76) 계연수 저, 임승국 역, 1986, 앞의 책, p.233.

77) 계연수 저, 임승국 역, 1986, 앞의 책, pp.67~68.

대야발(大野勃)이 저술하였다는 『단기고사(檀奇古史)』는 발해(渤海)의 건국 시조인 대조영(大祚榮)의 아우 반안군왕(盤安君王)인 대야발(大野勃)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사해에 널려 있는 사서를 수집하고 석실(石室)에 있는 장서와 옛 비문과 역사적 평론을 참고하다가 돌궐국<터어키>에 까지 두 번씩이나 들어가 고적을 탐사하여 의심되는 것은 빼고 있었던 일만을 기록하여 13년이 걸려 729년 천통(天統) 31년에 완성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실사이다.

『단기고사』는 제1편 전 단군조선(前 檀君朝鮮 : 제1세 단제(檀帝) ~ 제25세 단제), 제2편 후 단군조선(後 檀君朝鮮 : 제25세 단제 ~ 제47世 단제), 제3편 기자조선(箕子朝鮮 : 제1세 기자(箕子) ~ 제42세 기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조선이라는 명칭은 고려 제25대 충렬왕(忠烈王, 재위 기간 : 1274년~1308년) 때의 명승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 : 1206년~1289년)이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유사(遺事)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歷史書)인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단군신화(檀君神話)에 나오는 조선(朝鮮)을 위만조선(衛滿朝鮮)과 구분하려는 의도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 뒤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 재위 기간 : 1392년~1398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널리 쓰였다.

고조선이 중국의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7세기에 산동지방의 제(齊)나라에서 편찬된 『관자(管子)』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제나라가 조선과 교역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무렵 고조선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던 당당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기원전 6세기경에는 공자(孔子)가 뗏목을 타고 구이(九夷 : 朝鮮)로 망명하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조선은 중국에 알려졌다.[78]

그러나 고조선 시대에 토지에 대한 면적을 계량하거나 경작자 등을 기록하는 지적 관련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전해오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단기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1. 고조선

1.1 단군조선

13세기에 편찬된 일연(一然)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단군조선(檀君朝鮮)을 한국 최초의 국가로 기록한 이후 조선왕조에서는 이를 정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단군조선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고고학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문헌자료 또한 신화를 토대로 기록된 것이어서 이에 의문을 표시하는 학자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단군조선 대신 고조선(古朝鮮)이라는 호칭을 널리 쓰고 있으나, 신화나 문헌기록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으므로 7백년 간 정설로 되어온 단군조선의 호칭을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79]

단군(檀君)이란 박달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신시씨(神市氏)가 단목(檀木) 아래에 내

78) 한영우, 2003, 『다시 찾는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p.79.

79) 한영우, 2003, 앞의 책, p.75.

려오고 환검신인(桓儉神人)이 다시 단목 아래에서 임금의 자리를 이어 받았기 때문에 단(檀)으로써 나라 이름을 삼은 것이며, 단군이란 임금이라는 뜻이다.
우리말에 "단"이란 박달이라고도 하며 혹은 백달<白達, 배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임금을 임검이라 하는데 당시에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달임검이라고 한 것이다.[80]
단군신화에는 환인(桓人)·환웅(桓雄)·단군(檀君) 등 삼신이 있다. 환인은 곧 천신(天神), 즉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을 말한다. 환인은 아들 환웅을 태백산 아래로 내려 보내 곡식·생명·질병·선악·형벌 등을 주관하면서 모든 인간을 이익 되게 했는데, 이를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이라 한다.
환웅은 다시 쑥과 마늘을 먹고 21일간 햇빛을 보지 않은 끝에 여자로 변신한 웅녀(熊女)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는데, 중국의 요(堯) 임금이 즉위한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단군이 조선(朝鮮)이라는 나라를 세워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런데 단군은 죽지 않고 1908년간 살다가 아사달(阿斯達)에서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한다.
이 신화는 한국종교의 특징을 집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민족의 조상이 하느님이라는 천손의식(天孫意識)이 들어 있고, 둘째는 홍익인간의 도덕정신(道德情神)이 깃들여 있으며, 셋째는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불사 한다는 낙천성(樂天性)이 들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인, 환웅, 단군은 각기 천지인(天地人)을 대표하는 신으로서 합치면 하나요, 나누면 셋이라는 삼신일체사상(三神一體思想)이 반영되어 있다.[81]
그리고 단군신화는 단군의 출생과 즉위 및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신화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써,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로 등장한 고조선에 관한 것인 만큼 오늘날에는 민족 전체의 국조신화(國祖神話)로 여겨지고 있으며 신화의 주인공인 [그림 1-38]과 같은 단군왕검(檀君王儉)은 우리 민족의 시조(始祖)로 모셔지고 있다.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type(2008.3.28.)
[그림 1-38] 단군왕검의 청동상

신화란 원래 당시의 현실 속에서 고대인이 경험한 것을 객관화시켜 형성된 관념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사회적 의식형태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전하는 신화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완전한 형태로 정착된 것은 아니다. 신화도 오랜 세월을 변천하면서 내용의 일부가 소멸하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는 신화의 내용을 허구로 인식하여 단군신화와 관련된 고조선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견해로부터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80) 북애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33.
81) 한영우, 2003, 앞의 책, p.76.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다양하다.[82]

그러나 1993년 10월에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원은 평양시 강동군(江東郡) 강동읍 대박산(大朴山)에서 예로부터 단군의 능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단군릉(檀君陵)을 발굴하여 단군의 실체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단군릉 발굴로 신화로만 여겨져 왔던 단군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단일민족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화도 마니산(摩尼山)에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쌓았다고 하는 참성단(塹星壇)이 있다고 하는 사실(史實)을『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고려사(高麗史)』가 전하고 있어 단군을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83]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1948년에 제정한 연호에 관한 법률(1948.9.25 법률 제4호)에 "대한민국의 공용연호(公用年號)는 단군기원(檀君紀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49년에 제정한「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9.25 법률 제4호) 제2조에 단군께서 일년 중에서 가장 좋은 달로 정하여 상달이라 하셨고 365일중 가장 좋은 날을 10월중 셋째 날로 정하시어 나라를 연 개국일(開國日)인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을 국경일로 규정하여, 삼일절・제헌절・광복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천절은 우리 민족 오천년 역사의 시원을 단군조선으로 여기는 기념일로써 실증적인 역사의 기록으로 인증하기는 어렵되 모든 민족사의 정신과 기록에서 민족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84]

단군왕검(檀君王儉, 재위 기간 : 기원전 2333년~기원전 2241년, 93년)은 임금의 자리에 있은 지 90여 년 동안 천하가 크고 넓어 그 즐거움을 누릴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가 부루에게 명하여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게 하고 이르기를 "하늘의 도<天道>가 밝아 네 마음에 내려와 있으니 오직 네 마음을 잡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지성을 다하라."하고 남으로 당장(唐莊)에 가서 아사달에 들어가 살면서 10월에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이리하여 부루가 모든 가(加)와 제후를 거느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자리에서 제사 드리고 신축(辛丑)년에 평양에서 왕위에 오르니 곧 2세(二世) 단군이다.[85]

단군조선의 도읍지에 대하여는 학계의 통일된 정설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학설이 있다.[86]

첫째, 재 요녕성(遼寧省)설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계속 요녕성 지방에 있어서 고조선의 멸망까지 요동이라는 주장으로 주로 북한학계의 학설이었으나, 1993년 단군릉의 발굴을 경계로 재 평양설을 취하고 있다.

82) http://kin.naver.com/open100(2008.1.20.)

83) 이형구, 1999,『단군과 고조선』, 서울, 살림터, p.9.

84) 이명수・심상협, 2013,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의 내일을 묻다』, 대전, 기획출판 오름, pp.104~105.

85) 북애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69.

86) http://mybox.happycampus.com/people81/602372(2008.6.25.)

둘째, 재 평양(平壤)설로 여러 문헌에서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대동강 이남에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학설로써 주로 남한학계의 학설이다.
셋째, 중심지이동(中心地移動)설로 원래 중심지는 요녕성이었으나 연나라 소왕과의 전쟁으로 크게 땅을 잃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는 학설이다. 이러한 근거로는 고조선 역사의 시기에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동검으로 변화하였는데 현재의 평양에선 고조선 후기의 유물인 세형동검만이 출토되었고, 요녕성 지방에선 고조선 초기의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대량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나라와의 세력다툼에서 패한 고조선은 그 중심지를 요녕성 지역에서 평양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의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정한 것으로 보며,[87] 고조선은 청동기문화의 발전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애초부터 국가의 형태를 띠고 출현한 것은 아니었다. 남만주와 한반도 서북지방에 걸쳐 분포하던 여러 세력 집단들이 청동기문화의 난숙(爛熟)과 철기문화의 보급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합집산과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를 형성하였다.[88]
기원전 295년 계묘년은 단군조선의 마지막 제47대 임검 고열가(古列加, 재위 기간 : 기원전 295~기원전 238, 58년) 원년이다. 임금이 처음 왕위에 오른 때에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지 못하여 봉가(鳳加)가 나라 안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간신히 충당하였으며 백성들이 보내는 곡식으로 충당해 나갔다.
임금이 여러 가(加)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 황조께서 나라를 세워 만세 후손들의 모범이 되어 왔는데 이제 왕실이 점차 쇠약해지고 제후가 점점 강해져서 외방의 제후(諸侯) 중에 명을 받드는 자가 없다. 비록 분열된 백성이라도 열성으로 가르침을 배우며 충성을 하는데, 오로지 내가 덕이 부족하여 그 가르침과 위풍을 세우지 못하므로 덕이 있는 사람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며 성손(聖孫)을 고루 보아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당장경(唐莊京)으로 옮겨 아사달에 들어가 선성(先聖)의 신령을 평안하게 받들겠다.”고 하였다. 모든 가(加)들이 슬퍼하며 따랐는데 임금이 이에 제기(祭器)를 받들고 당장경에서 피해 살다가 마침내 아사달에 살 곳을 정하니 근처의 많은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모두들 집을 당장경에 정하므로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다.[89]
단기고사(檀奇古史)에 단군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나라를 연 후 위와 같이 제47대 고열가를 마지막으로 멸망하기까지 2,096년간 지속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1.2 기자조선

기자조선(箕子朝鮮)은 기원전 1100년경에 중국의 은나라가 주나라에 의하여 망하자 은나라 귀족이던 기자(箕子)가 5천여 명의 지식인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87) http://k.daum.net/qua/search(2008.1.20.)
88)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2007.12.20.)
89) 북애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89.

와서 왕이 된 다음에 시서예악(詩書禮樂)을 발전시키고 정전제(井田制)와 8조교(八條敎)를 실시했다고 하며,[90] 기원전 194년 연나라의 위만(衛滿)에게 왕위를 뺏기기 전까지 900여년 지속되었다고 하는 왕조를 말한다.

그러나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역사책은 복생(伏生)의 『상서대전』(尙書大傳)과 사마천의 『사기(史記)』·반고의 『한서(漢書)』 등이 있다. 『후한서(後漢書)』에 "예와 옥저와 고구려는 본래 모두 옛 조선의 땅이다. 옛날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고 기자는 그들에게 예의와 농사짓는 법과 누에치는 법, 그리고 8조의 교훈을 만들어서 가르쳤다.(濊及沃沮, 句麗, 本皆朝鮮之地也, 昔武王封箕子於朝鮮, 箕子敎以禮義田蠶, 又制八條之敎)"[91]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사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그 밖의 기자에 관한 기록들은 모두 이들 세 사서에 그 유래와 근거를 두고 있다.

고려 숙종 7년<1102년>에 평양에 기자사당이 세워지고, 명종 8년<1178년>에 기자묘에 유향전(油香田) 50결이 배당 되었으며, 충숙왕 12년<1325년>에 평양에 기자사당이 세워지고 공민왕 5년<1356년>에 이를 다시 증수하였음은 기자 존숭(尊崇)이 국가적 행사가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 후기까지 기자조선의 실체를 부정하는 의견은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의 실체를 부정하는 기자부정론이 통설을 이루고 있으나, 이는 기자조선에 대한 엄밀한 학문적 연구 성과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민족인 중국인이 기자조선을 건국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감정적 차원에서였으며, 기자조선을 부정할 경우 단군조선도 부정될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92]

1.3 위만조선

위만조선(衛滿朝鮮)은 기원전 194년에 중국 춘추전국 시대 연나라에서 기자조선으로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망명한 위만(衛滿)[93]을 준왕<準王, 재위 기간 : 미상>이 덕으로 받아주었으며,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얻어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고, 박사<博士, 地方長官職>에 임명하여 서변백리(西邊百里)의 땅을 봉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만이 망명 집단을 이끌고 몰래 세력을 기른 뒤 준왕을 배반하고 왕검성을 쳤으며, 스스로 만왕(재위 기간 : 기원전 194년~기원전 미상)이 되어 위만조선을 건국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최초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94]

90) 한영우, 2003, 앞의 책, p.79.

91)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제75, 예,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55.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45.

92) 이덕일, 2005,『교양한국사』, 서울, 휴맨이스트, pp.66~71.

93) 위만(衛滿)은 동이족이었고, 순수하게 태어난 곳이 중국일 뿐 조선의 사람들과 동질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조선인이라 생각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나라 이름도 유지하고 모든 체제는 존속되었다.(http : //k.daum.net/qna/view. 2008.2.20).

94) 한영우, 2003, 앞의 책, p.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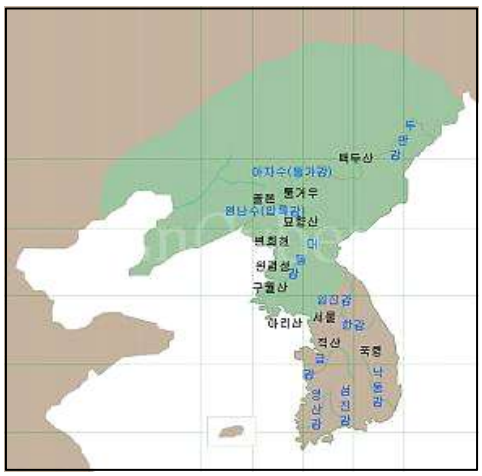
사기(史記) 115 조선열전(朝鮮列傳) 제55에 “위만은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동쪽 요새 밖으로 나와 패수를 건너서 진(秦)나라의 빈 땅 상하장에 망명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상투를 틀고 만이(蠻夷)의 옷을 입고 살다가 진번·조선·연·제나라 지역에서 온 많은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왕이 되고 왕검을 도읍지로 정하였다, 옛 기록에 이곳을 조선 땅이라 하였다.(滿亡命, 聚黨千餘人, 魋結(퇴결) 蠻夷服耳東走出塞, 渡浿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 朝鮮蠻夷及故燕 齊亡命者王之, 都王險)”[95]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때에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후한서 권95, 서남이양월조선전(西南夷兩粵朝鮮傳) 제65에 중국의 “한나라는 이렇게 조선을 평정하고 임둔·진번·낙랑·현도 등 4군을 두었으며, 삼을 획청후로, 도를 추저후로, 협을 평주후로, 장을 기후로, 최는 그 아비를 잃고도 세운 공이 크다고 하여 저양후로 삼았다.(故遂定朝鮮 爲眞番, 臨屯, 樂浪, 玄菟四郡, 封參爲澅(홰)淸侯, 陶爲秋苴侯, 峽爲平州侯, 長爲幾侯, 最以父死頗(파)有功, 爲沮陽侯)”[96]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고조선은 멸망하고 후에 부여·옥저·동예 등과 삼한으로 불리는 마한·진한·변한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조선 시대의 국토는 [그림 1-39]와 같이 만주 길림성 송화강 남쪽지방에서 찬란한 역사 활동을 전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성읍국가(城邑國家)이다.[97]



출처 : http://blog.naver.com/(2007.10.10.)

[그림 1-39] 고조선 시대의 지도

95)『사기』 권115, 조선열전 제55.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p.37~38.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14.

96)『후한서』 권95, 西南夷兩粵朝鮮傳 제65.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45.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28.

97) 대한지적공사, 2005(b),『한국지적백년사』, p.52.

2. 지적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起源)은 고조선 시대를 비롯하여 부족국가, 삼국 시대의 행정조직·토지제도·과세와 측량 등을 기초로 고대의 벽화·지도·측량기기·과세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여 규명할 수밖에 없다.

지적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앞에서 소개한 단기고사·삼국사기·삼국유사·규원사화·환단고기·단군조선 47대 등 고대사를 기록한 문헌을 활용하였는데, 실증사학을 내세운 일부 사대식민사학자들이 구한말 이후에 만들어진 위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학계 전체의 견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위조했는지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은 식민사학자인 이병도(李丙燾) 박사[98]가 타계 직전에 "단군은 실존의 우리 국조이며, 역대왕조가 단군제사를 지내왔으나 일제 시대에 끊겼고, 삼국사기 이전의 환단고기 등 고기의 기록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여[99]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일제 식민사학 극복의 초석을 닦은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자본주의 맹아론(萌芽論)[100]" 혹은 "내재적 발전론[101]"의 대부로 꼽히고 있는 김용섭[102]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팔순을 맞아 저술한 회고록『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103]에서 1975년

98) 이병도(李丙燾, 1896년 9월 20일~1989년 8월 14일, 경기도 용인 출생) 박사는 식민사관 총서『조선사』편찬이라는 거대한 역사왜곡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광복 후 1945년부터 초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주임교수, 1960년에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고,『조선사』편집에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사관 수립 사업에 직접 기여하였고, 일제가 유포시킨 식민사관을 해방 후까지 이어주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http://cafe.d aum.net/myuongsanggigong/M79J/12?docid=1063p|M79J, 2009.6.5.)

99) 사대식민사학자의 거두 이병도(1896~1989) 박사가 타계 3년 전에 과거에는 단군조선을 신화로 몰다가, 친구인 재야 사학자 최태영 박사와 국사 찾기 협의회원들의 우정 있는 충고를 받아들여 참회하고 "삼국사기 이전의 환단고기 등 고기의 기록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86.10.9. 1면 머리기사)

100) 자본주의 맹아(萌芽)란 자본주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싹을 뜻하며, 자본주의 맹아론이라 함은 우리 사회가 주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론으로 일제의 정체성론(停滯性論)을 부인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일제의 정체성론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는 수백 년 전 일본의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거나, 근대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봉건 사회 단계가 조선 사회에서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토지 사유제도가 없고, 전국에 유통되는 화폐의 보급이 없으며, 상인이 존재하지 않고 자생적인 자본의 축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발달할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선진 국가인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경제적 발전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제가 식민지인 조선에 철도·전신·항만 등을 설치하고, 근대적인 학교와 공장 등을 세워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101) 내재적 발전론이라 함은 일제 시대에 조선사회의 정체성론을 근거로 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주장으로, 해방 후 역사 연구자들은 조선후기 사회가 내적으로 다양한 발전 전망을 가진 사회였음을 논증하고, 일제의 식민지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자체적으로 근대화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2) 김용섭은 농업사 연구를 통해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특히 봉건사회 해체와 근대사회의 성립을 내재적 발전의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자본주의 맹아론" 혹은 "내재적 발전론"의 대부로 꼽히고 있다. 1955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학위, 1983년 연세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58년부터 1975년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서 조교수·부교수로 재직했고, 1975년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옮겨 1997년에 퇴임하였다. 현존하는 양안(量案)을 분석하여 조선 후기의 토지소유와 농민층의 분화, 지주·전호관계의 변화와 전호의 성장, 신분제의 동요와 토지소유관계 등을 밝혔다.(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3g1775a, 2011.4.15.)

103) 김용섭, 2011,『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 강의)』, 서울, 지식산업사.

에 16년간 봉직했던 서울대학교를 떠나 연세대학교로 옮긴 배경으로 해방 후 친일 전력에도 국내 역사학계 1인자로 군림한 이병도 전 서울대학교 교수와 그를 따르는 동료 교수들과의 알력을 지목하고, 당시 이병도 교수가 이끌던 주류 실증주의 역사학 등을 성찰 비판하는 학술활동을 펼치며 적극 발언에 나서 다른 역사학자들의 반발을 불렀다고 밝히고 있다.[104]

이어서 서울대학교 박창범 교수[105]는 『단기고사(檀奇古史)』와 『환단고기(桓檀古記)』 등에 기록된 일식 등 천문현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했다. 특히 두 책에 기록된 5성취루(五星聚婁)[106] 현상에 주목하여 추적 조사한 결과, 실제로 서기전 1734년 7월 13일 일몰 직후 금성, 목성, 토성, 화성 그리고 추가로 초승달까지 일렬지어 하늘에 나타나는 장관이 연출됐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같은 현상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0.007%에 불과하며, 책의 조작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적인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107]

제주대학교 안창범 교수[108]는 『환단고기』를 위서로 곡해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한문의 오역에 있음을 지적하고, "『환단고기』는 위서가 아니라 진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물론 모든 학자들은 『환단고기』를 마음껏 거리낌 없이 자유로이 인용해도 하등의 모순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109]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규원사화의 진본이 보존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들 문헌을 사대식민사학자의 주장대로 위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들 문헌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을 규명할 수밖에 없었다.

2.1 지적관련 행정조직

『단기고사』 전 단군조선편(前 檀君朝鮮編)의 "환씨전(桓氏典)에 동방에 부여족이 태백산 부근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중 환인은 관대하고 도량이 커서 가옥의 건축과 의복제도를 시작하고 아들 환웅을 낳으니 그 뛰어난 모습을 호걸이라 했다. 아버지의 분부를 받들어 사람을 널리 구제하시니, 풍백(風伯)과 운사(雲師)와 우사(雨師)와 뇌공(雷公) 등을 거느리고 천평(天坪)[110]에 이르러 음식절차와 혼인규례를 창설하시

104) 한겨레, "식민사학 청산 갈등에 서울대 교단 떠났다." 2011.4.13, 제2면.

105) 박창범 교수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로서,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천체물리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우주론·외부은하·고천문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는 『한국의 천문도』(천문우주기획, 1995.)·『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김영사, 2002.)·『인간과 우주』(가람기획, 2003.) 등이 있다.

106) 5성취루(五星聚婁)라 함은 환단고기에 "단군조선 13세 흘달(屹撻) 단군 50년<서기전 1733년>에 5개의 별이 루성 중심으로 모이는 장관이 연출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천문학자인 서울대 박창범 교수와 라대일 박사 등에 의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되었다.(http://blog.daum.net/vmoon/46070?srchid, 2009.6.5.)

107)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386674(2009.6.5.)

108) 안창범 교수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저서는 천지인 사상과 한국 본원사상(삼진출판사, 2007.) 등이 있고 논문은 천지인 삼재와 신선도의 사상(제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 논문 제28집, 2007.) 등이 있다.

109) http://www.myonoff.com/(2009.6.5.)

110) 천평(天坪)은 길림성 동쪽지역을 말한다.

고 다음과 같은 천부경(天符經)[111]을 설교하시니, 사방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듣는 자가 많았다.(桓氏典에 云하되 東方에 扶餘族이 太白山附近에 散居할세 其中에 桓仁은 寬仁大度하여 家屋建築 衣服制度를 始作하시고 아들 桓雄을 生하시니 英姿가 豪傑이라 父命을 承하야 衆生을 弘濟할세 風伯과 雲師와 雨師와 雷公等을 率하시고 天坪에 至하사 飮食節次와 婚姻規則을 創設하시고 天符經을 說敎하시니 四方人이 雲集하야 聽講하는 者가 市衆과 如한지라.)"[112]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로부터 환국(桓國)에는 우주의 원리, 곧 하늘과 땅과 사람의 생성원리를 밝힌 천부경(天符經)[113]이 있었으며, 천부경은 환역(桓易)[114]의 모체이며, 환역은 주(周)나라를 거치면서 주역(周易)이 되었다.

이어서 기원전 2284년 단군 왕검 50년에 "팽오(彭吳)에게 명하시기를 자네는 개척관이 되어 치산치수에 전력을 다하여 침수와 불통하는 도로가 없이 백성의 거주가 완전하도록 하라.(彭吳에게 命하사 汝는 開拓官이 되어 治山治水에 全力하야 沈水와 不通하는 道路가 없이 百姓의 居住가 安全하도록 하라)"[115]고 기록되어 있으며, 『단군조선 47대』에는 "이 해에 큰 홍수가 있어 백성들이 편히 살수가 없었다. 임금이 팽우(彭虞)에게 치수를 잘 하도록 명하여 안정시켰더니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었으며, 우수주(牛首州)에 이 공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116]"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고조선의 환웅이 인세(人世)를 치세함에 있어 농경사회의 주요 직책인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穀食)·인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면서,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두루 맡아 다스렸다.(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117]라고 기록되어 있다.

『규원사화』의 단군기에는 단군왕검 시대에 오늘날의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그림 1-40]과 같은 단군8가(檀君八加)라는 관직를 두고 "아들 부루(夫婁)[118]를 호가(虎加)로 삼아 여러 가(加)를 총괄케 하고, 신지씨를 마가(馬加)로 삼아 임금의 가르침

111) 천부경(天符經)이라 함은 대종교의 기본 경전으로써, 환웅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려고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와서 교화할 때 우주 창조의 이치를 풀이한 81자로 된 참결을 말한다.

112) 대야발 저, 정해백 역, 1959, 『단기고사』, 충북, 상고문화사, p.1 ;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단기고사(檀奇古史)』, 蓋馬書院, p.가. 재인용. ;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9.

113) http://cafe.daum.net/cha591004/6FYn/260(2008.6.24.) ; 천부인과 신지녹도문 진본 천부경, 한국프레스센터 학술대회 강의자료, p.21.

114) 환역(桓易)이라 함은 환(桓)나라의 역(易)이라는 뜻이다. 복희(伏羲)씨가 지어 여와와 주양(朱襄)을 거쳐 주(周)나라 때에 주역(周易)이 되었다. 오늘날의 윷놀이도 환역에서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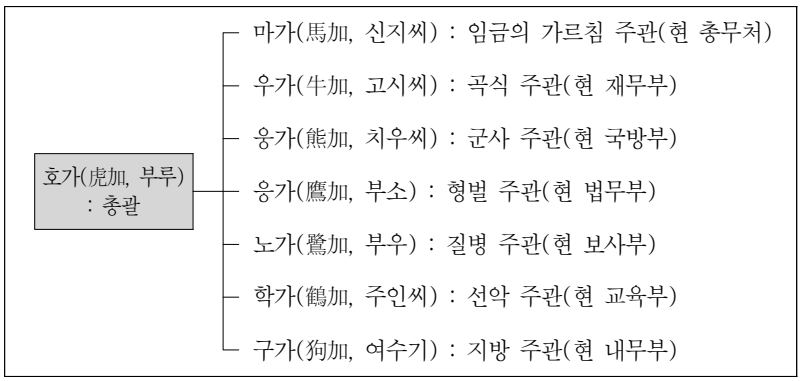
115) 대야발 저, 정해백 역, 1959, 앞의 책, p.3. ;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앞의 책, p.나. 재인용. ;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12.

116) 고동영, 1986, 앞의 책, p.37.

117) 최남선, 1954, 『증보 삼국유사』, 서울, 민중서관, p.33. 재인용. ; 일연 지음, 리가원·허경진 옮김, 1996, 『삼국유사』, 서울, 한양출판, p.41.

118) 부루(扶婁)는 단군왕검의 첫째 아들이며, 단군은 부루(扶婁)·부소(夫蘇)·부우(夫虞)·부여(扶餘)의 네 아들을 두었다.(고동영, 1986, 『단군조선 47대』, 서울, 한뿌리, p.33.)

을 주관하게 하고, 고시씨를 우가(牛加)로 삼아 곡식을 주관하게 하고, 치우씨는 웅가(熊加)로 삼아 군사를 주관하게 하였고, 둘째 아들 부소(夫蘇)를 응가(鷹加)로 삼아 형벌을 주관하게 하고, 셋째 아들 부우(夫虞)를 노가(鷺加)로 삼아 질병을 주관하게 하고, 주인씨를 학가(鶴加)로 삼아 선과 악을 주관하게 하며, 여수기(余守己)를 구가(狗加)로 삼아 모든 고을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以其子夫婁爲虎加 總諸加者也, 神誌氏卽古神誌氏之後下皆倣此爲馬加 曰主命, 高矢氏爲牛加 曰主穀, 蚩尤氏爲熊加 曰主兵, 二子夫蘇爲鷹加 曰主刑, 三子夫虞爲鷺加 曰主病, 周因氏爲鶴加 是主善惡, 余守己爲狗加 是分管諸州也)"[119]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후에 국무총리격의 호가를 용가(龍加)로 고치고, 노가를 녹가(鹿加)로 고쳤으며,[120] 부루왕(재위 기간 : 기원전 2240년~기원전 2183년, 58년) 시대에 봉가(鳳加)를 추가하여 재정을 주관하게 하여 9가(九加)로 늘어났다. 단군8가는 호랑이(虎)를 비롯하여 말(馬)·소(牛)·곰(熊)·매(鷹)·해오라기(鷺)·두루미(鶴)·개(狗) 등의 짐승을 부족의 상징으로 삼아 관직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문헌상 오늘날의 지적관련 업무를 관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 행정조직은 우가(牛加)였을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주 : 부루·신지씨·고시씨·치우씨 등은 호가·마가·우가·웅가 등의 최초 관서장이다.

[그림 1-40] 단군8가(檀君八加)

2.2 경계의 결정

기원전 2267년 단군왕검 67년에 "임금이 태자 부루(扶婁)를 도산(塗山)에서 순(舜)임금이 보낸 우(禹)와 만나게 하였다. 태자가 도산에 도착하자 물을 다스리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은 우(虞)나라에 오행치수법(五行治水法)을 전해주었으며, 국경도 다시 정하였다. 국경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은 순임금이 조선의 서쪽 땅에 유주(幽州), 영주(營州), 병주(幷州)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이 회담에서 유주와 영주가 우리에게 속하게 되었다."[121]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문헌상 경계(境界)설정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119) 북애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p.61~62. p.132.

120) 북애 저, 고동영 역, 1986, 위의 책, p.45.

121) 고동영, 1986, 앞의 책, p.38.

이어서 기원전 1767년(갑오) 제13대 흘달<屹達, 재위 기간 : 기원전 1237년~기원전 1162년, 81년> 16년에 주(州)와 현(縣)을 나누어 정하고 직책의 한계를 정하였다. 관리는 권력을 겸하는 일이 없고 정치는 법칙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니 백성은 고향을 떠나는 일 없이 스스로 일하는 곳에서 편안하여 거문고 노래 소리가 온 누리에 넘쳤다.(甲午六十年定州縣立分職之制官無兼權政無越則民無離鄕自安所事絃歌?域)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기원전<년도 미상> 기자조선 제2대 아락<阿洛, 재위 기간 : 미상, 40년> 10년에 "나라의 경계를 정하였는데, 북은 후단조에 접하고 동쪽·남쪽·서쪽은 큰 바다가 있었다.(國界를 定하니, 北은 後檀朝에 接하고 東南西는 大海러라.")[122]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경계설정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상으로는 고조선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국경(國境)의 결정을 매우 중요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3 도량형의 통일

『단기고사』에 기원전 2238년 제2대 부루<扶婁, 재위 기간 : 기원전 2240년~기원전 2183년, 58년>는 "3년 9월에 조서를 내리시어 백성들에게 머리를 땋고 푸른 옷(靑衣)을 입고, 도량형(度量衡)을 통일하였으며, 베와 모시의 시장 가격이 서로 다른 곳이 없고 백성들이 서로 속이지 않으니 어디서나 두루 편했다.(癸卯三年九月下詔使民編髮盖首服靑衣斗衡諸器悉準於官布苧市價無處有二民不自欺遠近便之)"[123]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도량형 시행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2.4 지도의 작성과 측량

기원전 2229년 제2대 부루 12년에 "신지(神誌)인 귀기(貴己)가 칠회력(七回曆)[124]과 구정도(邱井圖)[125]를 만들어 바쳤다.(壬子十二年神誌貴己製獻七回曆邱井圖)"[126]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지도(地圖)작성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기원전 1664년 제14대 고불<古弗, 재위 기간 : 기원전 1721년~기원전 1662년, 60년> 58년에 "전토(田土)와 산야(山野)를 측량하여 조세율을 개정하였다." [127]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측량(測量)실시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

122)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129. ;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앞의 책, p.65.

123)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p.16~17. ; http://blog.daum.net/888park/13079413(2008.2.20.)

124) 칠회력(七回曆)이라 함은 1일은 천신(天神), 2일은 월신(月神), 3일은 수신(水神), 4일은 화신(火神), 5일은 목신(木神), 6일은 금신(金紳), 7일은 토신(土神)으로 정하여 만든 달력을 말한다. (http://cafe.naver.com/dokdo. 2008.2.20.)

125) 구정도(邱井圖)라 함은 옛날의 밭을 구획한 도면을 말하며, 기원전 2229년에 귀기(貴己)가 제작하였다.

126) http://cafe.naver.com/koreafinghting(2008.2.20.)

127)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56.

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단군조선 47대』에는 “토지와 산야를 측량하여 조세율을 개정하였다.(田土와 山野를 測量하여 租稅率을 改하다.)”[128]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측량 실시에 관한 두 번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원전 1341년 제20대 고홀<古忽, 재위 기간 : 기원전 1380년~기원전 1338년, 43년) 40년에 “공을홀(工乙忽)이 천하의 지도를 제작하여 바쳤다.”[129]라고 기록되어 있고, 『단군조선 47』대에는 “공공(共工) 을홀(乙忽)이 구환(九桓)의 지도를 만들어 바쳤다.(工乙忽製獻九桓地圖)”[130]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환단고기에는 “경자 사십년에 공공인 공홀이 구한의 지도를 제작하여 바쳤다.(庚子四十年共工工忽製獻九桓地圖)”[131]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지도 작성에 관한 두 번째의 기록이다.
이어서 기원전 680년 제36대 매륵<買勒, 재위 기간 : 기원전 704년~기원전 647년, 58년> 25년에 “오경박사(五經博士)[132] 우문충이 토지를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며 유성설을 저술하여 바쳤다.(五經博士 宇文忠이 土地를 測量하고 地圖를 製하며 遊星說을 著上하다.)”[133]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측량사(測量士)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문충은 우리니라의 첫 측량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상으로는 고조선 시대에도 원시적인 측량을 실시하고 오늘날과 유사한 지도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5 정전법의 시행

기원전 2231년 제2대 부루<扶婁, 재위 기간 : 기원전 2240년~기원전 2181년, 58년>는 “10년 4월에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여 밭을 나누고 밭문서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도록 하였다.(庚戌十年四月 劃邱井 爲田結使 民自無私利)”[134]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정전법 시행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정전법 시행을 기리고자 리진호 지적박물관장은 『測量과 地籍』이라는 계간지에 부루송(夫婁頌)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35]

128) 고동영, 1986, 앞의 책, p.106. ;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앞의 책, p.23.

129)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71.

130) http://blog.daum.net/888park/13079413(2008.2.20.)

131) 계연수 편저, 임승국 역, 1986, 앞의 책, p.96.

132) 오경박사(五經博士)라 함은 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 등의 다섯 경전에 통달(通達)한 사람을 합쳐 부르던 말로서, 교육을 담당했던 관직으로 오늘날의 교수로 추정된다.

133)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104. ; 고동영, 1986, 앞의 책, p.186. ;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앞의 책, p.51. 재인용.

134)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17. ; http://blog.daum.net/888park/13079413(2008.2.20.)

135) 리진호, 2006(a), 『측량과 지적』, 서울, 도서출판 우물, p.14.

이어서 기원전 1993년 제8대 우서한<于西翰, 재위 기간 : 기원전 1993년~기원전 1986년, 8년> 원년에 “20에 1을 받는 세법[136]을 정하고 널리 있고 없는 것을 가려서 부족한 것은 보충하였다.”[137]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토지의 과세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1661년 제15대 벌음<伐音, 재위 기간 : 기원전 1661년~기원전 1611년, 51년> 원년에 “80의 1의 세금을 받는 제도를 개정하였다.”[138]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의 과세에 관한 두 번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기원전 1183년 제23대 아홀<阿忽, 재위 기간 : 기원전 1237년~기원전 1162년, 76년> 55년에 “임금께서 영고탑[139]을 친히 시찰하시고 정전법을 가르치셨다.(寧古塔을 親察하고 井田法을 敎하다.)”[140]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정전법 시행에 관한 두 번째의 기록이다.

그리고『단기고사』기자조선편(箕子朝鮮編)에 기원전 1122년 기자조선 제1대 서여<西余,[141] 文聖大王, 재위 기간 : 기원전 1122년~기원전 1082년, 61년> 원년에 “미서(微西)에게 명을 내려 정전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백성들에게 농사일에 힘쓰도록 독려하였으며, 납세의 의무를 알게 하여 소득의 9분의 1(九一稅)을 바치게 하였다.(微西를 命하여 井田法을 開하고 民을 勵하여 稼색을 務케하며 百姓으로 하여금 納稅의 義務를 知케하여서 所得의 九分의 一을 納케하다.)”[142]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정전법 시행과 토지의 과세에 관한 세 번째의 기록이다.

기자조선의 정전법(井田法)은 중국의 은나라 후예인 기자(箕子)가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에서 시행하였다는 정전제로써 1607년<선조 40년>에 구암(久菴) 한백겸(韓百謙)[143]이 기전유제설(箕田遺制說)과 기전도(箕田圖)라는 논문을 통하여 평양의 옛 성안 남쪽 대동강변을 따라 위치해 있는 격자형의 유적이 기자가 구획한 기자정전(箕子井田)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 북한의 사학자 박시형(朴時亨)[144]의 연구에 의하여 고구려 도읍의 도시구획인 것으로 밝혀졌다.[145]

136) 20에 1을 받는 세법을 말하며, 규원사화에는 “90에 1을 세금으로 내게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북애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74.)

137) 고동영, 1986, 앞의 책, p.74.

138) 고동영, 1986, 위의 책, p.107.

139) 영고탑(寧古塔)은 현재 만주 목단강(牧丹江) 아래의 영안(寧安)을 말한다.

140)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앞의 책, p.33. 재인용. ;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74. ; 고동영, 1986, 앞의 책, p.142.

141) 기자(箕子)는 은나라 후예로서, 성은 환(桓)이며 이름은 서여(西余)이다.

142)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앞의 책, p.63. 재인용. ;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125.

143) 한백겸(韓百謙, 1552년~1615년)은 조선중기의 실학자로서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명길(鳴吉). 호는 구암(久菴)이며, 1585년에 교정청 교정낭청(校正郎廳)이 되어 경서훈해(經書訓解)를 교정하였다. 저서로는 구암유고, 동국지리지 등이 있으며, 기자의 토지제도를 정전제로 규정한 기전고(箕田考) 등이 있다.

144) 박시형(朴時亨)은 1910.1.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나 2001.2.28. 평양에서 사망한 북한의 사학자로서, 1940년에 경성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교를 지냈다. 8·15해방 후 경성상업전문학교 경제학교수를 지냈고, 1947년경에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방법

이어서 기원전(년도 미상) 기자조선 제28대 소태<蘇台, 재위 기간 : 미상, 18년> 3년에 “주나라 감나가 입국하여 정전법을 견학하고 돌아갔다. 이때부터 두 나라의 정전제도가 서로 비슷하였다.(周人 甘奈가 入國하야 井田을 見學하고 돌아가니 自此로 兩國의 井田制度가 相似하니라.)”[146]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정전법 시행에 관한 네 번째의 기록이다.

정전제(井田制)는 중국의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유제(遺制)로써, 진(秦)·한(漢) 이후의 균전론(均田論)·한전론(限田論) 등과 함께 당(唐)·송(宋) 시대에 걸쳐 계속 제기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정전법을 고조선 시대에도 시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6 측량관련 기기의 발명

『단기고사』 전 단군조선편(前 檀君朝鮮編)에 기원전 2087년 제5대 구을(丘乙, 재위 기간 : 기원전 2099년~기원전 2084년, 16년) 13년에 “감성관[147]에게 혼천기[148]를 만들게 하여 천도와 맞게 하였다.(監星官으로 하여금 渾天機를 鑄하야 天度와 合하게 하다.)”[149]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측량관련 기기의 발명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기원전 1846년 제11대 도해<道奚, 기원전 1891년~기원전 1835년, 57년> 46년에 “기계공창을 송화강 기슭에 설치하고 각종 기계를 제조하였는데, 나라 안에 현상을 걸어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자는 각각 상을 받게 하였다. 상을 받게 된 새로운 발명품은 황용선, 양수기, 자행륜차, 경기구, 자발전차, 천문경, 조담경, --- 측천기, 양해기, 양청계, 측우기, 양우계, 측풍계 등이 발명되어 이 시대에 크게 번창하였다.”[150]라고 기록되어 있고, 단군조선 47대에는 기원전 1846년 제11대 도해 46년에 “송화강(松花江)가에 기계를 만드는 작청(作廳)을 설치하여 각종 배와 기계를 만들었다. 이때 나라 안에 현상을 걸어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상을 받은 새로운 발명품은 이런 것들이다.(機械工廠을 松花江岸에 設置하고 各種機械를 製造할세, 國內에 懸賞하여 新機械 發明者로 하여금 各各 그 賞을 受케하니 賞給한 發明品은 다음과 같다. 黃龍船, 揚水機, 自行輪車, 輕氣球, 自發電車, 天文鏡, 照膽鏡, --- 測天機, 量海機, 量晴計, 測雨器, 量雨計, 測風計 等이 發

론에 입각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편찬했다.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과학원 초대 역사연구소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앙위원과 상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역사학계는 물론 북한 학계의 최고 원로로서 활동했다. (http://enc.daum.net/dic 100/contents.(2007.7.5.)

145) http://krdic.naver.com/search.nhn(2007.7.5.) ; http://news.khan.co.kr/section/ khan(2007.7.5.)

146)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89, p.172.

147) 감성관(監星官)이라 함은 천체를 관측하는 관리를 말한다.

148) 혼천기(渾天機)라 함은 별자리를 관측하는 성좌 관측기를 말한다.

149)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앞의 책, p.7. ;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27. ; 고동영, 1986, 앞의 책, p.62.

150)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p.40~42. ; 고동영, 1986, 앞의 책, pp.84~86.

明되어 이 時代에 極盛하더라.)"[151]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측량관련 기기의 발명에 관한 두 번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391년 제19대 구모소 45년에 "황운갑(黃雲甲)이 지남차와 목행마를 발명하니, 임금께서 후하게 상을 내리셨다.(黃雲甲이 指南車와 木行馬를 發明하니, 帝厚賞하시다.)"[152]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측량관련 기기의 발명에 관한 세 번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조선 시대에도 측량과 관련된 혼천기를 비롯하여 천문경·조담경·측천기·양해기·지남차 등의 측량관련 기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7 고조선 시대의 유적

선사시대(先史時代, prehistory)[153]를 거쳐 고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써 [그림 1-41] 과 같은 고인돌<dolmen 또는 Table Stone>을 들 수 있는데, 고인돌은 지석묘(支石墓)라고도 하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나라의 형태를 갖추었는지, 어떤 사회를 이루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고인돌은 흔히 뚜껑 구실을 하는 넓은 덮개돌<蓋石>을 여러 개의 굄돌<支石>이 받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선사 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흔히들 권력을 가진 자나 족장(族長) 등의 무덤 또는 제사의식의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거석기념물(巨石記念物)에 속하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고인돌은 선돌<立石, Menhir>[154]·열석(列石, alignments)[155]·환상열석(環狀列石)[156]·석상(石像)[157] 등과 같이 거석문화(巨石文化, Megalithic culture)[158]의 한 요소로 파악되는데, 한국·만주·일본 등을 비롯하여 이집트나 아메리카대륙의 피라미드(Pyramid)·오베리스크(Obelisk), 중동지방의 각종 석조물 등이 포함된다.

151)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앞의 책, p.15. ; 고동영, 1986, 앞의 책, pp.84~86.

152) 발해국 대야발 원저, 1981, 앞의 책, p.30. ;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70. ; 고동영, 1986, 앞의 책, p.128.

153) 선사(先史) 시대라 함은 문자의 발명과 그에 따른 기록이 남겨지기 이전의 시대를 말하며, 문자기록이 남겨진 뒤의 시대를 역사 시대로 부른다.

154) 선돌<立石>이라 함은 하나의 돌을 수직으로 세워놓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입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영문, 2001,『고인돌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다지리, p.35.)

155) 열석(列石)이라 함은 선돌이 한 줄이나 여러 줄이 평행으로 세워진 석열 형태로써 프랑스 브레타뉴 지방의 열석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이영문, 2001, 위의 책, p.35.)

156) 환상열석(環狀列石)이라 함은 선돌을 원형으로 배열한 형태로 한 열 또는 두 열 이상으로 배열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스톤헨지이다.(이영문, 2001, 위의 책, p.36.)

157) 석상(石像)이라 함은 사람 얼굴 등의 형상을 묘사한 돌을 세워 놓은 것으로 우리나라에 흔한 제주도의 돌하르방, 묘 앞에 세워진 문·무인석 같은 형태로써 남태평양의 칠레에 있는 이스터섬(Easter Island)의 모아이(Moai) 석상이 대표적이다.(이영문, 2001, 위의 책, p.36.)

158) 거석문화(巨石文化)라 함은 인간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연석 또는 가공한 돌로 구조물을 축조하여 숭배의 대상물이나 무덤으로 이용한 문화를 말한다.(이영문, 2001, 위의 책, p.33.)



주 : 국립공원 북한산 인수봉 정상에 있는 고인돌(좌 : 인수봉 정상, 우 : 고인돌)
출처 : 박인수, 2008,『고인돌의 비밀』, 서울, 거근당, p.1, p.150.

[그림 1-41] 북한산의 고인돌

고인돌은 한반도 전역뿐 아니라 중국의 산동지방과 요동지방 그리고 일본에도 퍼져 있는데, 그 형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한반도 북방과 중국 동북지방은 받침돌이 높은 탁자식, 한반도 남방은 받침돌이 낮은 바둑판형<碁盤式>과 받침돌이 없이 구덩이 위에 둥근 뚜껑돌을 올려놓은 구덩형<蓋石式>이 많으며, 고인돌 안에는 시체를 매장하고, 동검, 토기 등을 함께 묻었다.[159]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인돌 중에서 지적의 기원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유물로 판단되는 고인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7.1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로 불려도 좋을 만큼 많은 고인돌이 전국에 널려있다. 북한지역의 3,160기를 비롯하여 모두 29,510기에 달한다. 세계에는 약 6만기의 고인돌이 있다고 하니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정도가 한반도에 있는 셈이다.[160]
우리나라의 고인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5천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톤헨지(Stonehenge)나 카르나크(Cargnac) 열석(列石)과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3천~4천년이다.[161]
2000년 11월말에 고창과 화순 및 [그림 1-42]와 같은 강화의 고인돌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우리의 고대문화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이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로 들어선 경우에만 비로소 그 민족이 나라의 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며, 고인돌은 비록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인돌 하나만을 갖고도 청동기 시대에 세워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162]

159) 하문식, 1999,『고조선 지역의 고인돌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p.161. ; 한영우, 2003, 앞의 책, pp.68~69.

160) 이종호, 박택규 지음, 2006,『한국의 과학기술이야기』, 서울, 집사재, pp.166~167.

161) 이종호, 박택규 지음, 2006, 위의 책, p.166.

162) 이종호, 박택규 지음, 2006, 위의 책, pp.166~173.



주 : 강화 고인돌, 사적 제137호,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2008.7.17.)

[그림 1-42] 강화군의 고인돌

2.7.2 평안남도 증산군 용덕리의 고인돌

대동강 유역의 평양 북쪽 44km 지점에 위치한 평안남도 증산군 용덕리 외새산에서 발견된 10호 고인돌에는 문자 비슷한 곡선과 점들이 새겨져 있어 글자를 전하는 돌이라는 뜻의 전자석(傳字石)이라고 불린다.

용덕리 10호 고인돌 뚜껑돌 겉면에 새겨진 [그림 1-43]과 같은 별자리는 80여 개의 구멍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 큰 구멍은 북극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극성을 중심으로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사냥개자리, 헤라클레스자리 등 11개의 별자리에 속하는 별들이 새겨져 있다.[163] 또한 별의 밝기는 구멍의 크기로 표현하였는데 별의 세차운동(歲差運動)을 감안하여 연대를 측정하면 고인돌의 별자리는 2,800± 220년의 하늘을 보여주었다. 또 같은 고인돌 무덤에서 발굴된 질그릇 조각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 4926년(±741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기원전 3000년~2900년 전인 단군조선 초기의 선조들이 천문을 세밀하게 관측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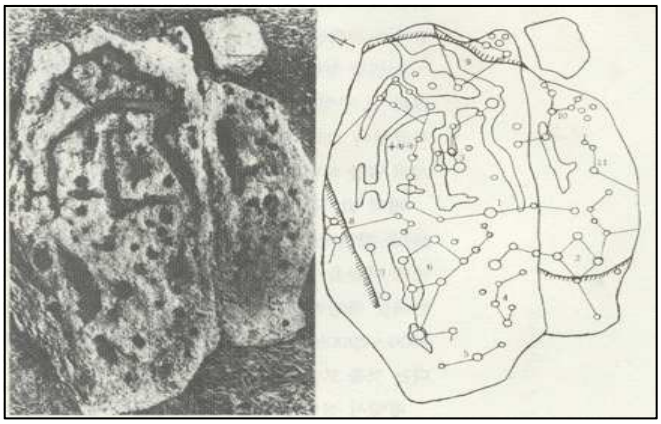
세계 고대 천문학계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로니아에서 발견된 미쇼의 돌(Michaux stone)이라는 토지 경계비(境界碑, boundary stones)에 달과 별, 전갈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별자리를 보고 최초의 천문관측과 별자리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고대 천문학의 발상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의 토지 경계비는 기원전 1200년경에 만들어 진 것이고, 대동강 유역의 고인돌에서 발견된 별자리는 그 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별자리나 천문기록으로 볼 때 고조선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앞서는 문명국가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학 유산이다.[165]

163) http://cafe.daum.net/khanhan/5TRe/(2008.7.17.)

164) 이종호, 박택규 지음, 2006, 앞의 책, pp.273~274.

165) 이종호, 박택규 지음, 2006, 위의 책, pp.278~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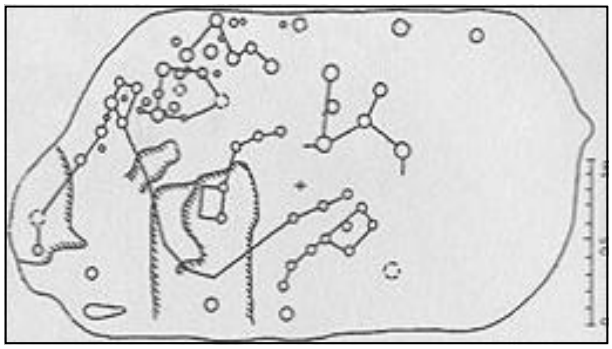


출처 : 이종호, 박택규 지음, 2006,『한국의 과학기술이야기』, 서울, 집사재, p.274.

[그림 1-43] 평안남도 증산군 용덕리 고인돌의 별자리 실측도

2.7.3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의 고인돌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 고인돌에는 [그림 1-44]와 같이 26개의 별이 새겨져 있는데 기원전 25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돌에 그려진 별의 그림은 길이 3.45m, 폭 3.20m, 두께 0.60m의 뚜껑돌에 있다. 구멍의 크기는 가장 큰 것이 직경 10㎝, 깊이 3.5㎝이며 여러 가지 크기로 구분돼 있는데 용별자리, 작은곰별자리, 큰곰별자리 등을 나타낸다.[166]



주 : 원화리 고인돌의 별자리 실측도

출처 :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2008.7.17.)

[그림 1-44]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 고인돌의 별자리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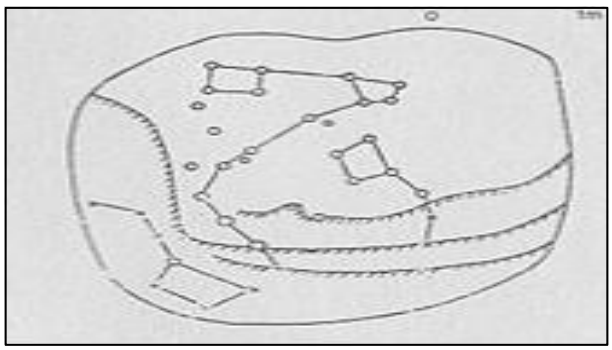
2.7.4 함경남도 함주군 지석리의 고인돌

함경남도 함주군 지석리의 고인돌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 1-45]와 같은 별 그림은 기원전 1500년경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조선의 중기에 해당한다. 중심점(북극점)을 기준으로 해 큰곰별자리에 속해 있는 북두칠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작은곰별자리, 카시오페아, 케페우스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특히 뚜껑돌 우측을 따라 은하수에 해당하는 작은 별들이 많이 새겨져 있다. 이는 은하수가 별들이 많이 모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당시의 관찰이 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66)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2008.7.17.)

지석리 고인돌에는 별의 밝기에 따라 구멍의 크기를 4부류로 구분해 새겨져 있는데, 그 크기는 직경 10, 6, 3, 2㎝의 순이고 깊이는 3~3.5㎝ 정도이다. 이 돌에 새겨진 별을 관찰하면 동지, 하지, 춘분, 추분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특히 지석리 고인돌 별 그림을 보면 그 이전 시기의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자리별을 기준으로 볼 때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에 속하는 별에 해당하는 구멍들의 간격이 용덕리 고인돌보다 더 정확하며, 별의 밝기가 크지 않은 4등성 이하의 별까지 새겨져 있었다.[167]

위와 같은 고인돌의 암각화(岩刻畫) 등을 분석한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는 그의 저서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천문현장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여 기록을 남겨 온 천문의 나라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 북한지역에서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등 별자리를 새긴 고인돌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삼국 시대 중국에서 천문학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독자적 천문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168]라고 서술하고 있다.



주 : 지석리 고인돌의 별자리 실측도
출처 :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2008.7.17.)

[그림 1-45] 함경남도 함주군 지석리 고인돌의 별자리 실측도

위와 같이 문헌상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고조선 시대에 지적관련 업무를 관장한 최초의 행정기관은 우가(牛加)이며, 기원전 2238년에 도량형(度量衡)을 통일하였고, 기원전 2231년부터 지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였으며, 기원전 2229년에 구정도(邱井圖)라는 지도를 작성하였고, 기원전 2087년에 혼천기(渾天機)를 제작하였으며, 기원전 1664년에 측량을 실시하고 과세를 하였으며, 기원전 680년에 유성설(遊星說)이라는 지적관련 문헌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남아 있는 고인돌에 새겨진 천문도로 보아 고조선 시대에도 천문관측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천문도를 작성하여 고인돌에 새겨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입증할 수는 없지만 문헌상

167) 이종호, 박택규 지음, 2006, 앞의 책, pp.278~279.

168) 박창범, 2002,『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서울, 김영사, p.10.

으로 보아 고조선 시대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토지관리·측량·지도 작성·과세 등 원시적인 지적관련 업무가 미분화된 상태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적사적(地籍史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측량사적(測量史的) 측면에서는 측량의 기원, 지도사적(地圖史的) 측면에서는 지도의 기원, 과세사적(課稅史的) 측면에서는 과세의 기원이라고 각각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대사회의 체제가 원시적이고 분화되지 아니한 생산 수단의 공유를 기초로 한 공동원시사회였기 때문이다.

제2절 부족국가 시대

부족국가(部族國家)라 함은 원시사회에서 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로서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고대국가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단계의 국가 형태로써, 미국의 민족학자 L. H. 모건(Morgan, Lewis Henry)의 사회발전단계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모건은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을 성(性)을 기초로 한 사회조직-씨족(氏族 gens)-포족(胞族 phratry)-부족(部族 tribe)-부족연합체-국가의 단계로 분류했다. 국가체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혈연성과 공동체적 유제(遺制)가 상당히 남아 있는 단계의 정치조직체를 고대국가 성립의 과도기로 파악하여 부족국가 또는 부족연맹체국가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169]
그러나 부족국가는 원시사회에서 고대국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나타난 국가형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은 부족국가 → 부족연맹체국가 → 고대국가의 과정을 밟는다는 부족국가론이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기나 연구자에 따라 부족국가의 개념도 여러 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성읍국가·군장사회(Chiefdom : 추장사회·족장사회) 등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현재는 읍락사회 → 소국(小國) → 소국연맹 → 고대국가로 발전한다고 하는 국가형성 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170] 부족공동체의 연합체를 부족국가라고 하며 부족국가는 부족공동체 최고의 단계이며, 원시사회의 최후의 단계를 말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에 이어져 있어 북쪽 대륙에서 이동해 온 북방계의 기마민족(騎馬民族)과 바다를 통하여 이주하여 온 남방계인 농경민족(農耕民族)이 부족을 이루었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우세한 군사력과 조직력을 가진 북방계 부족과 평화로운 농경생활에 만족했던 남방계 부족들이 웅거하였으며, 한반도의 남쪽은 지형적 특성에 의

169) http://kin.naver.com/list/view(2007.7.5.)

170)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masterno=78701&contentno=78701 (2010.10.10.) ; http://100.naver.com/100.nhn?docid=78701(2010.10.10.)

하여 촌락을 이루어 농경에 종사했던 관계로 정치·군사적 활동이 미약하였지만, 북쪽은 지형상 목축을 주로 하는 유목민들이 군락을 이루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영토 분쟁과 충돌이 빈번하게 야기되면서 일찍부터 국가형태의 부족들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원시사회 말기에 고조선이 내부분열로 망한 후 형성된 부족국가로는 부여·옥저·동예·진국·삼한 등이 있다.

1. 부족국가의 형성

1.1 부여(夫餘)

고조선 다음으로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송화강 상류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일어난 부여(夫餘)이다. 부여라는 이름은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지리기사를 실은『산해경(山海經)』과 사마천의『사기(史記)』화식전(貨殖傳)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기원전 4세기경에 건국된 것으로 보인다. 부여를 세운 종족은 예맥족(濊貊族)으로서 그 일파가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세웠으므로 부여가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171]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 "부여국(扶餘國)은 현도 북쪽 천리에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쪽으로는 읍루(挹婁), 서쪽으로는 선비(鮮卑)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弱水)가 있으며 그 지방은 2천리이나 본래는 예(濊)의 땅이다.(扶餘國 在玄菟北千里, 南與高句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地方二千里, 本濊地也)" [172]라고 기록 되어 있다.
그리고『삼국지(三國志)』의 위서((魏書)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에는 "부여는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고 현도로부터 천리나 되며 사방은 약 2천리이고 8만호가 된다.(夫餘 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南與高句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方可二千里 戶八萬)"[173]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진서(晉書)』의 열전(列傳)에는 "부여국은 현도의 북쪽 천여 리에 있다. 남쪽으로는 선비와 접하고 북으로는 약수가 있고 사방 2천리이며 팔만가호다. 성읍과 궁실이 있으며 땅은 오곡을 심기에 적합하다.(扶餘國在玄菟北千餘里, 南接鮮卑,北有弱水, 地方二千里, 戶八萬, 有城邑宮室, 地宜五穀)"[174]라고 기록되어 있어 문헌마다 서로 약간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부여(扶餘)는 토지가 광활하고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금의 북만주 눙안(農安)·창춘(長春) 일대에 세워진 예맥족(濊貊族) 국가로서 산업은 농경을 주로 하였고 명마(名馬)·적옥(赤玉)·미주(美珠)·돈피(獤皮) 등이 산출되었다.

171) 한영우, 2003, 앞의 책, p.85.

172)『후한서』제85권, 동이열전 제75, 부여,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49.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31.

173)『삼국지』제30권 위서 오환선 비동이전 제30, 부여,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61.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57.

174)『진서』열전, 부여국,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75.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86.

이어서『삼국지』의 위서 오환선비동이전에 부여에는 “군왕이 있고 벼슬아치로는 육축(六畜)[175]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저가·구가가 있으며, 대사·대사자·사자도 있다. 제가들은 따로 사출도(四出道)를 관장하였으며, 큰 자는 수천 호를 다스리고 작은 자는 수백 호를 다스렸다.(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 牛加, 猪加, 狗加, 大使, 大使者, 使者, 諸加別主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176]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여(扶餘)에서는 국도(國都)를 중심으로 전국을 사방으로 구획하여 사출도(四出道)[177] 혹은 사가도(四街道)라고 칭하는 일종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출도(出道)”라고 표현한 것은 중앙의 수도(首都)를 중심으로 하여 네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首都)가 있는 중앙지역에는 가장 강력한 부족(部族)이 있고, 이 중앙부족을 중심으로 전국을 방위별(方位別)로 사방(四方)으로 나누어 그 지방에 있는 우세한 부족들이 각각 사출도의 한 도(道)를 장악하고, 중앙부족이 이를 인정하여 부족연맹을 형성하였는데, 오늘날의 행정구역 명으로 도(道)라는 용어를 이 당시에 최초로 사용하였다.

부여는 사출도를 정하고 그 밑에 가축의 이름을 붙인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와 대사(大使)·사자(使者) 등의 관직을 두고, 국왕은 중앙에서 사출도를 맡은 4가(馬加·牛加·豬加·狗加)를 통솔하고 4가는 각각 한 구역의 사출도를 관할하였다.[178]

부여에는 1책 12법 4조목[179]이 전해 지고 있는데, 사형을 당한 자의 가족들은 모두 노비로 삼고 도적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하게 하며, 남녀 간에 음란한 일을 하면 모두 죽이고 특히 질투하는 계집을 미워하여 이미 죽은 자라도 그 시체를 산 위에 갖다 버리며,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섣달에는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준 하늘에 감사하는 의식인 일종의 추수감사제인 영고(迎鼓)라고 하는

175) 육축(六畜)이라 함은 소·말·돼지·개·양·닭을 말한다.

176)『삼국지』제30권,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제30, 부여,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61.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57.

177) 도(道)는 한국의 행정 구역명 또는 고대 중국의 지역 구분의 단위명(單位名)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BC 1세기경에 위지(魏志) 동이전 부여조(東夷傳夫餘條)에서 “부여에는 사출도(四出道)가 있고, 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마가(馬加) 등이 이를 다스렸다”하여 처음으로 행정구역 명으로 도(道)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후 지방 행정구역의 가장 큰 단위는 고구려에서 5부(部), 백제에서 5방(方), 신라에서 주(州)라고 하다가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도(道)를 두었다. 전국을 관내도(關內道)·중원도(中原道)·하남도(河南道)·강남도(江南道)·영남도(嶺南道)·영동도(嶺東道)·산남도(山南道)·해양도(海陽道)·삭방도(朔方道)·패서도(浿西道) 등 10개 도로 나누었으며, 현종 때 다시 전국을 양광도(楊廣道)·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교주도(交州道)·서해도(西海道) 등 5도(道)와 동계(東界)·북계(北界)의 양계(兩界)로 나누었다. 이것을 조선 초기인 1413년(태종 13)에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의 8개 도(道)로 나누어 조선 8도의 명칭이 붙게 되었으며, 중엽에는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및 황해도를 좌·우도로 갈랐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13도로 늘렸다.(http://chang256.new21.net/board/board.php?db(2010.9.20.)

178) 김경열, 1991, 앞의 논문, p. 69. ; http : //cafe.naver.com/msnageseriz.cafe.(2008.1.20.)

179) 부여와 고구려 양쪽 모두에 1책 12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다. 기원후 3세기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부여로 나오고, 고구려의 1책 12법은 기원후 10세기 기록인 구당서에 나온다. 부여의 법은 현재 4조목이 전해지고 있다.

제천행사(祭天行事)[180]를 하였다. 추수를 마친 후 모든 백성이 모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추수를 감사하며 춤과 노래와 술을 즐기었으며, 이 행사 중에는 처벌과 투옥을 금하고 죄수들을 놓아주기도 하였다.[181]

부여는 494년에 고구려에 병합되어 멸망할 때까지 약 1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전성기인 기원전후 시기의 영토는 북으로 흑룡강 이남, 남으로 백두산에서 요하 상류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연해주까지 미치는 광대한 국가였다.[182]

1.2 옥저(沃沮)

부여가 만주에서 국가를 경영하고 있을 때 한반도의 백두대간 동쪽에는 부여족의 한 갈래인 옥저(沃沮)와 동예(東濊)가 각각 함경남도와 강원도 북부에서 연맹국가를 영위하고 있었다. 이 두 나라는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외부의 자극이 적고, 따라서 국가발전도 상대적으로 뒤져 있었다.[183]

『후한서』의 동이열전에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산의 동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읍루와 부여, 남쪽으로는 예맥과 접하였다. 옥저의 지형은 동서로는 좁고 남북으로는 길어서 천리의 절반이며, ----- 언어·음식·거처·의복 등은 고구려와 비슷하였다.(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東濱大海, 北與挹婁, 夫餘, 南與濊貊接, 其地東西夾, 南北長, 可折方千里, ----- 言語, 飮食, 居處, 衣服有似句麗)"[184]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북옥저는 일명 치구루라고도 하며, 남옥저와의 거리는 8백여 리이고 그 들의 풍속은 모두 남옥저와 같다. 국경의 남쪽에는 읍루가 있다.(又有北沃沮, 一名置溝婁, 居南沃沮八百餘里, 其俗皆與南東, 界南接挹婁)"[185]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지』의 위서 오환선비동이전에는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산의 동쪽에 바다를 끼고 있다. 그 지형이 동서로는 좁고 남북으로는 길어서 천리나 된다. 북쪽으로는 읍루와 부여, 남쪽으로는 예맥과 접해 있다. 5천 가호(家戶)로 대군왕이 없고 각 촌락에 통솔자가 있다. 언어는 고구려와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난다.(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夾, 西南長, 可千里, 北與挹婁, 夫餘, 南與濊貊接, 戶五千, 斌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186]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북옥저는 일명 치구루라고도 하며, 남옥저(南沃沮)와의 거

180) 제천행사(祭天行事)라 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국가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181)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32.

182) 한영우, 2003, 앞의 책, p.85.

183) 한영우, 2003, 위의 책, p.87.

184) 『후한서』 제85권, 동이열전 제75, 동옥저,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54.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p.42~44.

185) 『후한서』 제85권, 동이열전 제75, 북옥저,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54.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p.42~44.

186)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제30, 동옥저,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65.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69.

리는 8백여 리이고 남으로는 읍루를 접하고 있으며, 그 들의 풍속은 모두 남쪽과 같다.(北沃沮 一名置溝婁, 居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187]라고 기록되어 있어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옥저는 부여(扶餘)계열 예맥족(濊貊族)의 부족사회로써, 임둔(臨屯)의 옛 땅인 낙랑동부도위(樂浪東部都尉) 소관인 부조현(夫租縣)의 후신으로 지금의 함흥(咸興)평야 일대에서 기원후 30년경에 형성되었던 부족국가로서, 토지가 비옥하고 농경이 발달되어 오곡이 풍부하고 어염(魚鹽) 등 해산물이 산출되었으나, 56년경 고구려에 신속(臣屬)되어 멸망하였다.

옥저에서는 삼국지 위지의 동옥저조에 "고구려는 대가(大加)로 하여금 옥저의 조부(租賦)[188]를 담당하여 받아들이게 하였다.(高句麗復置其中・・・・ 又使大加統責其租賦)"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후한서 동이전(東夷傳) 동옥저조에도 옥저에 조부제도가 실시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189]

옥저는 자세한 기록이 없는 연맹국가로, 정확히 말하면 읍락국가(邑落國家)의 연합체로 보여 진다. 옥저는 각 읍락별로 족장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통일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왕이 없었다는 것을 보아서, 구심점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옥저는 동옥저로도 불렸고, 다시 남옥저와 북옥저로 구분되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190]

1.3 예(濊)

『후한서』의 동이열전에 "예(濊)의 북쪽은 고구려와 옥저, 남쪽으로는 진한과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서 끝나고, 서쪽으로는 낙랑에 이른다. 예와 옥저와 고구려는 본래 모두 옛 조선의 땅이다. 옛날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고 기자는 그들에게 예의와 농사짓는 법과 누에치는 법, 8조의 교훈을 만들어서 가르쳤다. 그들은 서로 훔치는 일이 없어서 문을 닫지 않고 살았다.(濊北與高句麗, 沃沮, 南與辰韓接, 東窮大海, 西至樂浪, 濊及沃沮, 句麗, 本皆朝鮮之地也, 昔武王封箕子於朝鮮, 箕子教以禮義田蠶, 又制八條之教, 其人終 不相盜, 無門戶之閉)"[191]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지』의 위서 오환선비동이전에는 "예는 남쪽으로는 진한과 인접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옥저,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서 끝난다. 지금 조선의 동쪽은 모

187)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제30, 북옥저,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66.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67.

188) 조부(租賦)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조부(租賦)・공세(貢稅)・공조(公租)・세(稅)・세전(稅錢)・세금(稅金)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189) 대한지적공사, 2005(b), 앞의 책, p.71.

190) http://cafe.naver.com/historyexampass.cafe(2008.1.20.)

191)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제75, 예.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55.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45.

두 그들의 땅이며 약 2만호가 산다. 옛날에 기자가 조선에 와서 그들에게 8조의 교훈을 지어서 가르친 일이 있어 도적질하는 자가 없으므로 문을 닫지 않고 산다.(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 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戶二萬, 昔箕子旣適朝鮮, 作八條之敎以敎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192]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부분 역시 서로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동예(東濊)는 함경남도의 영흥(永興)·안변(安邊)일대와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1세기 초에 형성되었던 부족국가로서, 처음에는 위만조선에 복속되어 있었으나 2세기 후반 고구려 지배하의 낙랑군에 귀속되었다가 광개토대왕 때에 고구려에 병합되어 멸망하였으며,[193] 산업은 농업을 주로 하였으며 마포(麻布)와 양잠(養蠶)기술이 발달하였고 명주(明紬)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별자리를 볼 줄 알아 미리 그 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예측하였으며,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를 무천(舞天)이라고 하며(曉候星宿, 預知年歲豊約,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儛天)",[194] 부여의 영고(迎鼓)·고구려의 동맹(東盟)과 같이 풍년을 빌고 추수를 감사하는 의식을 지냈다.

그리고 동예에서는 씨족 간의 경계와 지역 간의 읍락(邑落) 경계를 중요시하여 이와 같은 경계를 침범하여 수렵·어로·경작 등을 하면 침범자 측에게 소나 말로 배상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책화(責禍)라고 하였다. 이 같은 풍속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존재한 벌칙이었으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형벌이 엄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가 적었다.[195]라고 기록되어 있다.

1.4 진국(辰國)과 삼한(三韓)

남한지방에 세워진 최초의 연맹국가는 기원전 4세기경에 세워진 진국(辰國)[196]이었으며, 그 중심지는 경기도와 충청도·전라도의 서해안지역으로 보인다. 그 후 기원전 2세기 말에 기자조선이 위만에 망하자 준왕(準王)을 비롯한 고조선의 망명객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기원전 2세기 초에 위만조선이 한에 망하면서 그 지배층이 대거 남하하면서 진국의 사회발전이 촉진되어 삼한(三韓)이 형성되었다.[197]

『후한서』의 동이열전에는 "한에는 세 종족이 있다. 첫째는 마한이요, 둘째는 진한이

192)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제30, 예,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67.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73.

193) http://blog.naver.com/seoulb(2008.1.20).

194)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제30, 예,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p.67~68.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74.

195)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74.

196) 진국(辰國)은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무렵 청동기 및 초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존재한 초기 국가로, 위만조선과 공존하였고, 이후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으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197) 한영우, 2003, 앞의 책, p.91.

요, 셋째는 변진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 54국으로 북쪽은 낙랑과 남쪽은 왜와 접해 있다. 진한은 동쪽에 있는 12국으로 북쪽은 예맥과 접해 있다.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 12국으로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해 있다. 그들은 모두 78국이며 백제는 그 중 한나라이다. 대국은 만여호이고 소국은 수천 가구이다.(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百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198]라고 기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지』의 위서 오환선비동이전에는 "한나라는 대방의 남쪽에 있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가 경계이고 남쪽은 왜와 인접하며 사방이 약 4천리이다. 한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첫째는 마한이요, 둘째는 진한이요, 셋째는 변한이다. 진한은 옛 진국이다.(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韓,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199]라고 기록되어 있어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 등 삼한(三韓)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후 3세기경까지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있던 부족국가를 말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마한은 55개,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의 소국(小國)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한은 한강유역으로부터 충청도와 전라도에, 진한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변한은 낙동강유역 경상도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후에 마한의 백제국(伯濟國)이 백제로, 진한의 사로국(斯盧國)이 신라로, 변한의 구야국(狗邪國)이 가야(伽倻)로 발전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200] 구야국의 구야는 가야의 한자식 표기로 가야뿐만 아니라 가락국(駕洛國)·금관국(金官國)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532년에 신라에 항복함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나, 그들의 우수한 문화는 신라의 부흥과 발전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201]

삼한은 토착 농경사회로써 기후가 따뜻하고, 우량이 풍부하며 저수지가 많아서 일찍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으며, 전북 김제의 벽골제(碧骨堤)와 충북 제천의 의림지(義林池) 같은 저수지는 마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202]

따라서 벼농사를 비롯하여 오곡을 재배하였고, 양잠을 하여 면포(綿布)를 직조하였으며, 진한과 변한에서는 특히 철의 산지가 많아 마한·예맥(濊貊)·왜 등이 철을 구해갔을 뿐 아니라 낙랑(樂浪)과 대방(帶方) 등 중국의 군현에서도 수입해갔다.

삼한(三韓)에서는 "해마다 5월에 씨뿌리기가 끝나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리가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밤낮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땅을 밟으

198)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제75, 한.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56.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48.

199)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제30, 한,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68.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76.

200) http://ko.wikipedia.org/wiki/(2008.1.20.) ; http://nitroper.cafe24.com/(2008.1.20.)

201) 『조선일보』, 2013.7.23. A26.

202) 한영우, 2003, 앞의 책, p.92.

며 낮추었다 올렸다 하기도 하고 손과 발을 서로 맞추는데 그 박자와 리듬이 마치 탁무와 같다. 10월에 농사일이 끝나면 또 이와 같이 한다.(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飮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203]라고 기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삼한에서도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과 비슷한 추수감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천행사 있었다. 5월 수릿날에는 기풍제(祈豊祭)를 지내고, 10월에는 추수를 감사하는 시월제(十月祭)를 행하였으며, 두레를 만들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등 공동체적 전통을 유지해 나갔다.

부족국가 시대의 지도는 [그림 1-46]과 같다.



출처 : 박민주, 2004,『민주국사』, p.94.

[그림 1-46] 부족국가 시대의 지도

2. 지적관련 제도

부족국가 시대의 지적관련 제도로써 부여(扶餘)에서는 행정구역제도로써 국도(國都)를 중심으로 전국을 사방으로 구획하여 사출도(四出道) 혹은 사가도(四街道)라 칭하는 지역구획방법을 시행하였다.

행정구역의 일종인 사출도를 정하고 그 밑에 가축의 이름을 붙인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와 대사(大使)·사자(使者) 등의 관직을 두고, 국왕은 중앙에서 사출도를 맡은 4가<馬加·牛加·豬加·狗加>를 통솔하고 4가는 각각의 사출도를 관할하였다.[204]

사출도(四出道)라 함은 일종의 행정구획으로, "출도(出道)"라고 표현한 것은 중앙의 수도(首都)를 중심으로 하여 네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가 있는 중앙지역에는 가장 강력한 부족(部族)이 있고, 이 중앙부족을 중심으로 전국을 방위별(方位別)로 사방(四方)으로 나누어 그 지방에 있는 우세한 부족들이 각각 사

203)『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제30, 한,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69.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78.

204) 김경열, 1991, 앞의 논문, p.69. ; http://cafe.naver.com/msnageseriz.cafe(2008.1.20.)

출도의 한 도를 장악하고, 중앙부족이 이를 인정하여 부족연맹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가(加)”는 한(韓)·간(干)·감(邯)·가한(可汗)·한(汗)과 같이 만주 및 몽고계열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귀인·대인을 나타내는 칭호로 부족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에 가축의 이름을 부여한 것은 목축 경제사회에서 가축 자본에 따른 족장의 칭호가 그대로 계급분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205]
옥저(沃沮)에서는『삼국지』위지의 동옥저조에 “고구려는 대가(大加)로 하여금 옥저의 조부(租賦)[206]를 담당하여 받아들이게 하였다.(高句麗復置其中··· 又使大加統責其租賦)”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후한서 동이전(東夷傳) 동옥저조에도 옥저에 조부제도가 실시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207]
동예(東濊)에서는 “산천을 소중하게 여기고 산천에는 각각 부분이 따로 있어 아무나 함부로 출입하고 상관하지 못하며 부락끼리 서로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죄주어 그 벌로 소나 말을 내 놓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책화(責禍)라고 한다.”라고 기술하여[208] 산천 또는 각 읍락(邑落) 사이에 토지의 구분소유 법속(法俗)이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9]
삼한(三韓)에서는 부락공동체의 토지소유 형태를 취하여 공동경작과 공동분배가 행하여지고 산림과 제지(堤池) 등도 공동소유에 속하였다. 이러한 공동소유제는 오늘날의 종중 또는 문중재산의 기원이 되었다고 본다.[210]
위와 같이 부족국가 시대의 유물이나 사료가 남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토지·지세 및 지적관련 제도 등에 관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이들 업무가 미분화된 상태로 토지에 대한 조세를 받아들이고, 소유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흡한 지적 관련 업무가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3절 삼국시대

1. 백제

1.1 건국과 멸망

백제(百濟)[211]는 삼국사기에 기원전 18년에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인 온조<온조

205)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B6%9C%EB%8F%84(2020.11.10.)

206) 조부(租賦)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조부(租賦)·공세(貢稅)·공조(公租)·세(稅)·세전(稅錢)·세금(稅金)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207) 대한지적공사, 2005(b), 앞의 책, p.71.

208) 대한지적공사, 2005(b), 위의 책, p.72.

209) 김경열, 1991, 앞의 논문, 1977. p.71.

210) 김경열, 1991, 위의 논문, 1977. p.72.

211) 백제(百濟)는 475년에 고구려의 침략으로 위례성에서 밀려나 수도를 웅진성으로 옮겼으며, 538년에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바꾸면서 다시 수도를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옮겼다. 따라서 오늘날의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국가로서 백제의 지적관련 제도와 행정조직·공부(公簿)·자(尺)·조방제(條坊制)·측량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백제 지적제도의 기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적사』에서는 고구려에 앞서 기술하였다.

왕, 溫祚王, 재위 기간 : 기원전 18년~28년>가 그의 형 비류(沸流)와 함께 남하해 위례성<慰禮城 : 현재의 서울>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백제의 최고 지배층을 형성한 집단 중 일부가 고구려와 관련을 가진 이주민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과 풍납동 일대를 비롯한 한강 하류지역에 산재한 백제 초기의 적석총(積石塚)이 고구려의 발상지인 압록강 중류지역의 무덤양식과 통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백제는 제8대 고이왕<古爾王, 234년~286년> 때에 낙랑군과 대방군, 말갈족을 북으로 밀어 내면서 영토를 넓히고 중앙에 6개 좌평(佐平)을 두고 16품의 관등제(官等制)를 제정하여 고대 왕국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제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 때에는 마한을 멸하여 전라남도 해안까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212]

백제는 475년 제21대 개로왕<蓋鹵王, 재위 기간 : 455년~475년> 21년에 고구려의 침략으로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서 밀려나 수도를 웅진성<熊津城, 현재의 공주 : 곰나루라고도 한다.>으로 옮겼으며, 538년 제26대 성왕<聖王 재위 기간 : 523년~554년> 16년에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바꾸면서 다시 수도를 웅진성에서 사비성<泗沘城, 현재의 부여>으로 옮겼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제31대 의자왕<義慈王, 재위 기간 : 641년~660년>은 즉위 초부터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신라를 크게 압박했으며, 안으로는 왕자 41명을 좌평에 임명하고 식읍(食邑)을 하사하는 등 왕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지나친 공격전은 국력의 소모를 가져왔고, 귀족세력의 이탈과 함께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다.

결국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의 공격을 받아 의자왕 20년인 660년에 항복하고, 왕과 태자 등 1만 2천여 명이 소정방에 의하여 당나라로 끌려감으로써 백제는 건국 후 31대 700여 년 만에 멸망하였다.[213]

1.2 지적관련 제도

백제는 토지가 비옥한 한반도의 서남부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위치하여 해양 지리적 조건이 좋아서 이른 시기부터 중국 대륙과 해상을 통하여 빈번한 교섭을 가졌고, 많은 고대 문화를 받아 들였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형제국으로 인정하여 자체적으로 창발(創發)한 우수한 백제문화를 전파하였다.

백제는 국가 체제의 정비과정에서 건축·토목·천문·지리·미술 등 많은 분야에서 지리적 상식이 풍부하여 찬란한 문화를 계발했지만 아쉽게도 660년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역사상에서 지워져 백제에 관한 역사적 사료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백제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그 찬란한 문화의 정수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 자(尺)의 발견은 성곽축

212) 한영우, 2003, 앞의 책, p.105.

213) 한영우, 2003, 위의 책, p.118.

조・토지측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백제는 국가체제를 갖춘 후에 사회경제적 질서를 확립하면서부터 사회 모든 분야 그 중에서도 토지에 관한 관리제도를 크게 중요시 하였다. 고대 국가의 정치는 거의 토지관리에 집중되었고, 토지의 적절한 분급이 공평과세 측면에서 백성의 원한을 사지 않고 국가를 통치하는데 중요하였다. 따라서 토지분급을 계량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하거나 측량된 토지를 전적(田籍)에 기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214]
백제(百濟)의 지적관련 제도는 고구려나 신라와 같이 토지의 국유원칙을 대전제로 하여 토지에 대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그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조(租)를 수취하는 것이었다.[215] 이러한 백제의 토지에 대한 지배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부 특권층의 토지에 대한 지배형태는 족장들의 사적인 토지 소유가 형성되어 있었고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국가직속지(國家直屬地)·왕실직속지(王室直屬地)·부족들에 대한 사전(賜田)·신간지(新墾地)의 개척과 이에 대한 사적 지배, 불교가 융성함에 따른 사원전(寺院田) 등의 지배 형태가 있었을 것이며[216]
둘째, 농민의 토지이용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의 경작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개별적인 경작지 보유는 상부 특권층의 사적 토지에 대한 지배의 팽창 확대로 점차 잠식당하기는 했으나 농민들의 보유 토지가 전부 국가나 귀족 등 특권층에게 침탈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217]
『주서』의 열전에 백제의 "관직에는 16품이 있다. 좌평 5명으로 1품, 달솔 30명은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간솔은 5품, 내솔은 6품이다.(官有十六品, 佐平五人, 一品, 達率 三十人, 二品, 恩率 三品, 德率四品, 杆率五品, 柰率六品)"[218]라고 기록되어 있다.
『북사(北史)』의 열전에 백제에는 "16품의 벼슬이 있다. 좌평은 1품으로 5명, 2품, 달솔은 30명,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우솔은 5품, 내솔은 6품이다.(官有十六品, 佐平五人, 一品, 達率三十人, 二品, 恩率, 三品, 德率, 四品, 杆率, 五品, 柰率, 六品)"[219]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서(隋書)』의 열전동이에 백제에는 "16품의 벼슬이 있다. 제일 높은 벼슬은 좌평이고 그 다음은 대솔, 은솔, 덕솔, 우솔, 내솔, 장덕이다.(官有十六品, 長曰佐平, 次大率, 次恩率, 次德率, 次杆率, 次柰率, 次將德)"[220]라고 기록되어 있다.

214) 서철수, 지종덕, 2001, 『韓國의 地籍史』, 서울, 기문당, p.47.

215) 김경열, 1993, 앞의 책, pp.29~32.

216) 김경열, 1993, 위의 책, pp.30~31.

217) 강진철, 1984, 앞의 책, p.1190.

218) 『주서』 제49권, 열전 제41, 백제,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13.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143.

219) 『북사』 열전 제82, 백제,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30.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179.

『구당서(舊唐書)』의 동이열전에는 “백제에 설치된 관리 중 내관으로 내신좌평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고, 내두좌평은 국고에 수장하는 일을 관장한다. 내법좌평은 예의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위사좌평은 숙위병의 일을 관장하고, 조정좌평은 형옥의 일을 관장하며, 병관좌평은 재외 병마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외관으로는 6대방을 두고 10군을 관리하게 하였다.(所置內官曰內臣佐平, 掌宣納事, 內頭佐平, 掌庫藏事, 內法佐平, 掌禮儀事, 衛士佐平, 掌宿衛兵事, 朝廷佐平, 掌刑獄事, 兵官佐平, 掌在外兵馬事, 又外置六帶方, 管十郡)”[221]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당서(新唐書)』의 동이열전에는 “백제에 설치한 내신좌평은 왕명 출납의 일을 관장하며, 내두좌평은 국고에 수장하는 일을 관장하고, 내법좌평은 예의의 일을 관장하며, 위사좌평은 숙위병의 일을 관장하고, 조정좌평은 형옥의 일을 관장하며, 병관좌평은 재외의 병마의 일을 관장한다. 또 외관으로 6방을 두어 10군을 총관하게 한다.(官有內臣佐平者宣納號令, 內頭佐平主帑聚, 內法佐平主禮, 衛士佐平典衛兵, 朝廷佐平平主獄, 兵官佐平掌外兵, 有六方, 方統十郡)”[222]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의 행정조직은 중국 주(周)나라의 육전(六典)제도를 모방하여 제8대 고이왕<234년~286년, 재위 기간 52년> 때부터 6좌평과 16관등급제도를 두어 행정을 맡게 하였으며, 408년 제18대 전지왕<405년~420년, 재위 기간 15년> 4년에 [그림 1-50]과 같이 왕 밑에 수상격인 상좌평(上佐平)을 수석좌평으로 신설하였다.



출처 : 리진호, 2007,『경주지적사』, 경주시, p.38. 참고 작성.

[그림 1-50] 백제의 6좌평

백제는 6좌평(佐平)[223] 중에서 내두좌평(內頭佐平)으로 하여금 국가의 재정을 맡도

220)『수서』 열전 제46, 동이, 백제,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43.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200.

221)『구당서』 제199상권, 열전 제149상, 동이, 백제,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57.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224.

222)『신당서』 제219권, 열전 제145, 동이, 백제,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87.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280.

223) 백제 시대의 좌평은 1품으로서 최고의 관등이었고, 동시에 귀족회의체의 의장으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좌평의 정원은 처음에는 1명이었으나. 차츰 분화하여 상, 중, 하좌평 등이 만들어졌고, 정원도 5명이 되었다. 한성 시대의 이 5좌평제는 웅진을 거쳐 사비로 천도한 후,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패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자 정원이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내신좌평·내두좌평·내법좌평·위사좌평·조정좌평·병관좌평 등의 6좌평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록 하였으며, 지적관련 행정조직은 <표 1-6>과 같이 한성(漢城) 시대에는 내두좌평, 사비(泗批) 시대에는 곡내부, 점구부 등에서 지적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산학박사(算學博士)를 두고 지적과 측량 등 산학을 가르치는 교수직에 종사케 하였다.[224]

<표 1-6> 백제의 지적관련 행정조직

구분 / 기관	한성 시대	사비 시대		지 방
		내관(內官)	외관(外官)	
담당부서	내두좌평	곡내부(穀內部)	점구부(點口部)	방령(方領) ⇩ 달율 ⇩ 군장(郡將, 郡守)
담당업무	재무·회계	양정	호구·조세	

출처 : 김영학, 1996, "지적행정의 사적 고찰",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7. ; 리진호, 2007,『경주지적사』, 경주시, p.39. ; 류병찬, 2012, 『신편한국지적사』, 서울, 건웅출판사, p.151. 재인용.

백제의 지적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다. 아마 최고 지배자인 국왕으로부터 내두좌평 및 지방장관인 방령(方領)으로 이어지는 계열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225] 남원(南原)조에, '읍내리전 취법정전 획위구구 지금유지상존(邑內里廛 取法井田 劃爲九區 至今遺址尙存)'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전통적인 구획방식인 9개의 구획으로 된 정전제(井田制)가 600년전에도 백제땅이었던 남원(南原)에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제의 왕경 부여에도 조방제에 가까운 기반식 토지구획 정리에 의한 사비도성 조영이 있었음이 여러 유적에서 발굴된 유적을 통하여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은 두락제(斗落制)와 결부제(結負制)에 의하여 산정을 하였는데, 두락제는 볍씨 한말로 모를 부어 낼 수 있는 논의 넓이 또는 밭의 넓이를 말하며, 한 석(石)의 씨앗을 뿌리는 면적은 석락(石落), 한 되는 승낙(升落), 한 홉은 홉락(合落)이라 하며, 두락은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데 대개 논은 150~300평, 밭은 100평 안팎이며, 열 되지기<升落只>가 한 마지기이다.[226]

결부제는 신라의 결부제와 같이 1척 사방인 1파(把)를 최소면적 단위로 하여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부를 1총(總), 10총을 1결(結)로 하는 10진법의 면적계량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227] 파(把)는 손바닥에 들어오는 벼 한 줌이

224) 류병찬, 2012, 『신편한국지적사』, 서울, 건웅출판사, p.151.

22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1530년(중종 25년)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증수, 편찬한 책으로 5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서이다.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년) 50권으로 편찬되었다.

226) 대한지적공사, 2005(a), 앞의 책, p.730.

라는 뜻이며, 속(束)은 뭇<묶음>이라는 뜻으로 벼 한 뭇·두 뭇 등으로, 부(負)는 짐<지게>이라는 뜻으로 벼 한 짐·두 짐이라는 수확량을 표시하다가 그것이 바닥면적을 표시하게 변하였다.[228]

그리고 산사(算師)가 있어 구장산술(九章算術)의 토지측량방식, 즉 지형을 당시의 측량술로 측량하기 쉬운 여러 형태로 구별하는 측량법을 행하고 또한 화사(畵師)가 있어 회화적으로 지도나 지적도 등을 작성하였으며,[229] 토지를 측량하거나 측량된 토지를 전적(田籍)에 기재하는 방식이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230]

삼국유사 권2 남부여·전백제·북부여조에 백제는 도적(圖籍)[231] 즉 지도와 서적이 있었다.(其時圖籍之內 有餘冊二字)라는 기록이 있고 또한 지리지(地理志)도 있었다고 하며,[232] 특히 일본의 가장 오랜 역사기록 중의 하나인 일본서기(日本書紀)[233]에 의하면 백제는 602년 10월 무왕(武王)때에 관륵(觀勒)이라는 승려가 천문서적·방술서(方術書) 등과 함께 지리서를 일본에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다.[234]

위와 같이 백제(百濟)는 내두좌평(內頭佐平)·곡내부(穀內部)·점구부(點口部) 등에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였고 이의 관할아래 지적과 측량을 관리하는 산학박사(算學博士)를 두고 전문적 기술 사무에 종사케 하였으며, 길이의 단위로 백제의 자를 사용하였고, 토지의 면적계산은 두락제(斗落制) 또는 결부제(結負制)에 의하였으며, 전적(田籍)·도적(圖籍)과 지리지(地理志)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235]

1.3 백제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백제는 천문지식 및 항해지식이 상당이 높은 수준에 있었고 토지측량에 따른 전적도 발달되어 있음을 고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본기에 보면, 백제 의자왕때 왕세자 41명에게 각각 식읍(食邑)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왕자들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분배하려면 토지 계량(計量)이 있었을 것이다.[236]

227) 이춘령, 1964, 『이조 농업기술사』, 한국연구원, p.26. ; 대한지적공사, 2005(b), 앞의 책, p.94. ; 김종현, 1977.1. "지적제도변천사", 『지적』, 대한지적공사, pp.68~71.

228) 이종호, 1999, 앞의 책, p.190.

229) 김종현, 1977.1, 앞의 논문, 1978.1. p.88.

230) 대한지적공사, 2005(b), 앞의 책, p.88.

231) 도적(圖籍)이라 함은 토지의 위치나 소유자 등을 나타낸 오늘날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일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에서는 지도와 호적이라고도 한다.(개리 레이야드 지음, 장상훈 옮김, 2011, 『한국 고지도의 역사』, 서울, 소나무, p.26.)

232) 『삼국유사』 권2, 남부여조.

233) 일본서기(日本書紀)리 함은 일본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정사(正史)로, 일본의 육국사(六國史)의 첫 번째에 해당하며, 고사기(古事記)까지 포함하면 현존하는 두 번째로 오래된 일본 역사서를 말한다. 720년에 덴무 천황<天武天皇, 631년~686년>의 명으로 완성하였으며, 일본의 신화 시대부터 지토 천황<持統天皇, 645년~703년> 시대까지를 취급하였으며, 한문 편년체로 구성되어 있고 전 30권, 계도 1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계도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234) 조규전, 2003, 앞의 책, p.17. ; 한영우 외 2인, 2005, 앞의 책, p.15.

235) 김종현, 1997.12, 앞의 논문, p.88.

三國史記 本紀 義子王, 十七年 春正月 拜王 庶子四十一人爲佐平 各賜食邑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남부여(南夫餘)조에는, 아래와 같은 토지대장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所夫里者 扶餘之別號也 又按量田帳籍曰 所夫里郡 田丁柱貼 今言 扶餘郡者 復上古之名也 百濟王姓 扶氏 故稱之’
‘又昔者 河南置林州刺史 其時圖籍之內 有餘州二字 林州 今佳林郡也 餘州 今之夫餘郡也 百濟地理志 曰 後漢書曰 三韓凡七十八國 百濟是其一國焉’라는 기록이 있다.
즉 ‘소부리라는 것은 부여의 별칭이다. 양전장적(量田帳籍)이 말하는 것은 소부리군 전정주첩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말하는 부여군이란 옛날의 이름을 다시 찾은 것이다. 백제왕의 성이 부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또 옛날에 하남에 임주자사(林州刺史) 를 두었는데, 그때의 도적(圖籍) 중에 여주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 임주는 지금의 가림군(佳林郡)이고, 여주는 지금의 부여군이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전장적과 전정주첩(田丁柱貼), 도적이란 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37] 양전장적은 글자 그대로 토지측량대장이고, 전정주첩 역시 신라말 고려초에 작성된 토지대장이다. 도적은 그림지도(繪圖)가 그려진 장부로 일종의 지적도이다. 백제에는 산사(算師)·풍수사(風水師)·여지가(輿地家)·화공(畵工) 등의 직이 있어서 토지측량과 도면 작성에 참여하였고,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전해오는 구장산술(九章算術)이나 주비산경(周髀算經)을 이용하여 토지측량을 수행하였다.
물론 면적 산출이 용이한 방전(方田)·직전(直田)·규전(圭田)·제전(梯田)·원전(圓田)·호전(弧田)·환전(環田) 등의 기준형태로 구획 측량하여 면적을 산출하였다. 이런 방식은 측량기기가 발달되지 못한 고대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인 것이다.
1971년 7월 공주 송산리 고분의 배수로 공사 중 무령왕릉(武寧王陵)이 최초로 발견되어, 발굴결과 많은 부장품 가운데 매지권(買地券)이 기록된 지석(誌石)이 2개 발견 되었다. 왕의 지석은 너비 약 41.2cm, 길이 약 35.1cm, 두께 약 4.5cm이고, 왕비의 지석은 너비 약 42.4cm, 길이 약 35~15cm, 두께 약 4.3~6cm 장방형 평판마석으로 암질은 각섬암류에 속한다.
무령왕 지석(525년)의 표면에는 영동 대장군인 사마왕이 62세 되는 계묘년(523년)에 사망하여 안장한 기록이, 이면에는 소위 묘지방위도인 능역도(陵域圖)가 그려져 있다.
이 능역도는 묘지에 대한 방위도로 면간의 일변이 절단되어 그 자리에 선만 내려긋고 방위 간지(干支)가 각입되어 있지 않다. 지석가운데 천공이 있는데 이는 도면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방위상의 중심일 뿐 확정된 능역은 아니다.
도곽선 상에 걸쳐서 방위 간지가 기입된 것으로 보아 간지는 주변의 거리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가 되고 있다. 무령왕릉의 지석 후면 방위도는 능역의 경계를 표시한 일종의 지역경계도이다.

236) 金富軾, 三國史記, 이병주 역주, 1995, 삼국사기, 하권, 을유문화사, p.87.

237) 一然, 三國遺事, 신태영 옮김, 2012, 한국인문고전연구소, 원문과 함께 보는 삼국유사, pp.200~201.

무령왕비 지석(529년) 표면에는 백제국 왕대비가 돌아가시자 정서방(正西方) 땅에 상을 치르고 529년에 개장하여 무령왕과 합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면에는 “돈 1만문(一万文), 오른쪽에 1건,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앞에 있는 돈으로 토왕(土王), 토백(土伯), 토부(土父), 천상천하의 2천 석질의 여러 관리들과 도모하여 남서 방향의 땅(申地)을 매입하여 묘를 만들었기에 문건으로 명증을 삼으니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즉 문서계약일은 을사년 8월 12일이고 매주는 백제 사마왕으로 토지신에게 돈을 지불하고 신방지(申方地)에 묘터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가운데 토지매매와 관련된 왕비 지석의 이면에 쓰여진 원문은 아래와 같다. 지석에 쓰인 글씨 중 토왕은 전체 토지신, 토백은 지역 토지신, 토부모는 묘역 토지신을 상하 중관(上下 衆官)은 여러 관인, 권은 문권(文券)을 말한다.[238]
(원문)

錢一万文右一件
乙巳年八月二日 寧東大將軍
百濟斯麻王以前件錢 詢口土王
土伯 土父 母上下 衆官 二千石
買申地 爲墓地 故 立券爲明
不從律令

무릉왕능에서 출토된 이 금석문이 백제의 지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료는 아니지만, 토지관련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왕실이란 귀족신분 계급에 발판을 둔 특성과 능의 구역 및 그 능에 관하여 신으로 부터 토지를 구입한 사실 등을 기술하고 있기에 한계성은 있지만 , 이 능역도에서 백제의 토지관련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백제에서는 토지의 위치표시를 간지로 방위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
백제시대에는 토지면적 산출에 실제의 토지를 일정한 형태로 구획하여 그 틀에 맞추어 계량하는 측량방식이 행해지고, 토지분급과 조세징수상의 목적으로 측량된 토지면적과 그 토지지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토지도면과 토지대장류가 작성되었으며, 토지면적은 결부법(結負法)으로, 토지위치 표시는 사표(四標)식으로 하였다.

1.4 백제 자(尺)의 기원과 계량

도량형(度量衡)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문자의 통일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다.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으면 국가를 체계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 도량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尺)이다. 표준척도가 있어야 용량을 재는 표준용기와 무게를 재는 표준저울을 만들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는 중국의 상골척(商骨尺)으로 상(殷)나라 시대의 인간의 뼈로 만든 자라고 한다. 자의 출발이 신체설에서 유래한 것을 보면 상당한 의미를

238) 대한지적공사, 2005(a), "무령왕능 매지권과 능역도", 『지적문화유산』, p.13.

갖는다. 이집트 나일강 유역,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국의 황하 유역,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인 세계 4대 고대문명의 발생지에서 이른 시기에 석각자, 밧줄자, 큐빗자, 곡자 등의 자가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4대 고대문명의 발생과 도량형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삼국의 도량형 단위는 곡식이나 소금 양 등을 나타낼 때는 석(石)·두(斗)·승(升)이, 직물의 경우는 필(匹)이, 신장을 나타낼 때는 척(尺)이, 무게와 관련해서는 근(斤)·양(量)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량형 단위들이 중국의 도량형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도량형 제도가 독창적인 것도 많지만 상당 부분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4 백제(百濟) 본기 2 구수왕(214년~234년) 편에 보면, '구수왕이 초고왕의 장자로 신장이 7자(仇首王 肖古王之長子 身長七尺)'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사람 키를 잴 때 자(尺)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중국의 위서(魏書) 열전 백제(百濟)국 편에도, 척양필부불감자유(尺壤匹夫不敢自有)라는 기록이 있다.

이런 기록은 같은 책 고구려(高句麗) 본기(本紀) 4 고국천왕(179년~197년)편에도, '왕의 신장이 9자(王身長九尺)'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신라본기 4 법흥왕(514년~540년)편에도, '왕의 신장이 7자(王身長七尺)'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미 고구려자, 백제자, 신라자들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도 이 당시 삼국에서는 자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도량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尺)이다. 따라서 도량형의 기원도 척도(尺度)에서 시작되었다. 인신척(人身尺)으로 10지폭이 지척(指尺)으로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주척(周尺)으로 통용되었다. 『한서』 율력지에 의하면 척도의 단위를 분(分)에서 분별하고, 촌(寸)에서 헤아리고, 척(尺)에서 재고, 장(丈)에서 펼치고, 신(伸)에서 끌어내어, 온갖 물건을 재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척도 단위도 이에 근거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도량형조에 보면 길이 단위로 리·분·촌·척·장 등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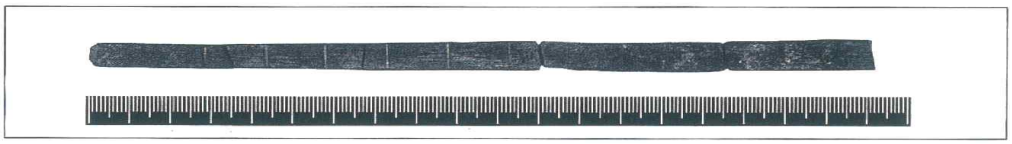
부피나 무게의 기준은 언제나 척도(尺度)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도량형의 기원도 척도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서 한 뼘[한자 ; 1尺]이 척도의 기준이 되었고, 이는 나중에 주척(周尺)으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표준화된 도량형기로서 척도의 제도는 『한서(漢書)』 「율력지(律歷志)」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기록에 따르면 12율의 기본음인 황종관(黃鐘管)을 검은 기장알로 90등분하여 그 1등분을 1분(分), 10분을 1촌(寸), 10촌을 1척(尺), 10척을 1장(丈), 10장을 1인(引)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척도제 문헌기록이나 부여 쌍북리나 하남 이성산성 등에서 출토되는 자로 보아 삼국시대에는 법제화(法制化)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백제는 부여의 쌍북리에서 출토된 [그림 1-51]과 같은 자를 통해 척도제가 꽤 뿌리 깊게 정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백제의 길이 단위는 부여 쌍북리에서 출토된 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는 사비기의 유물이고 그것도 1점뿐이기 때문에 620년대 이후 성립된 당척이 적용되어 웅진기와 사비기 전반의 실질적인 길이 단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무덤 등 건축물의 조영 척도 추출을 총해 당시의 척도제를 파악하기도 한다.

25cm 내외인 중국 남북조시대의 척(尺)은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긴밀한 교류관계가 형성된 시기인 웅진·사비기의 무덤 즉 공주 송산리 6호분이나 '능산리형' 석실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능산리 절터 출토의 백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석조사리감, 목간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백제금동대향로는 그 길이가 2자 반이고, 창왕명석조사리감은 3자이다.



출처 : 이강승, 2000.10, "백제시대의 자에 대한 연구(부여 쌍북리 유적출토 자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보』, p.223.

[그림 1-51] 백제의 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자(尺)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시대에 자가 널리 통용되었을 것이다. 최근 하남시 이성산성에서 최초로 고구려가, 부여 쌍북리에서 백제자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백제의 자는 한성기에는 고구려나 신라와 마찬가지로 낙랑군을 통해 들어온 23cm 내외의 후한척(後漢尺)을, 웅진기와 사비기 전반에는 25cm 내외의 중국 남조척(南朝尺)이, 사비기 후반에는 약 29cm 내외의 당척(唐尺)이 사용되었다. 그 후 백제말기에는 35cm 내외의 고구려척도 사용되었다.

웅진기와 사비기 전반의 실질적인 길이 단위인 25cm 자의 흔적은 무령왕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령왕릉의 뒷벽은 25cm 단위자로 11자, 옆벽은 17자로 옹근수가 딱 들어 맞는다. 창왕(昌王) 명석조(銘石造) 사리감(舍利龕)의 높이도 74cm 25cm 단위자로 약 3자가 된다. 이밖에 궁남지와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목간(木簡)의 길이도 25cm로 1자가 된다.

백제는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웅진에서 사비로 이동하면서 도량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성도읍기의 도량형에 대해 종래의 연구에서는 후한척(後漢尺) 즉 23cm로 보았다. 그러나 칠지도의 길이 75cm에 후한척을 대입해 보면 완수로 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남조 동진척 25cm를 적용하면 3자로 떨어진다. 따라서 4세기에 들어와 한성도읍기의 기준척은 25cm로 볼 수 있다.[239] 이 기준척은 웅진도읍기 및

239) 노중국, 2005, "百濟의 度量衡과 그 運用(尺度의 變化를 中心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0집, 한국고대사학회,

사비도읍기의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성왕이 사비도성을 건설할 때 사용된 척도에 대해 일제시대 이래 35cm의 고구려척(高句麗尺)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왔고 해방 이후에도 이 견해는 보완되고 강조되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의 법륭사를 비롯하여 백제 미륵사지, 정림사지 등에 대한 측정치를 토대로 26.7cm라는 자를 추출한 후 이를 고한척(古韓尺)으로 명명하고 사비도성 건설에 이 고한척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비도읍기에 백제가 고구려척이나 고한척을 사용하였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25cm의 자가 영조척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부여 능산리 왕릉군과 능안골 고분군 등의 석실의 크기에 대한 검토와 부여 관북리 유적의 도로 구획과 궁남지 및 군수리 지점의 동서도로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1척=25cm라는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다고 본다.[240]
1998년 부여 금성산 서쪽 쌍북리에서 목간, 기와, 토기 편과 함께 최초로 백제시대 자가 발견되었다. 쌍북리 자는 단면직사각형의 긴막대 형태로 한쪽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길이가 19.2cm 였다. 이 자를 복원해 보면 1.45cm 눈금을 간격으로 해서 29.1cm로 나타냈다. 1자의 길이가 29cm인 것으로 보아 부여 쌍북리 자는 북위(北魏)에서 기원한 30cm 내외의 당척으로 생각된다.
이 백제자는 한쪽만 완형을 유지하고 있고, 그 반대쪽은 파손되어 전체 길이를 알 수 없다. 이자는 단면이 사각형인 기다란 막대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현존 길이는 19.20cm이다. 한편 자의 눈금은 장방형 단면의 넓은 면에 새겼는데, 완형을 유지하고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하여 첫 번째 눈금까지 2.90cm 이며, 그 다음 눈금들의 간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45cm 내지 1.50cm 정도 이다. 이러한 눈금 간격으로 인해, 이 자를 당척(唐尺 혹은 당대척(唐大尺))의 단편으로 추정하였다.
이 경우 첫 번째 눈금은 당척의 1촌(寸), 그 다음 눈금들은 모두 5푼(分) 간격으로 새긴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자는 6촌5푼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는 완형이 아니어서 전체 길이는 알 수 없지만, 자의 폭이 0.8~1.0cm 정도로 좁기 때문에, 1척(尺)보다 길어지면 부러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백제자는 원래 모습이 1척짜리 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41]
당척이 언제 백제에 수용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73년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산경치 무늬벽돌이 29cm인 1자 크기로 만들어졌음을 당척이 사용된 좋은 예이다. 무늬 벽돌이 봉황이나 연꽃 양식으로 보아 그 제작 연대가 630년~640년대에 비정된다. 이것으로 보아 7세기 전반에 백제에 이미 당척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길이 29.5cm 내외인 당척은 제작 연대가 630년~640년대로 추정되는 부여 외리 출토 산경치무늬벽돌(길이 28~29.8cm)에 적용되는데, 무왕 22년(621년) 이후 매년 당나라에 사절을 파견한 사실로 보아 7세기 전반에 도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240) 노중국, 2011, "前近代 韓國의 度量衡과 그 運用", 『度量衡 600選』, 단국대학교 출판부, p.164.
241) 윤선태, 2011, "韓國 古代의 尺度制와 量制", 『度量衡 600選』, 단국대학교 출판부, p.185.

는 백제의 당척(唐尺) 수용이 620년대에 시작된 중국의 당척제 시행시점과 거의 차이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여겨진다.[242]

1.5 백제 왕경 부여의 조방제

최근에 우리 학계에서는 경주, 부여 등 고대도시의 도성(도시)설계의 원형을 밝히기 위한 격자형 토지구획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조방제(條坊制)라고 부르는 이 격자형 토지구획제도는 증보문헌비고・고려사・동사강목・동국여지승람・구암집 기전고(箕田考)・성호사설(星湖塞說)・기적비(紀蹟碑) 등에 단편적이나마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 최근의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평양・경주・부여・진주・전주・남원・상주 등지에서 일부나마 그 유구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아울러 이 격자형 토지구획제도를 복원한 조방도(條坊圖)가 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복원된 조방도 이외에 예부터 이런 특수한 토지구획법이 시행되어 왔다면 이것을 나타낸 옛 조방도는 없을까? 하는 관심을 갖고 조사한 결과 평양의 토직구획을 나타낸 회화식 그림지도나 옛 지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서 그 당시 격자형 토지구획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평양을 그린 조방도에 의하면 정방형의 질서정연한 토지할(土地割)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 이 당시 '寸, 尺, 步, 里'로 대표되는 길이 단위와 '步, 畝, 夫(頃)'로 대표되는 지적(地積)단위 즉, 도량형(度量衡)은 어떤 것이고, 건설기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다.

어떻든 격자형(格子形) 토지구획법은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의 고대도시 및 토지구획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일본 고대 토지구획법으로 대표되는 조리제(條理制)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정전제나 천맥제(阡陌制)를 바탕으로 하여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고대 우리나라의 도시에 있었다는 격자형 토지공간체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대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다.

그러나 상이한 토지제도를 바탕으로 표출되는 고대 중국의 격자형 토지구획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기에 우리나라와 비교하기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즉 중국의 고대 토지구획법은 주대(周代)의 정전제에 의한 것에서 진(秦)의 천맥제((阡陌制), 한(漢)의 대전법(代田法), 당(唐)의 균전법(均田法)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그 형태가 약간씩 전이되어 갔던 것이다.[243]

기원전 5세기경인 춘추전국 시대 말 전국시대 초에 중국에서 호족들이 인민에 대한

242) 국립부여박물관, 2003, 『百濟의 度量衡』, pp.20~43.

243) 이기석, 1997, "한국고대도시의 조방제 연구에 대한 경향과 과제", 『한국의 고대도시구조와 조방제에 대한 국제세미나 자료집』, p.3.

착취와 토지점유가 심하자, 맹자(孟子) 등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토지평균설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오는 정전제(井田制)는 고대의 토지제도에 있어서 공평과세 측면에서 상당히 음미해 볼 만한 제도였다.

1.5.1 조방제의 용어에 대한 검토

조방제(條坊制) 즉 격자형 토지구획을 지도로 나타낸 조방도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국립중앙도서관(한 61-24) 소장의 소금릉도(小金陵圖)는 채색의 사본으로 72.4×123.3cm 크기의 보기 드문 회화식 조방도이다.

이 그림지도는 평양 외성의 격자형 토지구획 상태를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지도의 제목에 나오는 금릉(金陵)은 중국 국민정부의 옛 수도 난징(南京)을 말한다. 금릉(南京)에 비해서 작은 금릉 즉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평양을 지칭한 것이다.

이 조방도(條坊圖)는 1766년 이후에 그려진 회화식 조방도인데 중앙 특히나 왼쪽에 정사각형의 인위적으로 구획된 시가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옛 평양도에도 평양성 밖 외성 안에 무수히 많은 정사각형의 토지할(土地割)이 보이고 '外城・井田・大同江・普通江' 등의 한문 글자가 보인다. 특히 '정전(井田)'이란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는 정전도 즉 조방도이다.

옛 백제 땅인 남원 용성지(龍城志)에 보이는 48방도(坊圖)는 방리제를 채택한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 최하 행정단위를 방(坊)으로 표시한 국내지도로는 드문 것이다.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남원(南原)의 경우 대략 7세기 후반 신라의 새로운 행정구역이 마련되고 이에 중심도시와 5소경(小京)이 지정되면서 이들 지방 중심도시에 방제(坊制)가 일반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남원에서와 같이 백제가 660년 신라에 항복한 이후 당나라의 장군 유인궤(劉仁軌)를 도감(都監)겸 자사(刺史)로 하여 5년간 군정(軍政)을 하였던 시기에 남원에 중국식 방리제(坊里制)가 도입되어 이전 48방도와 같은 지도가 생겨난 것 같다.

약간의 용어의 어원과 개념상 차이는 있지만 보통 토지의 격자형 구획상태를 나타내어 토지할이 정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를 조방도(條坊圖)・정전도(井田圖)・조리도(條里圖)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기성(箕聖)[244]이 평양에 도읍하여 정전(井田)을 구획했다하여 기전도(箕田圖)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

1) 조리제

조리제(條里制)라 함은 오늘날의 경지정리 혹은 구획정리와 같은 것으로 토지의 구획을 대규모로 장방형 혹은 정형(井形)과 같이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정리한 것이다. 토지를 종횡으로 나누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1조(條), 2조(條) 등으로 수를 붙여

244) 기자(箕子)를 말함

나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1리(里,) 2리(里) 등으로 붙여 나갔기에 조리제(條里制)라고 불렀다.[245]

이렇게 하여 사방 36條×36里에 이르면 총 1,286개의 구획이 만들어진다. 또 1리 4방의 일목일목(一目一目)을 각각 종횡 6개로 나누면 도합 36개의 정방형으로 나누어진다. 1리(里)는 금일의 6정(丁)에 해당되기에 1정방형은 1평(坪) 도는 1정(町)이 되어서 3,600보(步)가 되는 것이다.[246]

그런데 이 조리제를 한국에서는 조방제(條坊制), 중국에서는 방리제(坊里制), 북한에서는 리방제(里坊制)라고 부른다. 이 밖에 방제(坊制), 전정제(田井制), 격자형 토지구획(格子形 土地區劃) 등으로도 불린다.

지금까지 조방제를 설명하는 고전 기록에서는 '條'자의 기록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條坊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田), 조(條), 리(里)자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우물 정(井)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幷'으로 표현하여 현재 쓰고 있는 우물 정자 가운데 한 획을 첨가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정전제도하(井田制度下)에서 여덟 집이 모여 살면서 한 우물을 사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우물 정(井)자의 또 다른 의미는 "조리가 있음"의 뜻으로 '井井有條' 혹은 '井井有理' 등에서 보이는 용법이 그 예이다.

주례(周禮)의 '정괘(井卦)'에 나오는 '無喪無得 往來井井'과 '순자(荀子)'의 '유교편(儒敎篇)'에 나오는 井井兮其有理也'가 있는데, 여기서 정자(井字)의 의미는 우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정전제(井田制)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물은 정연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가지런하게 토지 구획된 정전(井田)이야말로 조리(條理)가 있어서 문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247]

원래 조리(條里)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 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며 또 하나 재판의 준거가 되는 사회생활의 도리를 말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정전제와 조리제가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고, 계획된 정전 형태의 토지가 고대에 있어서 문란 되지 않은 토지의 표준이 됨을 알 수 있다.

2) 리방제

리방(里坊)의 토지구획제도는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고 도성(都城) 구획의 최소 단위였다. 위진(魏晉) 남북조(南北朝)시대로 부터 수당(隨唐) 시기까지 선후로 리(里) 혹은 방(坊)이란 칭호가 있었는데[248] 후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리방(里坊) 또는 리방제(里坊制)라고 불렀다. 예를 들면 조위(曹魏) 업북성(鄴北城)의 남반부는

245) 高木菊三郎, 1931, 『日本地圖測量小史』, 古今書院, pp.19~21.

246) 高木菊三郎, 1931, 위의 책, p.19.

247) 趙岡, 陳鐘毅 著, 尹貞粉 譯, 1985, 『中國土地制度史』, 大光文化史, p.11.

248) 『舊唐書』 卷43 職官志, 百戶爲里 五里爲鄉 兩京及州縣之郭內 分爲坊 郊外爲村.

네 개의 작은 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 '長壽, 吉陽, 永平, 思忠里'라고 칭했다.
고고학적으로 그 이전에 이미 일부 도성(都城)내에 종횡으로 교차된 거리에 의해 구획된 대소 상이한 방형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리방의 최초의 형식이다.
이 당시의 리방 구획은 규칙적이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많았다. 즉 중추거리 양측 리방의 면적은 비교적 크고 정방형에 가까우나 외측 2개의 리방은 비교적 면적이 작아 대방(大方)의 1/3밖에 되지 않았으며 평면상 남북향 장방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북위(北魏) 낙양성(洛陽城)의 리방제도를 기록한 '낙양가람기(洛陽伽籃記)'를 보면[249], 이 시기의 리방은 아주 규칙적으로 정방형을 이루고 엄격한 리방 관리기구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京師東西二十里 南北十五里 廟社宮室府曺以外 方三百步爲一里 里開四門 門置里正二人 里四人 門士八人 含有三百二十里
수당(隨唐) 장안성(長安城)은 황성(皇城) 남쪽 주작대로(朱雀大路)의 중추선을 하고 있으며, 이 중추선에 의하여 모든 성(城)이 동·서 양대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동·서가 완전히 대칭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즉 동쪽 남북향 5행(行) 종방(縱坊), 동서향 13열(列) 횡방(橫坊)으로 총54방(坊)과 1시(市)로 구성된다. 서쪽은 남쪽과 같다. 전체 성(城)에는 총 108개 방과 2개 시가 있다. 사실 리방(里坊)의 이러한 배열은 단순한 대칭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일정한 우의(寓意)가 들어 있다.
즉 황성이 동으로 동곽(東郭)까지 동서로 3개의 방(坊)이고, 황성이 서쪽으로 서곽(西郭)까지 동서 3개의 방(坊)이고 남북은 모두 13방으로 윤월이 있는 연도를 상징한다. 황성의 남쪽은 동서 4방으로 사시를 상징한다. 남북은 9방 주례(周禮) 9규법(九逵法)을 취하였다. 이런 형태는 수(隨)의 삼례도(三禮圖)에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당시 도시를 설계할 때 수문제(隨文帝)가 자기의 금기사상을 반영한 것 같다.
예를 들면 황성 남쪽의 4개 종향 방(坊)은 북문을 열지 않는데 이것은 리방이 궁성(宮城)의 남쪽에 있기에 수문제는 기(氣)가 빠져나가 궁궐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들 북문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매개의 방(坊)은 오직 동서 2개의 문만 열게 하였다. 이들 리방은 우선 십자가로 방 전체를 4개구로 구분하고 네 변에 문을 하나씩 두고 다시 "정자항(井字巷)"에 따라 구분하여 16개 구로 구성되었다.[250] 이외에 당대(唐代)의 일부 주성(州城)과 비교적 작은 현성(縣城)에서도 리방이 사거리 형태의 구획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방(坊)이란 서울의 오부(五部)를 다시 세분한 구획으로 고려때 개경(開京)이나 조선시대 한양에 있었는데 오늘날의 동(洞)과 비슷한 규모의 토지구획 단위이다. 일본에서는 '방(坊)'이 도성제(都城制)의 한 구획을 말한다.

249) 北魏, 『洛陽伽藍記』, 1卷 5.

250) 王維坤, 1997, "中國古代都城의 構造와 里坊制의 起源에 관하여", 『한국고대도시구조와 조방제에 대한 국제 세미나 자료집』, p.13.

3) 정전제

정전제에 의한 토지구획법은 고대 노예제 사회의 토지소유제 즉 왕토사상(王土思想)에 기반을 둔 토지균배, 국가세수의 확보, 공동체 형성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상(商)의 전지구획 형식을 답습하여 제도화된 주나라의 정전제는 아주 엄밀하여 정전의 토지계량제도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제(田制)와 상응하는 관개체계와 도로(道路)계통을 확립하였다.[251]

주대의 정전제는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동전(東田)에 해당하는 주례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의 삼진법 전지구획법과 주례(周禮) 지관 수인(遂人)의 십진법 전지구획법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삼진법이란 주례의 고공기에 의하면 1정(井) 가운데에는 3옥(屋)에 9부(夫)가 경작하며 3·3씩 서로 갖추어서 부세를 내고 공동으로 구(溝)를 다스렸다. 1정(井)에 9부(夫)가 있음은 전묘(田畝)에 의거하여 이를 말함인 즉 3부가 아울러서 1목이 되고 3부가 서로 갖추어서 부세를 내며 서로 갖추어서 한가지로 구를 다스렸다. 3옥이 1정을 한가지로 함이란, 정간(井間)에 구가 있기에 한가지로 구를 다스렸다는 것이다.[252]

'九夫一井'을 원칙으로 한 소사도(小司徒)의 정전제는 은왕조의 구일세(九一稅)를 원칙으로 한 공전제 즉 조법제(助法制)를 계승한 것으로 왕성(王城)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의 변두리에 적용된 것이다.

한서(漢書)에 나타난 소사도의 정전제는 부·옥·정(夫·屋·井)으로 진화하는 삼진법의 계량진법을 바탕으로 9백묘의 정방형 토지를 '井'자형으로 9등분하는 토지구획형태를 지니고 있다.

前漢書 食貨志第四 理民之道 地著爲本 故必建步 立畝 正其經界 六尺爲步 百步爲畝 畝百爲夫 夫三爲屋 屋三爲井 井方一里 是爲九夫 八家共之 各受 私田百畝 公田十畝 是爲八百八十畝 除二十畝以爲盧舍 出入相友 守望相助 痴病相求 民以是和睦

이 때 일가(一家)의 경작면적에 해당하는 백묘일부(百畝一夫)의 면적은 사방 백보의 토지로 전제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며 부(夫)의 기본 조합 구획단위인 일정(一井)은 사방 3백보(三百步) 즉 사방 1리(里)의 토지 면적이 된다.

한편 주례 지관 수인의 정전제는 십일세(什一稅)를 원칙으로 한 하 왕조의 공법제(貢法制)를 계승한 것으로 진왕조의 정전제로 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인(遂人)의 정전제는 삼진법에 의한 '百畝一夫十夫一井'의 계량진법과 '遂 · 溝 · 澮 · 川'의 구혁제(溝洫制) 및 徑 · 畛 · 塗 · 道路'의 전간도로제(田間道路制)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형태상으로는 정자형 정전제와는 다른 구획형태를 나타낸다.

주대의 정전 구획법은 전지(田地) 구획뿐만 아니라 읍리(邑里)의 편호 조직체계와 연계하여 택지분할과 여리구획(閭里區劃) 및 성(城)을 계획하는 도성제도와 지방건

251) 賀業鋸, 1985, 『考工記營國制度研究』, 中國建築工業出版社, pp.40~42.

252) 國土開發研究院 譯, 1982, 앞의 책, p.52.

설제도의 기본원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례의 동관 · 고공기(冬官 · 考工記)에 나타난 도성건설제도와 정전구획을 바탕으로 사진법과 배합된 '井 · 邑 · 斤 · 旬 · 縣 · 都' 혹은 십진법과 배합된 '井 · 通 · 成 · 終 · 同'의 정전 조합구획체를 활용한 주례의 지방 건설제도는 정전제와 국토계획 사이의 연관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253]
<周禮> 小司徒, '乃經土地 而井牧其田野 九夫爲井 四井爲邑 四邑爲丘 四丘爲旬 四旬爲縣 四縣爲都..'
<普書地理志> 引用 司馬之法, '地方一理爲井 井十爲通 通十爲成 成十爲終 終十爲同 同萬百里'

1.5.2 조방제의 적용지역

우리나라의 고대도시에 적용된 조방제는 그 기본원리에 있어서 중국의 방리제를 답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 어떻게 어느 도시까지 적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체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평양·경주·전주·부여·남원·상주·부여 등에서 그 유구의 일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각 도시별로 조방제의 적용과정과 조방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주

1531년 중종 때 이행 등이 지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주(慶州)부 고적 조에 보면 '정전(井田) : 신라때의 정전인데 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254] 또 1908년 조선 고종때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전부고(田賦考) I 경계(經界)조에 보면 '경주에 신라때의 정전(井田)의 남은 터가 있으니 혹은 진한(辰韓)의 유제가 아닌가 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255]
위와 같은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중국의 정전제를 모방하여 방(坊)으로 구분된 계획적 토지구획정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 보면 신라 왕도인 경주의 길이는 3,075보, 폭은 3,018보, 35리. 6부라고 기록되어 있다.
王都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 三十五里 六部
또 삼국유사(三國遺事) 진한조(辰韓條)에 보면 신라가 전성기에는 경주에 17만 8,936호가 살고 1,360 방(坊)에, 55 리에, 35 금입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경주 시가지가 1,360방으로 토지구획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新羅全盛之時 京中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
그런데 같은 삼국유사 염불사조(念佛師條)에 보면 경주에 17만호가 살고 360방(坊)

253) 李京贊, 1997, "古代中國格子形 土地區劃法의 變容系列에 관한 硏究", 『土地計劃』 通卷, 88號,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 pp.25~26.

254) 古典國譯叢書, 1978,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民族文化推進會, p.247.

255) 世宗大王紀念事業會, 1988, 『國譯 增補文獻備考』, 田賦考 1, p.27.

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무려 같은 책에서 천개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聲聞于城中三百六十坊十七萬戶
이 당시 사용한 자(尺)를 주척(周尺, 19.91cm)으로 계산하여 3,075보 즉 동서길이를 3,670m로 보고 이를 현 경주 시가지의 동서 길이를 3,900m로 간주하여 24방(坊)이, 남북으로는 27개 방이 설치되었다고 보아 왕경(王京) 전체에 648개 방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왕국·월성·남산·하천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360방이 된다.[256]
이 360방 이론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민덕식 교수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 기록된 월성(月城)과 남산신성(南山新城)의 길이를 현재의 실측치와 비교하여 당척(唐尺, 1척이 29.4cm)이 사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기록도 당척에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257] 그러나 당척이 신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선덕여왕 3년(634년)에 창건된 분황사 석탑이기 때문에 아마도 삼국사기지리지에 기록된 보수(步數)의 자료는 통일신라기의 자료가 인용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왕경의 장 3,075보(長三千七十五步)는 남북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당척으로 계산하면 당척 1보는 6척이기에 18,450척이 된다. 이것은 5,424m가 된다. 그러나 월성과 남한신성에 사용된 척이 실제 길이와 비교하면 29.8~30cm 정도이기에 3,075보의 실제 길이는 측량 상의 오차를 고려하여 약 5,600m정도 된다.[258]
왕경의 광(廣)인 너비는 동서의 폭을 말하는데, 3,018보는 1척을 당척 29.4cm로 계산하면 5,323m가 된다. 본래는 이보다 좀 더 길었을 것이다.
왕경의 장광(長廣)의 차이가 57보이기 때문에 당척으로 계산하면 정방형에 가까우나 남북 길이가 100m 더 길었다는 셈이다. 그는 당시 실측상의 오차를 감안하면 이런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라 왕경 경주는 사방 5,600m 정방형(正方形)으로 설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5,600m 동위척(東魏尺)으로 16,000척에 해당된다. 남북의 길이는 5,600m, 동서 폭은 5,593m정도로 왕경의 총 면적은 약 31.32㎢에 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35 리(里)는 1리(里)를 300보로 계산하여 왕경의 주위를 계산한 수치이다. 신라 왕경의 주위는 약 22,386km에 달하는데 당척으로는 약 74,620척(약 12,436보)로서 약 41.4리가 된다. 삼국사기의 35리는 대략적인 수치이다.
후지시마(藤島亥治郎)는 지적도와 1만분의1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도로·사찰·유적지 등을 실측하여 신라 왕경의 복원을 시도하였다.[259] 신라 왕경의 시가지 편성은 한 변이 약 동위척으로 400척인 정방형 방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좌우경(左右京)으로 양분하였으며, 좌경의 동서길이는 7,120척, 우경의 길이는 7,280척으

256) 윤무병, 1972, "역사도시 경주 보존에 대한 조사,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원, p.131.
257) 閔德植, 1986, “新羅王京의 都市設計와 運營에 관한 考察”, 白山學報, 제33호, 白山學會, p.10.
258) 閔德植, 1986, 위의 논문, p.11.
259) 藤島亥治郎, 1979, 『朝鮮建築史論』, 京仁文化史, 影印本, pp.91~101.

로 합하면 14,400척이 된다. 이에 대해서 남북의 길이는 12,860척으로 분황사 십자로(十字路)를 중심으로 북 3조, 남 3조로 복원한다.
대체로 왕경의 공간범역을 남북 3,075보, 동위척 15,708척으로 보고 동서 3,018보, 동위척 15,090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으로는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신라 왕경이 일본 왕경과 같이 모두 동위척 400척(140m)의 일정한 사각형(一町)으로 되어 있고, 좌우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나성이 없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아 일본의 평성경, 평안경이 신라 왕경인 경주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등 충(濟藤 忠)은 왕경의 공간범위를 동은 낭산(狼山), 북과 서는 하천을 경계로 하고 남은 월성(月城)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월성 주위는 왕궁, 관아가 조성되어 도시의 중추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260]
1:200지적도에 논두렁・길・수로・경로(徑路) 등을 그려 넣고 방을 복원한 결과, 방은 동서의 길이가 84간(間) 152m이고 남북의 길이는 78간 142m의 토지할(土地割)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등전원춘(藤田元春)은 육군측지부 발행의 1:1만 지형도를 기초로 경주 읍성(邑城)과 도로, 토벽, 석호, 호(豪) 등의 유지를 실측하였다. 조사결과 읍성은 일본척(日本尺)으로 방(坊) 6정(町)의 크기이며 6정은 360간인데 호의 외안(外岸)에서 토성 내선까지의 폭이 20간(100척)으로 양측 40간을 제외하면 320간의 실제의 가구(街區)의 크기라고 했다.[261]
전중준명(田中俊明)은 1916년 지형도를 중심으로 왕경의 구성을 왕경(王京)과 왕기(王畿)로 나누고, 왕경의 범역을 남고루(南古壘) 동편 160m에 존재하는 지할선(地割線)을 중심축으로 해서 동서로 조성되었다고 보았으며, 1방(坊)의 면적은 황룡사의 경역(4개 방)을 1개 대방(大坊)으로 보아 동서남북 9방의 정방형 왕경으로 복원된다고 하였으며, 각 방리는 소로에 의해 4구획되어 평(坪, 평성경의 평으로 약 133m 도로 중심간 거리)의 1.2배가 된다고 하였다.[262]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서로 틀리게 나오는 1,360방과 360방의 원인을 밝혀보자. 360방은 1,360방의 오식으로 생각된다. 남북의 장 3,075보는 약 5,600m로서 각방의 남북 길이 동위척(약140m)로 나누면 41조(條)가 되므로 남북 40방이 구획된다. 동서의 광(廣) 3,018보(步)는 약 5,593m로 추정되는데 각방의 동서폭 동위척 470척으로 나누면 35조 즉 34방이 된다.
즉 40×34=1,360방이 된다.
이로서 신라 왕경내의 방(坊) 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진한 조에 기록된 1,360방이 정확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1,360방에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전답・임야(낭삼 전체・남산과 명활산・금강산 일부), 능묘・월성・하천・숲 등이 다 포함된 것이다.

260) 齊藤 忠, 1973, 『新羅의 王京跡』, 新羅文化論考, 吉川弘文館, pp.114~127.

261) 藤田元春, 1929, 『都城考』, 尺度綜考, pp.487~489.

262) 田中俊明, 1990, 『韓國古代遺蹟(新羅編)』, 中央公論社, pp.254~266.

물론 왕경의 범위 내에 있는 전답·임야·능묘 등의 방은 지적도의 역할도 겸했을 것이다.[263]

삼국사기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12년(469년)조에 '춘정월 정경도방리명(春正月 定京都坊里名)'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리 명칭이 469년에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오는 '五十五里'는 거리의 수치가 아니고 왕경내의 행정구역 단위인 리(里)라고 여겨진다. 즉 리(里)는 백제의 항(港)과 유사한 것이다. 1리는 약 25방 정도로 나누어지나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리의 명칭으로 사량리(沙梁里), 오호비소리(烏乎比所里) 등이 있다. 방의 명칭으로는 삼국유사 진한 조 35 금입택 중에 남유택(南維宅) 반향사하방(反香寺下坊)에, 판적택(板積宅)이 분황사상방(芬皇寺上坊)에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처럼 방은 사찰과 같은 건축물 등의 명칭을 붙여 상하방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오늘날에도 주위의 평야, 동서, 남북으로 대소 도로망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이 도로 및 주택의 담장, 전답의 논두렁·유적지 등을 참고삼아 신라왕경의 조방을 복원하고 그것을 지도로 복원한 사례가 많다.

후지시마의 조방도(條坊圖)는 방의 규모면에서 문제점이 보이고 남고루(南古壘)를 경계로 동서 조방이 다소 방위를 달리하여 서부는 대체로 정북을 이루고 있으나 동부는 서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순용(張順鏞)은 대지경계를 나타내는 1:600 지적도를 1:3천지도로 만든 다음 발굴보고서,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왕경의 조방도를 작성했다. 이 조방도는 동서와 남북의 정확한 방향이 잡혀있지 못한 것이다.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작성한 김병모(金秉模)의 조방도는 동서와 남북의 방향이 아주 정확한 것이다. 신라 왕경의 지할 기준에서는 나성(羅城)의 동벽으로 추정되는 남고루가 조방의 남북선으로 추정된다.[264]

2) 평양

고려사(高麗史) 지리지 3에는 '평양(平壤)의 대동강가에 옛성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기자 때에 축성한 것으로, 성내는 정전제(井田制)로 구획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平壤府有大同江 古城其二 一箕基子時所築城 內劃區用井田制 一高麗成宗時所築

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평양부 고적 조에 '기자궁(箕子宮)의 옛터가 정양문(正陽門) 밖에 있다.' 성곽 조에는 '평양에는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이 있는데, 이 성은 곧 기자(箕子)때에 쌓은 것인데 연대가 하도 멀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전부고I에도 '기성(箕聖)이 오자 사람들이 비로써 정전

263) 閔德植, 1986, 앞의 논문, p.14.

264) 민덕식, 1986, 앞의 논문, pp.17~19.

법이 있음을 알았다. 그 제도는 은(殷)나라의 것이고, 그 시대는 주나라 때이며, 다만 그 전한 바는 단지 평양 한 구역 따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265]
이밖에도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 한백겸의 기전고(箕田考), 서명응의 기적비(紀蹟碑), 이익의 성호쇄설(星湖塞說), 평양지(平壤誌), 기자지(箕子志) 등에도 평양의 정전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윤두수가 편찬한 평양지(平壤志)에는 '예로부터 나무를 세워 표지(標識)로 하여 법수(法樹)라고 이름하였는데 중간에 변란을 겪어 목표(木標)가 남은 것이 없다. 그런데 점차 경계가 변란되어 목표가 없어지게 되자 조선 인조 9년(1634년)에 구획을 다시 정측하여 네 구석에 돌을 세워 경계를 한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266]
이 기록으로 보아 정전구획시 경계를 법수로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 택지와 인접한 정지(庭地)의 사적인 점취(占取)가 이루어지고 수익구역 침탈의 문제가 부족 간에 생기자 부족들은 수익지역을 협정하고 나무나 돌 등으로 계표(界標)를 설정하여 외부의 침입자와 그로부터 유입되는 마술, 역신(疫神)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위엄 있는 거목이나 거석 등을 세워 놓기 시작했다. 그 후 인지가 발달되고 공작 기구가 발달됨에 따라 계표인 거목이나 거석이 갖는 신체(神體)로서의 막연함을 벗어나 신상(神像)을 실감할 수 있는 장승이나 법수 같은 조형으로 실현된 것이다.
오늘날 영호남의 도서지방에 가면 법수(法帥, 벅수·법시)라고 부르는 장승이 있어 혹자는 장승의 사투리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수는 장승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발생한 마을 수호신상으로 신력(神力) 즉 주력이 있어 부락 및 부족을 귀신 및 질병으로부터 수호하는 신적 우상으로 부수적으로 경계표역할을 했던 것이다.
즉 법수는 영험한 주술적 능력을 가진 신선(神仙) 즉 선인인데, 선인의 신력(神力)을 나무나 돌에 이식하여 법수하고 부르게 되었다. 선인이 보호해 주는 영역에서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들로 하여금 불치난방의 각종 질병, 외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던 것이다.[267]
평양의 정전제에 대해서는 한백겸처럼 전자형(田字形), 서명응처럼 정자제(井字制)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기도 하고, 또 기자조선 자체를 부인하는, 실존설을 인정하는 학자도 있어 정확한 사실 추적이 어려웠으나. 최근 북한에서 1954년 김책공업종합대학 건설장에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발굴 당시에 평양 외성(外城)의 대도로(大道路) 흔적이 드러났는데 그 위치로 보아 외성의 서문인 다경문에서 동서로 뻗어 외성의 동문인 고리문에 이르는 동서대로가 틀림없다. 도로의 겉면에는 20cm 안팎의 두께로 강돌이 포장되어 있었다.
도로의 너비는 12.6~12.8cm이다. 돌포장길 좌우 측에는 약 60~70cm 너비로 검은

26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8, 앞의 책, p.21.

266) 김종현, 1977, "한국지적제도변천사"(3), 『지적』, 통권 28호, 대한지적공사, pp.49~53.

267) 금두하, 1990, 『벅수와 장승』, 서울, 집문당, pp.62~68.

색 감탕층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대도로 좌우 옆에 있는 물도랑이다. 좌우측 물도랑까지 합치면 대도로의 너비는 13.8~14m이다.
남북으로 거피문을 통과하는 대도로와 함구문에서 중앙대로에 통하는 도로 교차점의 네 구석에서 '법수'라는 도로표식이 알려졌다. 거피문 북향대로에서 법수의 상호 거리는 13.8~13.9m이고, 함구문에서 동서대로에 통하는 법수들의 도로들 사이의 구획너비는 동서 120m, 남북 84m이다.[268]
지방유적은 지금의 광천구역 일대에도 알려졌다. 여기에는 1930년대까지 가로세로 정방형의 정연한 도로구획이 남아 있었다. 1910년에 발행된 지형도에는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일부분만 표시되어 있다.
16~17세기 학자인 한백겸의 구암집과 기전도에 의하면 외성안의 토지구획은 동서 장방형의 평면 형태를 가진 것으로 정양문과 함구문에서 각각 9묘 대로가 남쪽으로 뻗고 이 길들은 외성안의 중심부를 동서로 연결한 고리문-다경문 대로에 이르렀으며 거피문에서 북쪽으로 뻗은 9묘대로는 역시 동서대로에 이르러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구획들 사이에는 3묘로를, 그 내부에는 1묘로를 내게 되어 있다.
19세기 후반기에 발표된 '기자지'의 정전도에는 이 토지구획의 평면이 정방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정전도에 의하면 함구문-정양문에서 각각 남쪽으로 뻗은 대로는 고리문-다경문을 연결하는 동서대로와 서로 교차되어 외성 남벽에 가 닿았으며 거피문에서 북쪽으로 뻗은 대로 역시 동서대로와 교차되어 중성 남벽에 까지 가 닿았다. 어쨌든 기전도나 정전도는 토지구획을 기자의 정전제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대동수경(大東水經)에서, '정전은 본래 9구인데 평양성 외성안의 구획은 가로세로 4전8구로서 모두 64구가 하나의 큰 구획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정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69]
평양외성의 토지구획은 4등분한 밭전 자(田) 형의 리방으로 정전제와 관계없다는 것이다. 리방구획들은 고구려자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정방형구획의 한 변의 길이 84m는 240자에 맞고 장방구획의 동서너비 약 120m는 340자에 맞는다.[270] 평양외성의 리방유적은 6세기 이전부터 고구려인이 수준 높은 토지구획정리제도를 창안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자의 크기는 35~35.5cm내외이다. 이것은 덕흥리벽화무덤(영락18년, 408년)에서 검출되었고, 남한에서는 이성산성에서 실물이 출토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5세기초에는 고구려자가 건축계획에 광범하게 사용되었으며, 이 고구려자는 일본에 전래되어 건축의 문명시대가 시작되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고구려자를 고마쟈꾸(고려자)라고 부른다.[271]

268) 『고구려 평양성』, 1978,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103~104.

269) 정약용, 1814, 『대동수경』, 권3, 패수(20조), 북한 과학원 고전연구소, pp.260~262.

270) 한인호, 리호, 1993, "평양성 외성안의 고구려 도시 리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누계 제86호,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pp.13~18.

27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94, 『조선기술발전사』 2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p.84~85.

3) 전주

전주(全州)시의 격자형 토지구획의 공간적 범위는 동전주천(東全州川)과 전주천(全州川)으로 둘러싸인 현재의 전주 중심 시가지를 형상하는 평탄지에 지적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측경계선과 남측경계선 사이의 길에 해당하는 사방 1,280m 내외의 규모를 지닌 방형(方形)구역이 나타난다.

토지구획 초기에 설정된 기본단위 구획은 진북(眞北) 방향을 기준으로 북18° 동의 편향된 방향성을 지니면서 전체구획 영역의 서북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방 160m 규모의 정방형 단위구획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160m의 일변 길이를 지닌 정방형의 토지 단위구획은 신라 왕경인 경주 및 남원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결국 전주 사기지의 초기 토지구획체계는 종횡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전체 구획영역을 4분하고, 개개의 4분면을 다시 사방 160m 규모의 단위 구획인 구(區)로 16분하는 분할 체계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구를 구획단위로 한 사진법(四進法)의 조합체계를 나타내고 있다.[272]

4) 남원

현재의 남원(南原)시는 통일신라의 남원 소경(小京)의 영역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남원도호부 고적 조에 '정전유기(井田遺基) ; 당나라 유인궤가 도독(都督)으로 부임하여 읍내마을에 정전법을 써서 9개 구역으로 구획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273]

현재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하천이 도상에 사선방향으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도시계획은 엄격한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다. 1917년 제작된 지적도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현 남원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평야에는 동서남북으로 대소의 도로망과 수로의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의 크기는 상주와 마찬가지로 160m 정방형 격자형을 보인다.

5) 부여

(1) 고대 사료에서 찾아본 사비(泗沘)의 토지구획

고려시대 김부식(金富軾)이 저술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제4대 제24대 동성왕조에, '十二년 九월에 왕이 國西의 泗沘原에서 사냥을 하고...이십삼년 팔월에 加林城(林川 聖興山城)을 쌓고 衛士佐平 苗加로 하여금 鎭守케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24대 동성왕 때 최초로 사비라는 지명이 나오고, 부여(扶餘) 들판에서 사냥을 했다는 것이다. 들판은 바둑판 모양의 조방제 형태의 토지를 구획하기에 산지보다는 지형상 유리한 곳이다. 또 동성왕 23년(510년)에 가림성을 쌓았다는 것은 왕도 건설이 계

272) 이경찬, 1997, "전주시가지 격자형 토지구획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기원론적 고찰", 『국토계획』, 통권 90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75~89.

273) 民族文化推進會, 1978,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南原都護府, 古蹟 條,

획공사 중이었던 사비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건조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紀) 제26대 성왕(聖王) 편에, '十六년 봄에 泗沘(일명 所夫里)에 서울을 옮기고 국호를 南扶餘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에서 성왕16년(538년) 봄에 수도를 사비로 옮긴 일, 사비의 지명이 소부리라는 점, 국호를 남부여라고 한 점 등이다. 백제본기(百濟本紀)의 기술 연대에 따르면 웅진도성에서 사비도성으로 이전하여 조영하는데 약 30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보아, 이런 세월을 도성축조에 소비했다면, 사비의 계획적인 도시플랜을 상정 할 수 있다.[274)]
백제본기(百濟本紀) 제30대 무왕(武王) 편에, '三十一년 二월에 泗沘의 궁성을 수리하고 왕이 웅진성으로 거동 하였다. 여름에 가물어서 사비의 役事를 그치었다. 七월에 왕이 웅진에 돌아왔다. 35년 3월에 궁성 남에 못을 파고 물을 십여리 끌어들였으며, 네 못의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속에 섬을 만들어서 方丈仙山에 비기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무왕 31년이 되어서 사비궁의 계획적 중축공사가 이루어지고, 남쪽에 못을 파서 그 속에 인공 섬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방장선산에 비기었다는 것은 중국의 三山의 神 중 하나인 神仙思想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백제본기(百濟本紀) 제31대 의자왕(義慈王) 편에, '十九년 九월에 궁중의 槐木이 마치 사람의 哭聲과 같이 울었으며, 밤에는 槐神이 宮城 南路에서 곡하였다. ..이십년 夏 四月에 市人이 까닭없이 놀라 달아내되...'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서, 왕국의 남쪽에 남로(南路)에 해당되는 道路가 있었고, 市場이 개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도로는 고대 도로배치원칙에 의하면 사비도성의 남북을 달리는 중심적인 가로였을 것이다.
중국(中國)측 사료인 周書 列傳 第四十一 異域 上 百濟 조에 보면, '都下에 萬家 있음. 나누어 五部로 이룸. 上部, 前部, 中部, 下部, 後部를 일컬음. 兵五百人을 둠. 五方路에 方領이 一人 있음' 라는 기록이다. 북사(北史) 百濟 전에 보면, '都下에 五方 있음. 나누어 五部로 이룸. 上部, 前部, 中部, 下部, 後部를 일컬음. 部에 五巷 있음. 士庶가 속함. 部, 兵五百人을 둠. 五方에 格方領이 一人 있음' 라는 기록이다. 이런 유사한 내용은 수서(隋書)에도 보인다.
일인 학자 금서룡(今西龍)은 백제 도성내에 상부(東部)·하부(西部)·전부(南部)·후부(北部)·중부(中央部)의 오부가 있다고 고증했다. 실제로 定林寺의 동북쪽 부근에서 '前部', '上部 全部 川自此以...' 등이 새겨진 표석이 발견되어 현재 부여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사비 도성에 오부(五部)의 행정구역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비의 토지구획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의 발견은 어렵지만, 오부제·남로·표석의 존재 등은 간접적으로 도성의 내부를 구획하는 토지구획의 단초로 찾아 볼 수 있다.

274) 朴海玉, 1992, "百濟泗沘都城의 土地區劃", 『文化歷史地理』, 第4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275~276.

(2) 사비의 격자형 토지구획

백제의 왕경(王京) 부여의 조방제적 토지구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안했지만 이미 일인학자 중촌(中村)씨가 '사바성(泗沘城)의 盆地에는 中國式 都城式의 都城計劃을 엿 볼 수 있다.'라고[275], 정상(井上)씨는 '百濟의 王都 泗沘城에도 中國風의 都城制形式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276] 시사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학자 尹張燮은 사비도성(泗沘都城)의 규모와 토지구획에 대해서, '泗沘城에는 東西一里 三町, 南北一里 十町을 둘러싸는 羅城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277]

그리고 천전 임(千田 稔)은 日本의 아스카(飛鳥) 地域에 있어서 고대 상정지할(想定地割)과의 비교 중에 '扶餘에도 高麗尺 250尺(약 88m)을 1변으로 하는 單位 方眼으로 되는 격자형 토지구획(格子形 土地區劃)의 플랜이 상정될 것 같다.'라고[278] 부여 왕경 사비의 토지구획의 존재에 대해서 시사한 바 있다. 즉 천전 임(千田 稔)은 "日本 大和 飛鳥의 土地區劃"에 관한 연구에서, 고구려, 백제의 도성계획의 영향을 가정 하였다. 그는 백제와 아스카(飛鳥)에 관해서 <元興寺 伽藍 緣起幷流記資材帳>에 모을 수 있는 탑로반명(塔露盤銘)의 기사에서 崇峻元年(588년)에 백제의 昌王에게 法師와 공장(工匠)의 파유(派遣)를 요청하여 그것에 응하여 백제는 令照律師, 惠總法師, 鏤盤師, 寺師, 瓦師를 왜에 보내고 있었던 일이 기재되어 있다. 즉 백제로부터 기술적 원조에 의해서 비조사의 조영이 되었다는 것과 비조사의 가람 중추선을 중시한 것을 합쳐서 생각하면, 비조의 지역계획과 백제의 기술을 관련시키는 상정에 무리함은 없다.[279]

박해옥도 천전 임(千田 稔)과 같이 고려척 1척=35.6cm를 기준으로, 상정지할(想定地割)의 길이를 250척으로 가정하여 단위방안을 적용하여 부여의 토지구획을 복원하였다. 즉 남북 중심선으로 부소산의 山頂 泗沘樓-門址 基礎石-定林寺 五層石塔을 직선축으로 하는 것이고, 동서 중심선은 錦城山 남쪽-나성 東門址를 연결하는 선이다.[280]

성주탁(成周鐸) 교수는 사비도성의 오부제(五部制)에 관해서, '泗沘城의 축성구조는 약 8km로의 羅城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王宮을 중심으로 五部制로 되어있다. 이 오부제는 자연부락 단위에서 설정되었으며, 武王代(599년~640년)에 와서 도성내의 중앙 위치에 있는 定林寺 부근을 중심으로 區劃되었다.'라고[281] 오부제와 가구(街

275) 中村春壽, 1978, 『日韓古代都市計劃』, 六興出版, p.66.

276) 井上秀雄, 1976, 『朝鮮의 都城, 都城』, 上田正昭 編輯, 社會思想史, pp.297~301.

277) 尹張燮, 1984, 『韓國의 建築史』, 東明寺, pp.74~77.

278) 千田稔, 1981, "道와 地割의 計劃(河內역 長谷의 古墳配置의 問題에 관련해서)", 『環境文化』, 第51號, p.51.

279) 千田稔, 1981, 위의 책, p.50.

280) 박해옥, 1997, "百濟와 飛鳥의 都城景觀比較", 『文化歷史地理』, 제9호,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280~283.

281) 成周鐸, 1983, "百濟泗沘都城硏究", 『百濟硏究』, 第13輯, pp.35~36.

區)의 구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즉 부여 나성이 평면형의 원형에 가깝고 도성의 중앙 동편에 금성산이 위치하고 있어 조방제가 실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도성내의 오부제(五部制)는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에서 부(部)의 존재가 처음 보이는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온조왕 31년 조 기사이다.

春正月 分 國內 民戶 爲南北部

즉 '국내의 백성들을 나누어 남북부로 하였다.'라는 뜻이다. 그 직후 온조왕 33년 조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

加置 東西二部

즉 '동서 2부를 더 두었다.'라는 글이다. 이것으로 이미 한성기에는 4부제가 실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제가 웅진기에도 존속했음을 삼국사기 동상왕(東城王) 12년 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徵北部人 年十五歲已上 築沙峴耳山二城

즉 '북부인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사현, 이산, 두 성을 쌓았다.'는 것이다.

전중중명(田中俊明)은 본격적인 조방제는 아닐지라도 주요한 동서남북의 대로가 구획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박순발(朴淳發)은 도성 전체가 조방제(條坊制)와 같은 정연한 토지구획을 이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관북리 일대에는 왕궁과 정청건물이 정연한 구획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하였다.[282] 그는 계속해서 1918년 일제시 작성된 지형도에서 관찰되는 구획가운데 현 부여문화재연구서 동남쪽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했다. 발굴조사에서 들어난 남북대로와 지형도 상의 남북대로를 축척을 통일해서 비교해보면 규모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1918년까지도 사비기 백제의 남북도로가 큰 변화없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발굴된 남북대로를 더 연장하면 도성내 주요 사찰인 정림사지의 서쪽 담장선과 거의 일치하는데, 지형도상의 남북로 역시 그 남쪽 연장선의 동쪽에 정림사지가 위치하고 있어 구획제의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했다. 1918년 일제시 제작된 지형도에 남아있는 토지구획의 내용을 통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사비기 백제의 왕궁은 현재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구획 2개가 합쳐진 동서 약 180m의 폭을 가진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남쪽 정 중앙에 남북도로를 두고 이를 직교하는 동서도로 2개를 각각 약 100m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모두 6개의 구획을 왕궁의 남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왕궁의 동쪽은 발굴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폭 8.9m의 남북대로를 면하고 있으며, 이 도로는 북쪽으로 연장되어 부소산성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정림사의 서쪽 담장선과 나란하게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83]

한편 윤무병 교수는 사비성 전체가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계획되

282) 朴淳發, 2000, "사비도성의 구조에 대하여", 『백제연구』, 31집, pp.119~124.

283) 朴淳發, 2000, 위의 논문, p.122.

어 졌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형상 제약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병호(李炳鎬) 교수는 윤무병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 근거는 첫째, 지금까지 확인된 나성 내부의 도로 유적이 일정한 방향성과 노폭의 규칙성을 갖는 점 그리고 관북리 유적에서 확인된 남북대로(南北大路)와 동서소로(東西小路)는 서로 직각(直角)을 이루며 교차하고, 그 방위를 정확하게 맞추어 시궁하였다는 점이다. 남북대로가 도성의 간선도로로써 중심축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둘째, 나성 내부에서 확인된 정림사지, 군수림사지 유적 등 주요 사원 건축물의 방향이 진북(眞北)으로 도성의 도로 방향과 일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이다. 관북리 정림사지 일원의 남북대로의 방향은 자북(磁北)방향에서 5~7도 정도 동쪽으로 기울어진 진북(眞北) 방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비 나성 내부 전체가 질서 정연한 도성 구획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부소산 일대 금성산 일대 궁남지 남쪽의 상습침수 지역 등은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개발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비 도성의 공간구획을 하는데 사용된 조영 척도는 고구려척으로 (35.6cm)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북리 유적의 남북대로의 너비 8.9m(25척)와 양측면의 동쪽에 75cm(약 2척) 서쪽에 110cm(약 3척)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로보아 남북대로의 넓이는 10.75m 이를 고구려척으로 환산하면 약 30척이 된다.[284]
즉 남북대로는 30척, 남북소로는 15척 ,동서소로는 15척의 길이로 구성되었다고 추정된다.
나성의 동문지가 현재 부여-논산간 도로와 염창리(鹽倉里) 행 도로의 분기점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나성 동문으로 인해 끊긴 부분이 9.5m(약 27척)이라는 수치가 있어 참고가 된다.
이것은 성문을 시설하기 위한 것으로 동서도로 중에서도 남북대로와 같이 30척으로 구획된 대로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비도성은 30척의 노폭을 갖는 동서대로와 남북대로 및 15척의 동서소로와 남북소로로 구획된 4區域-1條의 공간구획이 가장 기초단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285]
따라서 사비도성의 1구역의 크기는 동서 240척, 남북 280척의 남북으로 긴 장방형 평면구획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완수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1조의 평균규모를 산출하면 동서 510척, 남북 590척의 남북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갖는 4구역-1조가 되는 것이다.[286] 전체가 아닌 도성일부만 구획되었다는 사실은 야산지가 많은 한국의 현대 도시 계획에서도 보편적인 사실이다. 도시 전체가 평평한 들판에 위치하지 않고 산지를 끼고서 입지하는 경우, 당연히 전체가 아니고 평지 부분만 국지적으로 구획이 설정되는 것으로 새삼 재론이 필요없다.

284) 李炳浩, 2001, "百濟泗沘都城의 造營과 區劃",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6~65.

285) 李炳浩, 2001, 앞의 논문. p.??

286) 李炳浩, 2001, 위의 논문. p.??

조선일보(1987.11.10일자) 기사에 의하면, 부여에서 백제시대 도로의 첫 발굴 기사가 실려 있다. 발굴조사중인 충남대 발굴조사단(단장 윤무병)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백제 왕궁지인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부여박물관 앞뜰에서 서로 교차하는 남북 30m, 동서 25m, 각각 폭 9~10m의 백제시대 도로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 도로는 우마차가 충분히 교행을 할 만큼 넓고, 특히 남북으로 뻗은 도로는 앞쪽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의 하수구는 바닥에서 길이 1.4m, 폭 90cm, 화강암 3장을 깔았고, 측벽에는 6cm 두께의 나무판자로 옹벽을 만들었으며 나무판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2.5m 간격마다 직경 10cm 내외의 나무말뚝을 막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 교수는, '이 도로의 발견으로 백제가 당시의 수도 부여의 왕궁 주변을 부분적으로 사전 설계에 의해서 건설했음이 확인되었고, 中國의 唐나라 長安의 道路構造를 模倣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서 윤 교수는, '이 도로가 부여 시가지 안의 민가 지역으로 까지 이어져 있으나 개인 소유의 땅이어서 더 이상 추적 발굴은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287]

이 기사에서도 유추 할 수 있듯이 백제 사비왕궁의 중국 장안성(長安城)을 모방한 기반식(基盤式) 토지구획형태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도로가 시내의 민가까지 연속되어있으나 사지이기에 발굴 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 민가인 지역까지 발굴하면 이 도로의 길이는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도로를 이렇게 쌍방 교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구분하는 방식은 수 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대 중국-井田制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square, 고대 로마-century 등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토지구획제도이다.[288]

1.6 백제 측량기술의 일본전파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온 백제는 4세기 중반경에 이르러 야마토정권으로 짐작되는 왜와 공식적인 교섭을 시작하였다. 백제는 삼국 중에서 일본과 왕래가 가장 빈번했으므로 일본에 대한 지식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해상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해양지식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백제와 왜 사이의 주요 교역 루트는 북규슈(北九州) 지역을 매개로 하였다. 백제에서 북규슈에 이르는 항로는 쓰시마(對馬島)를 축으로 할 때, 이키시마(壹岐島)를 지나 북규슈 해변인 마쓰우라반도(松浦半島)에 이르는 루트와 오키노시마(沖島)에서 후쿠오카 북쪽 해안에 상륙하는 루트로 나누어진다. 마쓰우라 반도의 남쪽인 사카현(佐賀縣) 노다(野田) 유적에서 백제 특유의 삼족토기(三足土器)가 남겨진 것은 주로 전자의 루트를 이용한 것인지도 모른다.[289]

일본의 건국신화를 담은 가장 오래된 일본서기(日本書記) 권 22에 백제 602년 10월 무왕(武王)때 관륵(觀勒)이라는 승려가 천문서적・둔갑방술서・지리서 등을 일본

287) 朝鮮日報, 1987.11.10, 제10면, '부여서 백제시대 도로 첫발굴' 기사.

288) 김추윤, 김별, 2009 , 앞의 책, p.38. p.203. p.374.

289) 이도학, 1997, 『百濟史』, 푸른역사 출판사, p.540.

에 가져왔고, 623년에는 승정(僧正)에 임명되었다.[290] 앞서 595년에는 혜총(惠聰)이 법흥사가 창건됨에 따라 고구려 승 혜자와 더불어 이곳에 거주하면서 왜 조정의 실권자였던 쇼토쿠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 성무천왕(聖武天王)이 평성경(平城京)의 동방에 세운 대표적 사찰인 동대사(東大寺) 창건에 공을 세운 행기(行基, 668년~749년)스님도 백제계 후손인물이다.

특히 한반도의 백제와 일본열도의 아스카(飛鳥)는 4세기~7세기에 걸쳐서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빈번한 교류가 많았다. 백제인들이 아스카 문화에 많은 것을 전파시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토지구획에 대한 구체적인 飛鳥, 藤原京, 大齋府 등 에 관한 연구를 그리 많지 않다.

일본 정창원(政倉院)에는 20여종의 전도(田圖)가 있는데 이중 천평승보(天平勝宝) 3년(751년)의 근강국수조간정도(近江國水詔墾田圖)가 현존하는 일본 최고의 지적도라고 한다. 이 지도는 개전지도(開田地圖), 간전지도(墾田地圖) 등으로 불리는 농지지도(農地地圖)인데 마포나 종이에다 조리방격(條理方格) 형태로 산지・수로・도로・가옥・경지 등을 꽤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

백제는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해상을 통해서 중국대륙과 빈번한 교섭을 가졌고, 일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창발한 백제문화를 전파하여 일본의 아스카문화를(飛鳥文化)를 꽃피웠다. 따라서 일찍부터 아직기・왕인・단양이・노리사치계・관륵・혜총 등이 일본에 논어・천자문・불교・천문지리 등을 전래하였다.

660년 7월 백제는 멸망했으나 부흥운동이 일어나 663년 9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백강전투에서 패하면서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고 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에 망명하였다. 이때 655년 백제에서 망명해온 관인 중 400여명은 사가현(滋賀縣)의 남부인 근강국(近江國) 칸지키군(神崎郡)에, 700명은 근강국 가모우군(蒲生郡)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근강국수조간전도는 백제 유민들의 후손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멸망 하기전의 백제에는 상당한 정도의 지적도 제작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후쿠오카현에 남아 있는 옛 백제계 망명자들에 의해서 축조된 대재부(大宰府)도 조방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수준의 측량기술이 백제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다. 대재부 정청(政廳)터에는 현재 강당 초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유구의 범위를 생각해보면 동서남북 각각 방사정(方四町)으로 생각이 들며, 그 동쪽에 있는 관세음사의 강당 초석과 탑의 심초(心礎)를 기준으로 복원해 관세음사의 사역은 동서, 남북 각각 방삼정(方三町)으로 된다. 이것을 지도상에 겹쳐보면 이 부근은 일정방안의 지할(地割)이 보이는 조장제 구획과 같게 된다.[291] 백제(百濟)와 왜(倭)의 교류사를 요약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백제(百濟)와 왜(倭)의 교류사

570) 이도학, 1997, 위의 책, pp.553~554.

291) 福岡縣教育委員會, 昭和 43, 『大宰府와 新羅, 百濟의 文化』, pp.146~148.

연도	주요 내용
364 366 367 369	-백제는 日本列島와의 교류를 시도할 목적으로 현 경상남도 남해안까지 사신을 파견함 -卓淳國(伽倻의 한나라, 현 경남 창원 부근)에 파견된 왜의 사신을 백제로 초청, 오색채견(五色綵絹), 각궁전(角弓箭), 철정(鐵鋌) 등을 선물 함 -百濟 使臣이 가야국 탁순국의 중개로 그곳에 온 왜인을 따라 교역 목적으로 왜에 감 -백제 近肖古王은 왜군까지 동원하여 서남해안의 마한 잔존세력(南伽倻?)을 정복함
397 403 405 461 5세기말	-배제 阿莘왕이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전지태자를 인질로 왜에 보냄 -백제에서 弓月君이 120 縣의 주민을 거느리고 日本列島로 대거 진출시도 -弓月君이 伽倻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던 예하의 주민을 이끌고 일본 기나이(畿內)지방에 정착 -請兵使로 왜에 파견된바 있는 개로왕(蓋鹵王)이 아우 곤지(昆支)를 파견 -5세기말 백제 정정의 불안을 틈타서 百濟 지배층들이 일본열도로 활기찬 진출 시도. 가쓰라이(葛井), 후나(船), 쓰(津)씨 등 세 씨족이 대표적인 씨족임
538	-백제 聖王때 왜에 불교 전파. 경전과 불상을 보내고 사원건축에 필요한 기술자 파견. 유교에 정통한 五經博士도 파견 -당시 왜의 권력자 蘇我馬子와 聖德太子는 佛敎를 축으로 한 백제 문화 수용에 적극 지지하여 大寺院을 건립함. -聖德太子; (四天王寺;大阪), 法隆寺(奈良縣), 中宮寺(奈良縣) -蘇我馬子; (飛鳥寺;法興寺;奈良縣)
665 667 671	-배제 流民 日本列島로 대거 망명, 百濟 官人 400여명 滋賀縣의 남부인 오미국 칸자키군(近江國神崎郡)에 정착 -百濟 官人 700여명 근강국 포생군(蒲生郡)에 정착 -官位가 수여된 70여명의 百濟의 王族과 貴族들을 야마토정권의 요직에서 활약하게 함. 병법, 의약, 교육, 토목분야에서 활약함.

출처 : 박해옥, 1997, "百濟와 飛鳥의 都城景觀比較", p.47.

아스카(飛鳥)[292]는 나라현(奈良縣) 고시군(高市郡) 명일향촌(明日香村)에 있는데, 이 아스카는 추고천왕(推古天王) 즉위 원년(593년)에 시작해서 지통천왕(持統天王)이 아스카에서 등원경(藤原京)으로 도(道)를 이주한 지통8년(694년)까지 약 1세기동안 아스카경(飛鳥京) 시대가 있었다. 비조경 시대 다음이 등원경 시대인데, 이 두 시대와 대재부(大宰府) 창건시대와 겹친다. 추고천왕의 시대에 대재부의 전신으로 알려진 축자대재(筑紫大宰)가 설치되었다. 대재부라는 실제의 명칭이 성립된 것은 문무천왕(文武天王) 시대이다. 대재부와 관계가 깊은 관세음사(觀世音寺)의 창건도 지통천왕이 관계되어 있다. 이 대재부는 남북의 중심선을 따라 좌우, 동서가 균등하게 만들어진 바둑판 모양의 조방제로 만들어진 계획적인 고대 도시 유구이다.[293] 이

292) 아스카(飛鳥)의 지명어원에 대해서 보면, 倭國에 渡來한 사람들이 安住한 곳이기에 처음에는 <安宿>에서 유래했는데,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진출한 한국인들이 집단 이주하여 정착한 땅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라분지 남쪽의 아스카지방은 부여의 지형과 비슷하다. 나라(奈良)라는 도시 이름도 우리말의 국가(國家)를 뜻하므로, 한국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백제에서 왜로 전래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이 시대의 문화를 야마토 정권의 소재지이자 일본 고대국가 형성의 주요 무대였던 아스카(飛鳥)를 취하여 아스카문화(飛鳥文化)라 부른다.

293) 대재부(大宰府; 다자이후)가 위치한 기타규슈는 예로부터 중국 대륙 및 한반도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본이 외부로 부터의 공격을 받을 시에 가장 먼저 적에게 노출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외교면에서는 해외사절을 영접할 고로칸(鴻臚館)이 지금의 하카타(博多) 연안에 설치되었고 다자이후의 통괄을 받았다. 군사적인 면에서 방인(防人)을 통괄하는 방인사(防人司)·주선사(主船司)를 두어, 일본 서부 지역의 방비를 맡았다. 대재부는 외교 및 일본 서부 지역의 군사 방위를 주된 임무로 하면서, 사이카이도(西海道) 9개 쿠니(지쿠젠 ·

대재부는 일본 국가 지정의 특별사적으로 현재 지정되었다.
소화 43년 복강현교육위원회(福岡縣教育委員會)에서 대재부에 대해서 최초로 현재의 중문(中門), 남문(南門) 등에 대해서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하였다. 건물이 1기, 2기, 3기에 걸쳐 조성되었는데, 이 건물 가운데 제1기 건물은 663년(天智 1년) 백촌강(白村江) 전투 패전 직후에 조영된 것이 발견되었다.
백제가 660년 멸망하자 백제 재흥(再興)을 위한 군사원조를 결정한 아스카정부는 제명천왕(齊明天王)을 중심으로 수뇌부가 축자(筑紫)에 이주해서 아스카정부는 백제 구원에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천지2년(天智 2年, 663년) 백촌강 해전(海戰)에서 일본 수군이 완패해서 제해권(制海權)을 상실하고 신라군이 구주(九州)까지 공격할지 모른다는 긴박감에 쌓여 있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백촌강 전투 다음에 아스카 정부는 일지(壹岐), 대마(對馬) 그곳에서 축차국(筑紫國)에 방인(防人)과 봉(燧)을 배치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백제에서 망명해온 옛 고관들을 감독으로 고용해서 대야성(大野城)·기이성(基肄城)을 만들고 장문(長門)에 성(城)도 쌓았다.[294]
대재부의 도성(都城)은 평성경(平城京)의 좌경(左京)·우경(右京)에 해당하는 좌곽(左郭)·우곽(右郭)이 있는데, 각각 1조(條)마다 22조, 1방(坊), 12방(坊)의 조방제(條防制)로 설계·구획되어 있는 도시이다. 대재부의 중심 치소였던 관청의 총면적은 약 25만 4000평방미터이며 조방제로 토지구획을 계획하여 만든 도시이다. 주된 건물로는 정청·학교, 세금을 보관하는 장사(藏司)·세사(稅司), 의료를 맡은 약사(藥司), 장인들이 모인 장사(匠司)·수리기장소(修理器仗所), 손님 접대를 맡은 객관(客館), 군사를 맡아보는 병마소(兵馬所), 주주사(主厨司), 선박을 맡은 주선소(主船所), 치안을 맡은 경고소(警固所), 대재부를 방어하는 오노(大野) 성의 관리를 맡은 대야성사(大野城司), 직물 염색을 맡은 공상염물소(貢上染物所), 종이를 만드는 작지(作紙)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확인된 유적은 적다.
1921년 3월 3일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1953년 3월 31일에 특별 사적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 9월 21일과 1974년 6월 29일에 추가 지정이 이루어졌다
고대 일본의 등원경(藤原京)·평성경(平城京)·평안경(平安京) 등이 바둑판식인 기반목(基盤目)으로 정연하게 토지구획된 조방제로 되어있는 성곽이다. 이러한 일본의 조방제는 당(唐)의 장안성(長安城)을 모델로 해서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한반도를 거쳤고 각각 발해경(渤海京)·신라경(新羅京)-경주·백제경(百濟京)-부여의 적용된 후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등원경은 持統 8년(694년) 아스카에서 천도하여 和銅 3년(710년) 나라의 평성궁(平

지쿠고 · 부젠 · 분고 · 히젠 · 히고 · 사쓰마 · 휴가 · 오스미)와 3개 섬(이키·쓰시마·다네[1])에 대한 죠(掾) 이하의 인사 및 4도사의 감사와 같은 행정 · 사법 업무도 맡았다. 그 주어진 권한의 크기는 한때 「도노 미카도(먼 곳의 조정)」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북부 규슈 6개 구니에서 징발된 사이카이도의 사정(仕丁)들은 모두 대재부로 소집되었는데, 그 가운데 4백 명 정도는 대재부 관인들의 지리키(事力)가 되거나 주선사 등에 배치되었다. 이밖에 관세음사(觀世音寺) 축조에 투입되기도 했다. 또한 이 무렵부터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오는 상선들과의 사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294) 福岡縣教育委員會, 昭和 43, 『大宰府와 新羅, 百濟의 文化』, pp.118~121.

城宮)에 천도할 때까지 16년간의 궁도(宮都)이다. 등원경과 사비도성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동서북쪽에 위치하는 三山에 의해 둘러 싸여있다. 즉 토지수호신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 경관이다. 둘째, 토지구획이 시행되어 질서정연한 시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사원들이 도의 시가지 토지구획에 맞추어 입지되어있다. 넷째, 도시의 남쪽 방위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도성의 입지 지형이 비슷하다.[295] 물론 상이점도 있지만, 이와 같이 서로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제와 왜와의 교류의 단서를 살펴보는 좋은 사례로 행기(行基) 스님을 들 수 있다. 행기스님은 일본측량사에서 측지학자 제1호로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는 백제에서 귀화한 왕인(王仁)박사의 후손으로 서기 668년 화천(和泉)의 국가 대판부(大阪府)의 호족 고지(高志)씨의 아들로 태어났다.[296] 그런데 이 행기 스님이 일본에서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전도인 행기도(行基圖)를 작성해서 측량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화사(仁和寺) 소장의 일본전도(1305,6) 좌측에 <行基菩薩御製東西二天八白七十里南北五百州七里> 라는 명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행기도의 대부분은 행기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행기 스님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설법과 각종 도로, 다리, 항구, 관개시설 등을 건설했다. 성무천왕(聖武天王) 천평(天平) 십년에 국,군도(國郡圖)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면, 행기 스님이 69세가 되었을 때이므로, 이 지도를 바탕으로 전도를 만들고 지도명칭을 행기도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행기도는 일본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가장 오래된 지도이므로 해외에 꽤 알려져 있었다.

특히 왜구의 침입이 많았던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행기도를 기초로 해서 여러 일본도를 만들었다. 조선 태종2년(1402년)에 만든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地圖) 동남쪽 바다 가운데에 일본이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명나라 조정의 사신으로 갔던 김사형(金士衡)이 중국에서 구한 중국지도에 새로 조선과 일본을 그려 넣었는데, 현재 일본의 경도의 용곡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상에 그려진 일본도가 행기도에 영향을 받아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하단에는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발문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이 지도는 박돈지(朴敦之)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구해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된다.[297]

2. 고구려

2.1 건국과 멸망

고구려 역시 건국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신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295) 박해옥, 1997, “百濟와 飛鳥의 都城景觀比較”, 『文化歷史地理』, 제9호,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p.57~58.

296) 遠藤博, 1994, 『測量의 歷史』, (주)가이야마구치, p.21.

297) 김추윤, 1998, “行基圖”, 『地籍』, 11월호, 제284호, 대한지적공사, p.??. 페이지 확인요망

데, 고구려의 신화는 우리의 사서인 『동명왕편(東明王篇)』·『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제왕운기(帝王韻紀)』 등의 기록과 중국의 사서인 『양서(梁書)』·『위서(魏書)』·『북사(北史)』·『주서(周書)』·『수서(隋書)』 등에 기록되어 있다.[298]

『후한서』의 동이열전에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되는 곳에 있다. 남쪽은 조선과 예맥과 접하고 동쪽은 옥저, 북쪽은 부여와 접해 있다. 그 지역은 2천리이고 큰 산이 많다. 사람들은 골짜기를 따라서 사는데 밭이 적어서 힘써 농사지어도 자급하기에 부족하여 먹는 것을 절약한다.(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 濊貊, 東與沃沮, 地方二千里, 多大山深谷, 人隨而爲居, 少田業, 力作不足以自資, 故其俗節約飮食)"[299]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지』의 위서 오환선비동이전에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으며, 남으로는 조선과 예맥, 동으로는 옥저, 북으로는 부여와 이웃하고 있으며, 도읍은 환도아래에 정했다. 사방이 약 2천리이고 3만호가 있었다. 그곳은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으나 평야나 못은 없다.(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 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都於丸都之下, 方可二千里, 戶三萬, 多大山深谷, 無原澤)"[300]라고 기록되어 있다.

초기의 고구려는 부여 및 전한의 4개 군현과의 투쟁 속에서 성장하였고,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구려는 소노부·절노부·순노부·관노부·계루부의 다섯 부족이 있었으며, 본래 소노부에서 왕이 되었는데 차츰 힘이 약해지자 후에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凡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其置官)"[301]라고 기록되어 있어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동명성왕(東明聖王) 주몽<朱蒙, 재위 기간 : 기원전 37년~기원전 19년>이 한반도 북쪽과 중국 동북지방 일대에 자리 잡고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의 졸본(卒本)[302]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하였다.

고구려의 시조(始祖) 주몽(朱蒙)은 강을 다스리는 신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와 하늘나라 황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가 만나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햇빛과 물은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양과 물을 잘 숭배하지 않으면 하늘의 노여움을 사 농사를 망치고 굶주리게 된다고 믿었다. 즉 태양과 물의 자손인 주몽과 그 자손인 고구려왕을 무조건 따르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신화

298) http://blog.naver.com/yoonmi(2008.1.10.)

299) 『후한서』 제85권, 동이열전 제75, 고구려,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37.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37.

300) 『삼국지』 제30권,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제30, 고구려,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62.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61.

301) 『후한서』 제85권, 동이열전 제75, 고구려,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p.51~52.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37.

302) 졸본(卒本)은 삼국 시대 고구려의 첫 수도로서 지금의 중국 요령성(遼寧省) 환인(桓仁)지역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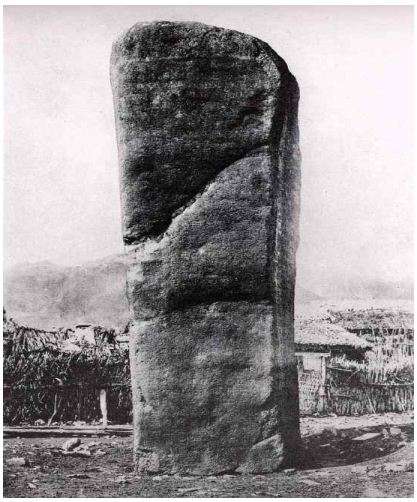
를 만든 것이다.

고구려는 시조 동명성왕으로부터 제5대 모본왕<慕本王, 재위 기간 : 32년~53년>에 이르기까지는 부족연맹체제(部族聯盟體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집권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6대 태조왕<太祖王, 재위 기간 : 53년~146년>때부터는 고대 국가체제를 갖추어 부족장(部族長) 중심의 정치에서 점차로 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행정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303]

서기 3년<고구려 제2대 유리왕 22년, 재위기간 : 기원전 19년~18년>에 지금의 중국 지린성(吉林省)의 지안(集安)시로 도읍지를 옮겼는데 이곳이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지인 국내성(國內城)[304]이며, 평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425년간 고구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427년<장수왕 15년>에 세 번째 도읍지인 평양(平壤)으로 옮겼다.

따라서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지인 중국의 지린성에는 [그림 1-47]과 같은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를 비롯하여 피라미드 모양으로 돌을 쌓아 만든 장군총(將軍塚)·광개토대왕의 무덤으로 짐작되는 태왕릉(太王陵)·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진 벽화가 있는 무용총(舞踊塚) 등 고구려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305]



주 : 일제 시대의 광개토대왕비 모습
출처 : http://blog.naver.com/ykk209?Redirect=Log&logNo=70157626980(좌),

[그림 1-47] 광개토대왕비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306]<廣開土大王, 재위 기간 : 391년~412년>은 18세의

303) 정시채, 1986,『한국행정제도사』, 서울, 법문사, p.34.

304) 국내성(國內城)은 삼국 시대 초기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이다. 서기 3년<유리왕 22년>에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겨 와서 427년<장수왕 15년>에 평양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425년간 고구려의 수도로서, 그 위치는 지금의 만주 지린성(吉林省) 지안(集安)과 그 배후의 산성을 포함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305) 『조선일보』, 2013.4.18. p.A28.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처음으로 연호를 영락(永樂)이라고 정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함을 과시하였으며, 대규모 정복사업을 벌였다.
후연(後燕)을 공격하여 요동 땅을 차지하고 북쪽으로 숙신(肅愼)을 정복했으며, 남쪽으로 백제를 처서 한강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왜국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왜병을 낙동강 유역에서 섬멸하는 등 일생 동안 64개의 성(城)과 1,400개의 촌을 공파했으며,[307] 410년에는 동부여를 정복하고, 이어서 북부여를 무릎 꿇게 함으로써 랴오허강(遼河) 동쪽으로부터 중국 동북부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여[308] 21년의 재위기간에 우리나라 역사상 영토를 가장 크게 넓힌 정복대제(征服大帝)가 되었다.
이어서 장수왕[309]<長壽王, 재위기간 413년~491년>은 427년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남하정책(南下政策)을 펴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을 함락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였으며, 부족제도를 지방제도로 고쳐 5부(部)[310]를 신설하고 부 아래에 성(城)과 진(鎭)을 두는 등 79년의 재위기간에 고구려 역사상 가장 국력이 충실한 전성기를 누렸다.
고구려는 668년에 마지막 왕인 제28대 보장왕<寶藏王, 재위 기간 : 642년~668년>이 나·당(羅·唐) 연합군과의 싸움에 패함으로써, 건국 후 28대 700여 년 만에 멸망하였다.[311]
고구려는 10월에 풍년이 들기를 빌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는 농제인 동맹(東盟) 또는 동명(東明)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하였는데, 이는 모든 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정을 의논하고 시조인 주몽신, 즉 동명신과 생모 하백녀(河伯女)를 제사지낸 제천의식을 말한다.[312]
고구려는 율령이 있어 반역자는 화형이나 참형에, 살인자나 전쟁에 패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물게 하였으며, 소나 말을 죽인 자는 노

306)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374~412, 재위 391~412)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이 갖추어 준 바탕에서 대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다. 국경 북쪽으로 연 나라와 남쪽으로 백제 그리고 일본에까지 고구려의 지경을 넓혔으며, 숙신과 동부여마저 그 위력 앞에 떨게 하였다.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자 백성이 모두 생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풍족해졌으며, 온갖 곡식이 가득 익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 보다. 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었다.”(‘광개토대왕비문’에서,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2013.4.18)

307) 한영우, 2003, 앞의 책, p.101.

308) http://kin.naver.com/open100(2008.1.20.)

309) 장수왕(長壽王, 394년~491년, 재위기간 413년~491년)은 광개토대왕의 맏아들로 부왕이 이룩해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남하정책을 펴 475년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蓋鹵王)을 사로잡아 죽였으며, 이로 인해 백제는 수도를 웅진(공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동으로 훈춘(琿春), 남으로는 아산만에서 동쪽의 죽령(竹嶺)에 이르렀고, 북서쪽으로는 랴오허강(遼河) 이동(以東)의 만주지방 대부분을 차지하여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아차산 일대에 20여 개의 보루를 세우고 한강 건너편 백제의 도성이었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 대치하였다.

310) 5부(部)라 함은 동, 서, 남, 북, 중의 방위에 따라 구획한 지방행정구역을 말한다.

311) 한영우, 2003, 위의 책, p.117.

312) http://100.naver.com/100.nhn?docid=49741(2011.4.20.)

비로 삼았다.

2.2 지적관련 제도

고구려(高句麗)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 형태의 권력구조가 형성된 나라로서 지적관련제도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한 국유 원칙을 중심으로 한 토지의 지배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삼국 시대 이래 역대 왕조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유지의 물질적 기초를 왕토사상에 입각한 토지의 국유제(國有制)에서 구하려 하였고, 사인(私人)에 의한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층별로 토지의 경작권(耕作權)과 수조권(收租權) 등을 분급(分給)해 줌으로써 실제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별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국가재정은 분급해 준 토지의 이용 대가로 농민이 지불하는 조(租)[313], 즉 현대적 개념에서의 지대(地代)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의 국유제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왕토사상이라 함은 한국을 포함한 동양사회에 있어서 토지제도를 논할 때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고대 중국 주(周)나라의 정치사상으로 문헌적 연원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인 시경(詩經) 4권 소아(小雅) 대북편(大北編)의 시구(詩句)에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의미는 "천하의 토지는 왕의 토지가 아닌 것이 없고, 천하의 신하는 왕의 신하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는 임금이 모든 땅과 백성을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임금이 공적(公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물(公物)이라는 뜻으로 왕토사상은 역사적으로 토지의 소유구조가 극도로 편중되었을 때 국가가 토지를 재분배하는 전제개혁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314]

왕토사상은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정도전이 왕토사상에 기초하여 토지개혁을 주장하였으며,[315] 실학파의 토지개혁방안으로 주장되었던 공전제(公田制)·정전제(井田制)·균전제(均田制)·한전제(限田制)[316] 역시 왕토사상을 기초로 하여 파생되었다.[317]

313) 조(租)라 함은 농민이 국가나 전주(田主)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세(稅)라 함은 전주가 국가에 바치는 것을 말한다.

314) 한영우, 2003, 앞의 책, p.161. ; 김성옥, 2012, "조선시대의 토지사유제도에 관한 고찰",『집합건물법학』제9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p.164. ; 김하중, 2013, 『중국이야기』(1. 떠오르는 용, 중국), 서울, 비전과 리더십, p.271.

315) 강진철, 1984,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350~351. ; 김성옥, 앞의 논문, p.166. 재인용.

316) 한전제(限田制)라 함은 법령으로 토지소유의 일정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의 토지매매는 인정하되 한도를 넘는 토지는 몰수하는 제도로써 토지 소유의 상한 규제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감소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317) 김삼수, 1979, "왕토사상의 한국적 전개", 『한국사상대계』Ⅲ,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706. ; 김성옥, 앞의 논문, p.166. 재인용.

그리고 신라 시대 이후 조선 시대까지 토지제도의 기본사상으로 계승되어 활용하여 왔으며, 고려 시대의 전시과(田柴科)와 조선 시대의 과전법(科田法)은 왕토사상에 기초하여 국왕이 신하에게 토지를 분배하였는데, 토지소유권은 왕에게, 수조권은 공신에게, 경작권은 일반 농민에게 부여하는 체제였으며,[318]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로써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왕토사상 하에서도 실제로는 농민의 토지인 민전(民田), 즉 사유지가 많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첫째, 상부 특권층의 토지에 대한 지배의 형식으로 고구려는 영토의 확장과정에서 새로 획득된 토지의 일부를 국가나 왕실의 직속지로 소유하고 일부는 각 부족의 수장(首長)이나 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거나 본래부터 그 토지를 보유해 오던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조(租)를 수취하여 국가 재정의 원천으로 삼았으며 둘째, 농민들은 직접 경작하는 소규모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며 농민들이 촌락 안에서 과거의 공동체적인 유대에 의하여 굳게 얽혀 그러한 관계가 그들의 개별적인 토지 보유에도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19]

『후한서』의 동이열전에 고구려 초기의 "관제로서 왕 밑에 상가·대로·패자·고추대가·주부·우대·사자·백의·선인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다.(其官置 有相加, 對盧, 沛者, 古鄒大加, 主簿, 優台, 使者, 帛衣, 先人)"[320]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지의 위서에는 "나라에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대승·사자·조의·선인의 벼슬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각기 높고 낮은 등급이 있다.(其國有王, 其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鄒加, 主簿, 優台丞, 使者, 皁衣, 先人, 尊卑各有等級)"[321]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427년<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천도한 후 행정조직과 관등(官等)의 조직이 수상인 대대로(大對盧)를 비롯하여 태대형(太大兄)·울절(鬱折)·태대사자(太大使者)·조의두대형(早衣頭大兄)·대사자(大使者)·대형(大兄)·발위사자(拔位使者)·소형(小兄)·제형(諸兄)·과절(過節)·부절(不節)·선인(先人) 등 10여 관등으로 정비되었다.[322]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위서』의 열전에는 "그 나라의 왕은 궁실을 잘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그 나라의 관직명에는 알사, 태사, 대형, 그리고 소형이라는 칭호가 있다.(其王好治宮室, 其官名有謁 奢, 太奢, 大兄, 小兄之號)"[323]라고 기록되어 있다.

318) 채미옥, 정희남, 송하승, 2006,『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1)』, 국토연구원, p.6.

319) 강진철, 1979,『한국문화사대계4』,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p.1184. ; 김경열, 1993, 앞의 책, p.27.

320)『후한서』 제85권, 동이열전 제75, 고구려,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51.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37.

321)『삼국지』 제30권, 위서 오환선비동이열전 제30, 고구려,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위의 책, p.63.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위의 책, p.61.

322)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2008.6.25.)

323)『위서』 제100권, 열전 제88, 고구려,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위의 책, p.103.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위의 책, p.127.

그리고『주서』의 열전에는 “가장 높은 관직은 대대로이고, 그 다음은 태대형·대형·소형·의사자·오졸·태대사자·대사자·소사자·욕사·예속·선인·욕살 등이다. 모두 13등급으로 안팎의 일들을 나누어서 관장하게 하였다.(大官有大對盧, 次有太大兄, 大兄, 小兄, 意俟者,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奢, 翳屬, 仙人幷褥薩凡十三等, 分掌內外事焉)”[324]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수서』의 열전에는 “벼슬로는 태대형·대형·소형·대로·의후사·오졸·태대사자·대사자·소사자·욕사·예속·선인 등 모두 12등급이 있다. 다시 내평과 외평 그리고 5부 욕살이 있다.(官有太大兄, 次大兄, 次小兄, 次對盧, 次意候奢, 次烏拙, 次太大使者, 次大使者, 次小使者, 次褥奢, 次翳屬, 次仙人, 凡十二等, 復有內評, 外評, 五部褥薩)”[325]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구당서』의 열전에는 “고구려에서 가장 높은 벼슬은 대대로이고, 이 관직은 일품에 해당하며, 국사의 전반을 총괄하고, 3년에 한 번씩 교대한다. ----- 그 다음은 태대형이며 정이품에 해당한다. 대로 이하의 관직은 모두 12등급이다. 지방에는 주와 현 등 60여 성을 설치하였다. 큰 성에는 도독에 해당하는 욕살 1명을 두고 다른 성에는 자사에 해당하는 도사를 두었다.(其官大者號大對盧, 比一品, 總知國事, 三年一代. --- 次曰太大兄, 比正二品, 對盧以下官, 總十二級, 外置州縣六十餘城, 大城置褥薩一, 比都督, 諸城置道使, 比刺史)”[326]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신당서』의 동이열전에는 “관직에는 12등급이 있다. 가장 높은 벼슬은 대대로 혹은 토졸 또는 울절이라 하며, 도부(圖簿)를 주관한다. 그 다음은 태대사자라고 하고 또 그 다음은 백의두대형(帛衣頭大兄)이라고 한다. 백의는 선인을 말하며, 그는 국정을 총괄한다. --- 그 다음은 대사자이다. 그 다음은 대형, 다음은 상의사자, 다음은 제형, 다음은 소사자, 다음은 과절, 다음은 선인, 다음은 고추대가라 한다. 고구려에는 60주현이 있고, 큰 성에는 욕살 한명을 두는데 도독과 비슷하다. 다른 나머지 성에는 처려근지를 둔다. 일명 도사라고도 한다. 자사와 비슷하다.(官凡十二級, 曰大對盧, 或曰吐捽, 曰鬱折, 主圖簿者, 曰太大俟者, 曰帛衣頭大兄, 所謂帛衣者, 先人也, 秉國政, --- 曰大使者, 曰大兄, 曰上位使者, 曰諸兄, 曰小使者, 曰過節, 曰先人, 曰古雛大加, 其州縣六十, 大城置褥薩一, 比都督, 餘城置處閭近支, 亦號都使, 比刺史)”[327]라고 기록 되어 있어 문헌마다 서로 약간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주부는 후에 울절(鬱折), 오졸(烏拙)로 변경되었으며, 신당서 동이열전에 “주도부자(主圖簿者)”라 하여 울절이 도부(圖簿)를 주관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에 측량으

324)『주서』 제49권, 열전 제41, 고구려,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위의 책, p.111.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위의 책, p.140.

325)『수서』 제81권, 열전 제46, 고려,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위의 책, p.139.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위의 책, p.192.

326)『구당서』 제199상권, 열전 제149상 동이,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위의 책, p.149.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위의 책, p.207.

327)『신당서』 제220권, 동이열전 제145 고구려,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77.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254.

로 작성된 토지의 도면이나 지지(地誌)상의 도면 등에 관련된 도부류(圖簿類)를 주관한 것으로 보이며,[328] 이때부터 지적부를 의미하는 전부(田簿)와 지적도와 지적부를 함께 의미하는 "도부(圖簿)"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구려의 지적관련 행정조직은 <표 1-5>와 같이 주부(主簿), 오졸(烏拙), 울절(鬱折) 등에서 전부(田簿)와 도부(圖簿)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표 1-5> 고구려의 지적관련 행정조직

위지(魏志)	주서(周書)	수서(隋書)	당서(唐書)	한원(翰苑)	지방(地方)
주부(主簿)	오졸(烏拙)	오졸(烏拙)	울절(鬱折)	울절(鬱折)	욕살(褥薩) ⇩ 도사(道使)
사자(使者)	태대사자 (太大使者)	태대사 (太大使者)자	태대사자 (太大使者)	태대사자 (太大使者)	
	대사자 소사자	대사자 소사자	대사자 상위(上位)사자 소사자	대사자 발위(拔位)사자 상위사자	

출처 : 김영학, 1996, "지적행정의 사적 고찰",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2 ; 리진호, 2007, 『경주지적사』, 경주시, p.34. 참고 작성

고구려는 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조세(租稅)·공부(貢賦)·역역(力役) 등을 수취(收取)하였으며,[329] 길이의 단위로 고구려 척(尺)을 사용하고 면적의 단위로써는 경무법(頃畝法)을 사용하였으며 측량교재로 구장산술(九章算術)을 사용하고 방전법(方田法)과 구고법(句股法) 등에 의한 면적측정법을 사용하였다.[330]
경무법(頃畝法)이라 함은 고대 중국에서 토지를 측량할 때 쓰던 면적 단위법으로써, 전한(前漢) 이전에는 6자 평방의 넓이를 1보(步), 100보의 넓이를 1무(畝), 100무의 넓이를 1경(頃) 또는 1부(夫)라 하였고, 전한 이후부터는 5자 평방의 넓이를 1보, 240보의 넓이를 1무, 100무의 넓이를 1경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와 조선 세종 때에 이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토지 측량에 사용하였다.[331]
토지의 계량단위는 삼국사기 열전 제5 온달전에 "평강왕 시대에 온달이 평강공주와 결혼할 때 공주의 금붙이를 팔아서 토지나 가옥 등을 매매했다는 기록(溫達高句麗平岡王時 --- 賣金釧買得田宅 奴婢牛馬器物資用完貝)"[332]이 나오는데, 토지나 가옥을 거래한다는 것은 토지의 면적측량과 소유권이전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고구려는 군사상·행정상 용도로 국토를 조사 수록한 봉역도(封域圖)[333]를 제작 활용하였는데, 고구려 제27대 영유태왕(榮留太王)이 당(唐)나라의 태

328) 조규전, 2003, 『측량정보공학』, 서울, 양서각, p.17.

329) 김경열, 1993, 앞의 책,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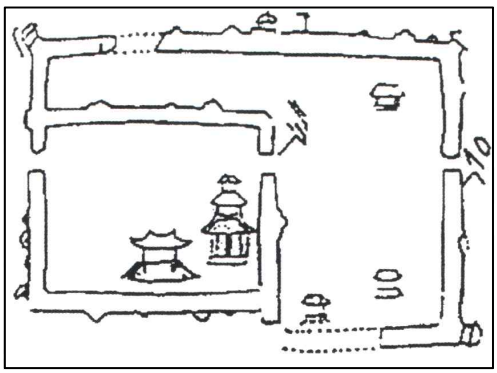
330) 강진철, 1984, 앞의 책, p.363.

331) http://krdic.naver.com(2007.9.14.)

332) 『삼국사기』 열전 제5 온달전.

333) 봉역도(封域圖)는 현재 남아 있지 아니하여 지도의 수록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봉역(封域)이라 함은 흙으로 쌓아서 만든 경계란 뜻도 있어 고구려의 전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종이 즉위한 뒤인 628년<榮留王 11년>에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봉역도를 당나라에 보냈다.(遣使入唐 --- 賀太宗 --- 兼上封域圖)”[334]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고구려에서는 7세기 당시 이미 전국적인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나[335], 실제 도면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봉역도의 제작을 울절에서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336] 그리고 1953년에 평안남도 순천군 북창면 용봉리에서 발굴된 고구려 무덤에서는 [그림 1-48]과 같은 요동성총도(遼東城塚圖)[337]라는 고분벽화가 발견되었다.



출처 : 전상운, 2000,『한국과학사』, 서울, 사이언스북스, p.287.

[그림 1-48] 요동성총도

요동성총도에 그려진 지도는 요동성 안팎의 지형, 성시(城市)의 구조와 시설, 도로·성벽과 그 시설, 건물이 나타나 있고 전실의 남벽 좌우 연문사이에 성곽도(城郭圖)가 그려져 있다. 건물은 기와집과 초가집·누각들이 그 유형에 따라 그려져 있으며, 하천·개울·산·도로 등이 붉은색과 푸른색·보라색·흰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묘사하고 있다.[338]

이 요동성지도는 우리나라에 실물로 현존하는 일종의 도시지도로써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도시도, 경계도, 지적도 등과 같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수사(手寫)에 의한 회화적 수법으로 그려져 있다.[339]

이러한 봉역도(封域圖)와 요동성총도(遼東城塚圖)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고구려에서는 측량척을 사용하여 토지를 측량하고 이를 도화한 오늘날의 지적도와 유사한 토지도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구려인들이 지리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340]

7세기경 일본에서 쓰인 자(尺) 중에 고마척(高麗尺)이라는 것이 있다. 35㎝~36.3㎝ 크기로 환산되고 있는 이 자는 일본에서 각종 건축에 많이 쓰인 자로서 고마(高麗), 즉 고구려에서 건너간 고구려자를 뜻하는 것이다.

334)『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가 제8 영류왕 11년 추9월조.

335) 한영우 외 2인, 2005,『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서울, 효형출판, p.15.

336) 대한지적공사, 2005(b), 앞의 책, p.76.

337) 요동성총도(遼東城塚圖)라 함은 요동성총(遼東城塚)의 도면으로 대동강가의 평안남도 순천군 북창면 용봉리에 있는 고구려의 고분으로 전실의 남벽 좌우 연문사이에 성곽도(城郭圖)가 그려져 있는데, 중앙에 내외성의 2중 성벽을 가진 주성이 있고 인접하여 남쪽과 동남쪽에 조그만 외성의 형태가 보이게 배치되었으며, 내성 내부에는 골기와를 얹은 2층집과 3층 누각이 그려져 있다. 외성 내부에는 서쪽 문 좌우에 단층집이 한 채씩 있는데, 그 오른쪽 집 밑에 해서로 요동성(遼東城)이라고 내리쓴 묵서가 있어 이 묵서에 의하여 요동성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338) 전상운, 2000,『한국과학사』, 서울, 사이언스북스, p.287.

339) 전상운, 2000, 위의 책, pp.298~299. ; 대한지적공사, 2005(a), 앞의 책, p.87.

340) 이종호, 1999,『한국의 유산 21가지』, 서울, 새로운 사람들, p.190. ; 박순표 외 2인, 1993,『지적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p.84.

고구려척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문헌이나 자료에는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일본의 고대 기록들인 『영집해(令集解)』[341]·『영의해(令義解)』[342]·『속일본기(續日本紀)』·『정사요략(政事要略)』[343]·『연희식(延喜式)』[344]등에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있다.[345]

일본의 『영집해(令集解)』에는 "卽以高麗五尺 准令尺大六尺相當" 즉 "고려의 5척은 지금 사용하는 대척 6척에 상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대척(大尺)은 당대척(唐大尺)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려척 5척은 당대척으로 6척이 되니 고려척은 당대척의 1,2배가 된다.

당대척의 길이 또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 내외로 본다면 고려척은 약 36㎝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라함은 고구려를 가리키고 후대의 고려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구려척이라고 부르고 있으나,[346] 고구려척의 유무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2000년 7월에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이성산성(二聖山城)을 발굴하면서 C지구 성지(城池)에서 [그림 1-49]와 같은 목제의 고구려척(高句麗尺)이 실물로 출토되어[347]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고구려척에 관한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이 고구려척은 전체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구간은 5개의 치(寸)로 나뉘어져 있고 각 치는 다시 5개의 푼(分)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 번째 구간은 첫 번째 구간과 마찬가지로 5개의 치로 나뉘어져 있으나 눈금을 세분하여 표시하지는 않았으며,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치나 푼 같은 특별한 표시 없이 그대로 두었다.[348]

고구려를 포함하여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23.7㎝의 한척(漢尺)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341) 『영집해(令集解)』와 『속일본기(續日本紀)는 和銅 6年, 즉 713년에 和銅格이라는 도량형제도를 반포하면서, 大寶律令 때에 5尺을 1步로 했던 척도제도를 다시 6尺을 1步로 바꾼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을 말한다.(유태용, 2006, "고구려척에 대한 신연구", 한양대학교 박물관, p.3.)

342) 『영의해(令義解)』라는 것은 880년경에 쓰여 진 책으로 일본의 척도가 大寶律令(702)때에 중국의 『唐六典』의 척도제도를 따라 대척(大尺)과 소척(小尺)으로 구분된 제도로 정비한 것을 설명한 책을 말한다.(유태용, 2006, p.3.)

343) 『정사요략(政事要略)』은 822년에 額田今足이란 학자가 저술한 것으로 和銅格의 6尺1步는 大寶律令의 5尺1步와 면적이 같은 것이며, 거기에서 얻어지는 쌀도 같은 양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을 말한다.(유태용, 2006, p.3.)

344) 『연희식(延喜式)』은 和銅格이 반포된 이후에는 해의 그림자(晷景)를 재거나 湯藥을 재는 것 이외에는 大寶律令의 小尺과 길이가 같은 和銅格의 大尺이 官·私에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을 말한다.(유태용, 2006, p.3.)

345) 유태용, 2006, 앞의 책, p.3.

346) 이우태, 2007, "고구려척 재론(고구려척과 고려술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동북아역사논총』제17호, p.263.

347) 전상운, 1998,『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271. ; 유태용, 2006, 앞의 책, p.1.

348) 대한지적공사, 2005(a), 앞의 책, p.80.

척도제(尺度制)를 확립하였다. 그 후 고구려 사회에서는 어느 시기엔가 한척의 1.5배가 되는 35.6㎝의 고구려척을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고구려척은 중국의 절대 길이와 절대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지 생산량에 기초한 양전(量田)의 단위면적을 산출하려는 시도 속에서 탄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349]



출처 : 대한지적공사, 2005(b),『한국지적백년사』, p.12.

[그림 1-49] 고구려의 자

이러한 고구려척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으며,[350] 삼국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가장 일찍 사용된 것으로 대보령(大宝令)의 대척(大尺)이 되었으며, 일본 후대의 오복척(吳服尺), 경척(鯨尺) 등은 모두 이 고구려척에서 변화된 형태의 척도였다.[351]
위와 같이 고구려는 주부(主簿), 울절(鬱折), 오졸(烏拙) 등에서 전부(田簿)와 도부(圖簿)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토지에 대한 조세(租稅)·공부(貢賦)·역역(力役) 등을 수취(收取) 하였으며,[352] 길이의 단위로 고구려의 자(高句麗尺), 면적의 단위로 경무법(頃畝法)을 사용하였으며, 측량교재로 구장산술(九章算術)을 사용하고 방전법(方田法)과 구고법(句股法) 등에 의하여 면적측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353]

3. 신라

3.1 건국과 멸망

신라(新羅)는 처음에 진한(辰韓) 소국의 하나인 사로국(斯盧國)에서 출발하였는데, 경주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朴赫居世, 재위 기간 : 기원전 57년 ~4년>가 지금의 영남(嶺南) 지방(地方)을 중심으로 국호를 서라벌, 도읍을 금성<현재의 경주>으로 정하고 건국하였다.
신라는 부족국가에서 출발하여 초기에는 이들 부족연맹체의 장인 이사금(尼師今)[354]이 중심이 되어 국무를 처리하였으나, 점차 국력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이러한 통치방법으로는 국무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이사금을 마

349) 윤선태, 2002, "韓國 古代의 尺度와 그 變化(高句麗尺의 誕生과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 p.59.

350) 대한지적공사, 2005(a), 위의 책, p.81.

351) 다카하시(高橋正), 1992,『도량형 연의』, p.73. ; 대한지적공사, 2005(a), 앞의 책, p.79.

352) 김경열, 1993, 앞의 책, p.24.

353) 강진철, 1984,『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p.363.

354) 이사금(尼師今)이라 함은 신라 초기에 쓰인 왕의 칭호를 말하며, 이질금(尼叱今)·치질금(齒叱今)·이질금(爾叱今)이라고도 하였으며, 제3대 유리왕 때부터 사용하였다.

립간(麻立干)[355]으로 개칭하고 마립간은 다시 국왕으로 추대되었다.
마립간 또는 국왕이 의장이 되어 관원을 남당(南堂)[356]에 모아놓고 화백회의(和白會議)[357]를 열어 모든 국사를 결정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왕이 집사부(執事部)[358]인 품주(稟主)[359]에게 명령하여 시행함으로써 신라의 왕권과 기본적인 정치·행정제도는 마립간 시대부터 성립되었다.[360]
7세기경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29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재위 기간 : 654년~661년>때에 나·당 연합을 결성하여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三國)을 통일하여 신라(新羅) 시대의 최성기(最盛期)를 이룩하였으며, 이후로는 대신라 또는 통일신라<668년~935년>로 불리었으며, 현재의 한반도 동남부 일대를 약 1000여 년 동안 지배하였다.
이어서 698년에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大祚榮)이 발해(渤海)를 건국하고, 892년 견훤(甄萱)이 후백제(後百濟)를, 901년 궁예(弓裔)가 후고구려(後高句麗)를 건국함에 따라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후백제와 고려의 공세에 버티지 못한 신라의 제56대 경순왕<敬順王, 재위 기간 : 927년~935년>이 935년에 고려(高麗)의 왕건(王建)에게 항복함으로써, 신라는 건국 후 56대 992년 만에 멸망하였다.[361]
고구려·백제·신라 삼국 시대의 지도는 [그림 1-52]와 같다.

355) 마립간(麻立干)이라 함은 신라의 제17대 내물왕<재위 기간 : 356년~402년>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왕호를 말하며, 정청의 지배자 또는 으뜸가는 지배자의 뜻으로 해석되어 왕권을 크게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6) 남당(南堂)이라 함은 임금이 신하들과 의논하고 정사를 펴는 장소를 말한다.

357) 화백회의(和白會議)라 함은 국가의 중대사건이 있어야 개최되고 회의의 참석자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관이며 또한 1명의 반대자기 있어도 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다수결이 아닌 전원일치로 성립되는 회의체제를 말한다.

358) 집사부(執事部)라 함은 신라의 최고 행정 기관으로, 중앙의 여러 관청을 통제하고 국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 집행하던 행정 기관을 말하며, 651년<진덕왕 5년> 품주를 개편하여 설치하였고 829년<흥덕왕 4년>에는 집사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359) 품주(稟主)라 함은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받아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584년<진평왕 6년>에는 공부를 담당하는 조부(調府)가 설치되었다.

360) 정시채(丁時采), 1986,『한국행정제도사』, 서울, 법문사, pp.58~594.

361) http://search.daum.net/cgi-bin(2007.2.10.) ; http://palhae.nacool.net(2007.2.10.)



출처 : 개리 레이야드 지음, 장상훈 옮김, 2011,『한국 고지도의 역사』, 서울, 소나무, p.24.

[그림 1-52] 삼국 시대의 지도

3.2 지적관련 제도

신라(新羅) 초기의 지적관련 제도는 공동체인 부족장(部族長)들의 권력을 토대로 토지의 사유제로 출발하여 차츰 공동체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되었다.

신라 후기에 이르러 국왕과 귀족들에게 집중된 토지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소경작지(小耕作地)의 형태로 변하였는데 이러한 상부 지배계층과 개별적 농민의 토지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상부 특권층 및 국가소유에 대한 토지의 소유형태를 보면 신라 초기에는 부족들을 병합·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왕권이 확립되어 영토를 국가 직속지(直屬地) 또는 주(州)·군지(郡地) 등 관유지의 형태를 띠었고 국왕은 자신과 그 일족을 위한 생활 물자를 조달하고 각종 제향비(祭享費)를 염출하기 위하여 왕실 직속지를 두게 되었으며 왕실 직속지는 각 궁(宮)에 소속되었다.[362]

둘째, 일반 농민들의 토지 보유는 공동체 연대의 기초에서 촌락 또는 산골에 존재하고 있는 소규모의 경작지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 토지소유의 원칙에 따라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유지와 물질적 기초를 토지의 국유제에 두고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토지의 국유 원칙은 전 농민을 형식상 자영농민으로 고정시켜 놓고 국가 지배체제 입장에서 그들의 잉여생산을 흡수하려는데 그 본질이 있었으며 조세·공부(貢賦)·역역(力役) 등의 수취체계가 이를 형성하는 내용이 되었다.[363]

양서(梁書)의 열전에는 “신라의 관직에는 자분한지, 제한지, 알한지, 일고지와 기패한지가 있다.(其官名, 有子賁旱支, 齊旱支, 謁旱支, 壹古支, 奇貝旱支)”[364]라고 기록

362) 김경열, 1991, 앞의 논문, p.18.

363) 강진철, 1984, 앞의 책, p.1177.

364) 『양서』 제54권, 열전 제48, 신라,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97.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120.

되어 있다.

『남사(南史)』의 열전에는 “신라의 벼슬이름은 자분한지, 제한지, 알한지, 일고지와 기패한지가 있다.(其官名有子賁旱支, 齊旱支, 謁旱支, 壹吉支[365], 奇貝旱支)”[366]라고 기록되어 있다.

『북사(北史)』의 열전에는 “신라의 벼슬에는 17등급이 있다. 첫째는 이벌간이며, 상국처럼 귀하다. 그 다음은 이척간, 영간, 파미간, 대아척간, 아척간, 을길간, 사줄간, 급복간, 대내마간, 내마, 대사, 소사, 길사, 대오, 소오, 조위순서로 되어있다.(其官有十七等級, 一曰伊罰干, 貴如相國, 次伊尺干, 次迎干, 次破彌干, 次大阿尺干, 次阿尺干, 次乙吉干, 次沙咄干, 次及伏干, 次大奈摩干, 次奈摩, 次大舍, 次小舍, 次吉士, 次大烏, 次小烏, 次造位)”[367]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서(隋書)』의 열전동이에는 “신라의 벼슬로는 17등급이 있다. 일등급은 이벌간이며, 상국만큼 귀하다. 그 다음은 이척간, 영간, 파미간, 대아척간, 아척간, 을길간, 사줄간, 급복간, 대내마간, 내마, 대사, 소사, 길사, 대오, 소오, 조위의 순이다.(其官有十七等級, 其一曰伊罰干, 貴如相國, 次伊尺干, 次迎干, 次破彌干, 次大阿尺干, 次阿尺干, 次乙吉干, 次沙줄干, 次及伏干, 次大奈摩干, 次奈摩, 次大舍, 次小舍, 次吉士, 次大烏, 次小烏, 次造位)”[368]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舊唐書)』의 동이열전에는 “신라의 문무관은 모두 17등급이다.(文武官凡有十七等)”[369]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당서(愼唐書)의 동이열전에는 “신라의 벼슬에는 재상, 시중, 사농경, 태부령 등 모두 17등급이 있다.(官有宰相, 侍中, 司農卿, 太府令, 凡十有七等)”[370]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지적관련 행정조직은 <표 1-8>과 같이 통일 전에는 품주(稟主), 통일 후에는 창부(倉部)·조부(調部)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학(國學)에 산학박사(算學博士)[371]를 두어 토지측량과 면적측정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케 하였다.

<표 1-8> 신라의 지적관련 행정조직

365) 『양서』에는 일고지(壹古支)라고 기록되어 있다.

366) 『남사』제79권, 열전 제69, 이맥하 동이, 신라,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20.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158.

367) 『북사』열전 제82, 신라,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34.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186.

368) 『수서』제81권, 열전 제46, 동이, 신라,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44.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203.

369) 『구당서』제199상권, 열전 제49상, 동이, 신라,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61.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233.

370) 『신당서』제220권, 동이열전 제145, 신라, 팽구송(彭久松), 김재선(金在善) 편저, 1996, 앞의 책, p.189. 재인용. ; 김재선, 임애경, 이경 역편, 1999, 앞의 책, p.287.

371) 산학박사(算學博士)라 함은 신라의 국학(國學)에 소속된 교수직으로, 717년<성덕왕 16년>에 산학박사 1인을 두어 산술을 교육하였다. 고려 시대의 산학박사는 국자감(國子監)에 소속되어 산학을 가르치던 교수직 및 각 관청에서 회계사무를 담당한 관직이었다.

구 분	통일 전	통일 후		지 방
담당부서	품 주	창 부	조 부	
담당업무	기명·왕명·출납·토지·조세 ⇩ 조부(토지·조세)	창부령·창부경 (토지업무), 창부대사 (조세의 출납·저장)	공부 (貢賦)	주(都督) ⇩ 군(郡太守) ⇩ 현(縣令)

출처 : 김영학, 1996, "지적행정의 사적 고찰",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2. ; 리진호, 2007, 『경주지적사』, 경주시, p.41. 참고 작성.

『삼국사기』 신라 본기 제1 파사니사금(婆娑尼師今) 23년 8월조에 음즙벌국<音汁伐國, 안강>과 실직곡국<悉直谷國, 삼척>이 서로 지경 즉 땅의 경계를 다투었으나 왕이 이를 해결치 못하여 금관국 수로왕을 초빙하여 바로 잡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토지경계가 신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임을 알 수 있다.[372]

신라는 길이의 단위로 [그림 1-53]과 같은 한척(漢尺)·동위척(東魏尺)·당척(唐尺) 등을 사용하였으며, 면적계산은 결부제(結負制)를 사용하였는데,[373] 신라장적(新羅帳籍)에도 "合畓二百結二負四束"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374] 또한 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저술한 「사산비명(四山碑銘)」[375]에 "땅 10결을 하사하다(賜田十結)"라는 구절이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376]

지금까지 고려 이전에 사용된 자의 실물이 발견된 예는 모두 3개가 있다. 하나는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자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곳에서 발견된 신라의 자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부여 쌍북리에서 출토된 백제의 자로써 우리는 삼국의 자의 실물을 모두 접할 수 있게 되었다.[377]

372)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2007, 『지적관련 문헌분류 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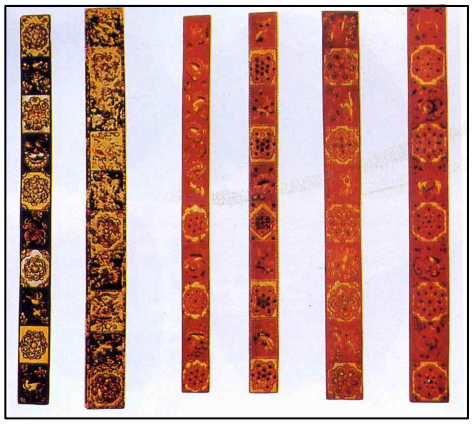
373) 김종현, 1977, 앞의 논문, pp.88~91.

374)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2007, 앞의 책, p.28.

375) 사산비명(四山碑銘)이라 함은 신라 말기의 학자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비문 가운데 신라의 불교사를 비롯하여 한문학사·사상사 등 여러 면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은 네 편을 뽑아 엮은 책으로, 신라 불교사에서 우뚝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 선사(禪師)의 일생 행적과 화엄종 계열의 왕실 원찰(願刹)인 대숭복사의 창건 내력을 적은 비문으로써, 사비명(寺碑銘)의 찬술은 ≪문선 文選≫에 보이는 왕건(王巾)의 '두타사비명(頭陀寺碑銘)'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네 비 모두 왕명에 의해 찬술되었으며,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로부터 은거하기 이전에 걸쳐 찬술되었다. 현재 대숭복사비를 제외한 세 비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때 절과 함께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대숭복사비는 1931년 이후 그 잔편(殘片)이 몇 차례 발굴되었다.

376) http://mybox.happycampus.com/njk0204/402412(201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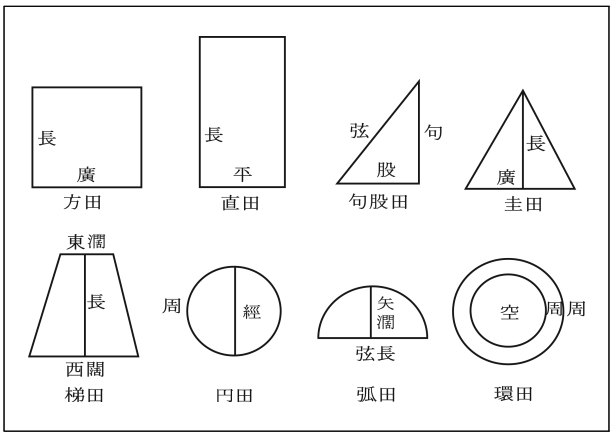
377) 이강승, 2000, 앞의 논문, p.43. ; 이우태, 앞의 논문, p.267.



출처 : 대한지적공사, 2005(a), 『지적문화유산』, p.8.

[그림 1-53] 신라의 자

산학박사가 가르친 구장산술(九章算術)의 방전장(方田章)에는 [그림 1-54]와 같이 토지를 방전<方田 : 정방형 또는 정사각형의 토지>·직전<直田 : 장방형 또는 직사각형의 토지>·구고전<句股田 : 직각삼각형의 토지, 직각을 낀 짧은 변이 구(句), 긴 변이 고(股)이다.>[378]·규전<圭田 : 삼각형의 토지>·제전<梯田 : 사다리꼴형의 토지>·원전<圓田, 원형의 토지>·호전<弧田, 화살형의 토지>·환전<環田, 둥근형의 토지>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방전형태의 토지는 장<長, 길이>과 광<廣, 넓이>을 재고, 직전은 장(長)과 평(平), 구고전은 구(句)와 고(股), 규전은 장(長)과 광(廣), 제전은 동활(東闊)과 서활(西闊), 원전은 반원주(半圓周)와 반경(半徑), 호전은 현장(弦長)과 시활(矢闊), 환전은 내주(內周)와 외주(外周)를 각각 측량하되, 토지를 위의 여러 형태로 구획하여 토지 주위를 돌면서 필지마다 장(長)·광(廣)·구고(句股)·주(周)·경(徑) 등을 측량하여 보(步)의 10분의 1인 척위(尺位)까지 측정하였다.[379]



출처 : 김종현, 1978.1. "한국지적제도의 변천사", 『지적』, p.91.

[그림 1-54] 방전장에 의한 전의 형태

378) 정약용, 1886, 『경세유표 Ⅱ』,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339.

379) 김종현, 1978.1, 앞의 논문, p.91.

선덕여왕(재위기간 : 632년~647년)은 경주(慶州) 반월성(半月城) 동북쪽인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지귀(志鬼)라는 석공으로 하여금 첨성대(瞻星臺)를 축조케 하였다.[380]

상방하원(上方下圓 : 위는 네모지고 아래는 둥근 모양) 형태의 [그림 1-55]와 같은 석조물인 첨성대는 높이가 9.1m 아래의 지름은 4.9m에 이르고 위의 지름은 2.8m이며, 남쪽 방향에는 한 변이 1미터인 정사각형의 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첨성대 안의 창 높이 까지는 탑의 안전성을 위하여 흙과 자갈이 가득 들어차 있다.[381]

첨성대는 몸체가 27단인데 이것은 제27대 임금 선덕여왕을 상징하고 밑단까지 합하면 28단인데 이것은 기본 별자리 28수를 뜻하며, 전체의 돌 수는 362개 인데 이것은 음력으로 1년의 날수를 뜻한다.

첨성이란 별을 살핀다는 뜻이라고 하나 첨성대는 첫째, 실제로 밤하늘을 관측했다는 천문대설 둘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설 셋째, 고대 천문학적 지식을 담은 상징물이란 주장 등이 있으나 천문대였다는 주장이 통설(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82]

신라의 첨성대는 오늘날의 천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천문 기상 관측대로서 하늘의 변화를 관측하고 별과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예상하고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기 위해 쌓았다고 하며, 천문대로써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 1962년 12월에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었다.



출처 : 이종욱, 2003, 『신라의 역사(2)』, 서울, 김영사, p.236.

[그림 1-55] 신라의 첨성대

이어서 신라 말기에 서원경<현 청주 지방> 일대의 4개 촌락에 대한 토지의 종목·면적·인구수·뽕나무수·우마수 등을 기록한 [그림 1-56]과 같은 신라장적(新羅帳

380) 윤영수, 2007, 『선덕여왕과 지귀』, 서울, 한솔수북, pp.49~50.

381) 윤영수, 2007, 위의 책, p.58.

382) 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classcode=011407(2012.10.10)

籍)이 일본 동대사의 정창원에서 발견되었는데,[383]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적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대한지적공사, 2005(b),『한국지적백년사』, p.6.

[그림 1-56] 신라장적

신라는 장적(帳籍)을 비치하고 토지의 종목과 면적·인구수·가축 및 수목 등을 기재하였는데,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인 671년<문무왕 11년>에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 지도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384] 또한 문무왕 9년에 김순이란 사람이 사죄사로 당에 갔다가 문무왕 11년 7월에 귀국한 후 신라와 백제의 경계를 지도에 의하여 살펴보았다고 한다.[385] 따라서 신라에서도 고구려와 백제의 지도와 비슷한 지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新羅)는 품주(稟主), 창부(倉部), 조부(調部) 등에서 토지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국학(國學)에 산학박사(算學博士)를 두어 토지측량과 면적측정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케 하였다. 길이의 단위로 한척(漢尺)·동위척(東魏尺)·당척(唐尺) 등 신라의 자를 사용하였으며, 면적은 결부제(結負制)에 의하여 산정하였고, 장적(帳籍)을 작성하였으며, 정전제(丁田制)를 시행하였다.

3.3 삼국 시대의 토지제도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 시대의 토지관련 제도는 왕토사상에 따라 정복과정에서 획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귀족·관료·군관들에게 분여(分與)하였다.

국왕은 최고의 군사적 통수자요, 정치적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대의 지주(地主)로서 전국의 토지를 지배하였다.

국유제를 원칙으로 한 삼국에 있어서 토지는 이를 경영(經營)·수취(收取)관계를 비롯한 생산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직영지(國家直營地)·왕실직영지(王室直營地)·식읍지(食邑地)·사전(賜田)·사원전(寺院田)·국가수조지(國家收租地)·농민보유지(農民保有地) 등으로 나누어진다.[386]

3.3.1 국가직영지

국가직영지(國家直營地)라 함은 중앙과 지방관부(地方官府)에 소속된 토지를 말하며, 관유지(官有地) 또는 국가직속지(國家直屬地)라고도 한다.

383) 한영우, 2003, 앞의 책, p.162. ; 대한지적공사, 2005(a), 앞의 책, p.8.

384)『삼국사기』권7, 문무왕 11년 7월조.

385) 조규전, 2003, 앞의 책, p.17.

386) 김옥근, 1980,『한국토지제도사연구』, 서울, 대왕사, p.39.

국가의 경비는 전호<佃戶, 小作人>인 보유지(保有地) 농민으로부터 전조(田租)·공부(貢賦)·역역(力役)의 형태로 취득하는 지대(地代)인 조세로써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삼국 시대에 있어서 이 관유지에 관한 사료는 극히 희귀하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고구려 제2대 "유리왕<琉璃王, 재위 : 기원전 19년~18년> 22년 12월에 대보(大輔)라는 관직에 있는 협부(陜父)[387]가 새로 국도를 옮기어 백성들이 안착하지 못하니, 마땅히 정치와 교화에 부지런히 힘써야 할 것임에도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냥에 치중하여 오래도록 궁궐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만일 이를 고치고 새롭게 처신하지 아니하면 정치가 문란하고 백성이 흩어져 선왕의 업적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스럽다고 간(諫)하였으나, 유리왕은 이를 듣고 진노하여 협부의 직을 파하고, 관원(官園)의 관리인으로 좌천시켰는데, 협부는 분개하여 남한으로 달아났다.(琉璃王二十二年 十二月 王田于質山陰 五日不返 大輔陜父諫曰 王新移都邑 民不安堵 宜孜孜焉刑政之是恤 而不念此 馳 田獵 久而不返 若不改過自新 臣恐政荒民散 先王之業墜地 王聞之震怒 罷陜父職 俾司官園 陜父憤 去之南韓)"[388]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나타난 관원은 관유지로써 국가직영농장이며 관리경영자로써 하위직의 관리를 두고 관노비 또는 농민의 요역노동(徭役勞動)으로 경작한 것이 분명하며, 관유지는 비단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도 있었을 것이다.[389]

3.3.2 왕실직영지

왕실직영지(王室直營地)라 함은 국왕이 자신과 그 일족을 위한 생활 물자를 조달하고 제향비(祭享費)를 염출하기 위하여 왕실에 소속된 토지를 말하며, 왕실직속지(王室直屬地)라고도 한다.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신라 제30대 문무왕<文武王, 재위 기간 : 661년~ 681년> 원년 3월에 멸망한 가락국의 사당(祠堂)을 종묘(宗廟)에 합하여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하고, "사당에 가까운 상상전(上上田) 30경(頃)을 공영(供營)의 자(資)로 하여 왕위전(王位田)이라 부르고, 본토(本土)에 소속시키니, 수로왕의 17대 손 갱세급간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관리하여 해마다 명절이면 술과 단술을 마련하고 떡과 밥·차·과실 등 여러 가지를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以近廟上上田三十頃 爲供營之資 號稱王位田 付屬本上 王之十七代孫갱世級干祇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醪醴 設以餠飯茶菓庶差等奠)"[390]라는 기록이 있어, 이 시대의 왕위전은 능묘제향(陵廟祭享)을 위하여 설정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신라 문무왕 2년(662년)에 고구려와의 전

387) 협부(陜父)는 오이, 마리와 함께 추모왕이 부여를 떠날 때 최초로 함께 동행한 인물로 고구려 개국공신으로, 유리왕 22년인 서기 3년에 대보<大輔, 현재의 국무총리 격임.>라는 당시 고구려 최고의 관직에 있었다.

388) 『三國史記』 卷 13, 高句麗本紀 3.

389) 김옥근, 1980, 앞의 책, pp.40~41. ; http://tong.nate.com/ljh 4424/(2008.1.20.)

390) 『三國遺事』 卷 2, 駕洛國記.

쟁에서 대공을 세운 “김유신(金庾信)과 김인문(金仁問)에게 본피궁(本彼宮)[391]의 토지와 노복(奴僕)을 사급(賜給)한다.(論功 中分本彼宮財貨·田莊·勞復 以賜庾信·仁問)” [392]라는 기록이 있어, 신라 왕실의 하나인 본피궁은 전장(田莊)과 노복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라 왕실의 각궁과 능묘에는 직속 토지가 있었으며, 백제와 고구려에서도 그와 같은 왕실직속지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393]

3.3.3 식읍지

식읍지(食邑地)라 함은 국가에서 왕족이나 특별한 공이 있는 공신들에게 지급한 지역(地域) 또는 수조호(收租戶)를 말하며, 고대국가가 주변 소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역을 그 민호수를 헤아려서 공로자에게 주는 제도였다.

삼국은 식읍제도를 두어 훈공이 높은 귀족들에게 식읍지(食邑地)를 사급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고구려의 제8대 “신대왕<新大王, 재위 기간 : 165년~179년> 8년 11월에 한(漢)의 침략군을 격파한 대전공을 세운 국상(國相) 명림답부(明臨答夫)에게 좌원(坐原), 질산(質山) 2개소의 식읍을 사급하였다.(新大王八年 冬十一月 漢以大兵嚮我 --- 夫師數千騎 追之 戰於坐原 漢軍大敗 匹馬不返 王大悅 賜答夫坐原及質山爲食邑)”[394]라는 기록이 있다.

이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신라의 제23대 “법흥왕<法興王, 재위 기간 : 514년~540년> 19년에 내항(來降)한 가락국 최후의 국왕 김구해(金仇亥)에게 본국(本國)을 그의 식읍으로 주었다.(法興王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長曰奴宗·仲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395]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紀)에는 백제의 제31대 “의자왕<義慈王, 재위 기간 : 641년~660년> 17년에 왕자들에게 식읍을 주었다.(義慈王十七年春正月 拜王庶子四十一人 爲佐平 各賜食邑)”[396]라는 기록이 있다.

식읍은 일반관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공훈을 세운 귀족 및 관료에게 주는 것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전주민(全住民) 또는 일정수의 가호(家戶)에 대한 전조(田租)·공부(貢賦)·역역(力役) 등의 징세권(徵稅權)을 이양하는 점에서 사전(賜田)과 다르며 또한 식읍은 세습(世襲)이 허용되지 않고 당대(當代)에 한하여 지급되었다.[397]

391) 본피궁(本彼宮)이라 함은 신라 시대에 석씨(昔氏) 계통의 왕실 재정을 맡아보던 관아를 말한다.

392) 『三國史記』 卷 6, 新羅本紀 6.

393) 김옥근, 1980, 앞의 책, pp.39~40.

394) 『三國史記』 卷 16, 高句麗本紀 4.

395) 『三國史記』 卷 12, 新羅本紀 2.

396) 『三國史記』 卷 28, 百濟本紀 6.

397) 강보철, 앞의 책, p.1168. ; 김옥근, 1980, 앞의 책, pp.41~42. ;

3.3.4 사 전

사전(賜田)이라 함은 국가나 왕실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왕의 특명으로 주는 토지를 말하며, 후세의 공신전(功臣田) 또는 공음전(功蔭田)의 선구적 형태로써 공훈이 많은 귀족과 관료 등에게 은혜적으로 사급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고구려의 제2대 "유리왕<琉璃王, 재위 기간 : 기원전 19년~18년> 37년 4월에 익사한 왕자의 시체를 찾아낸 제순(祭順)에게 상사(賞賜)로서 금(金) 십근(十斤)과 전(田) 10경(頃)을 주었다.(琉璃王三十七年 夏四月 王子如津溺水死 王哀慟 使之求屍不得 後沸流祭順得之以聞遂以禮葬於王骨嶺 賜祭順金十斤 田十頃)"[398]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신라의 제11대 "조분왕<助賁王, 재위 기간 : 230년~247년> 7년(236년) 2월에 투항한 골벌국(骨伐國)의 왕 아음부(阿音夫)에게 전장(田莊)을 사급하였다.(助賁尼師今七年 春二月 骨伐國王阿音夫 率衆來降 賜第宅田莊安之 以基地爲部)"[399]라는 기록이 있다. 이어서 신라의 제24대 "진흥왕<眞興王, 재위 기간 : 540년~576년> 23년 9월에 가야반란(伽耶叛亂)을 평정한 명장 사다함(斯多含)에게 양전(良田)과 포로 200명을 사급해 주었는데 그는 지급받은 사전을 다시 부하들에게 분급해 주었다.(眞興王二十三年 秋九月 伽倻叛 王命異斯夫 討之 斯多含副之 --- 論功 斯多含爲最王賞以良田及虜二百口 斯多含三讓 王强之乃受其生口 於爲良人田分與戰士國人美之)"[400]라는 기록이 있다.

위와 같이 특별한 공훈을 세운 관료나 귀족에게는 식읍 또는 사전(賜田)이 지급되었는데, 식읍은 당대에 한하여 소정(所定)의 가호(家戶)에 대한 징세권을 이양한 것이므로 식읍의 토지는 피급자(被給者)의 직영지가 아니고 소농민(小農民)의 자영지일 것이다. 그러나 사전은 수조지<收租地, 佃戶經營地>인지 또는 피급자의 직영지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

삼국의 통일전쟁에 대공을 세운 김유신은 문무왕 3년에 사전 500結을 지급받았는데[401] 직영제 경영방식으로는 이렇게 광대한 토지의 경작이 어려운 사실을 감안할 때 이 토지가 수조지일 것이 분명하다.[402]

3.3.5 국가수조지

국가수조지(國家收租地)라 함은 관유지·왕실직영지·식읍지·사전·사원전 등을 제외하고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동양적 봉건국가로서의 삼국은 전국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군사비·행정비를 비롯한

http://k.daum.net/qna/file/view(2008.1.20.)

398) 『三國史記』 卷 13, 高句麗本紀 1.

399) 『三國史記』 卷 2, 新羅本紀 2.

400) 『三國史記』 卷 4, 新羅本紀 4.

401) 『三國史記』 卷 42, 列傳 2 金庾信 中.

402) 김옥근, 1980, 앞의 책, pp.42~43. ; http://enc.daum.net/dic100/(2008.1.20.)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지배 아래 둔 삼국은 일부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귀족·관료 등 봉건 지배계급에 이양하고 나머지 토지를 국가수조지로 하여 국가에서 수조하였는데, 이 국가수조지는 집권적 봉건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삼국 시대에는 동양적 봉건사회의 특질인 국가적 토지소유관계의 상부구조에 속하는 관유지·왕실직영지·식읍·사전 및 국가수조지 등이 있고 하부구조에 속하는 농민보유지(農民保有地)가 있었다.[403]

3.3.6 사원전

사원전(寺院田)이라 함은 불교 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며, 사전(寺田)·사사전(寺社田) 또는 사위전(寺位田)이라고도 하였다.

불교가 들어온 후 봉건적 문화기관도 점차 토지분배에 관여하여 지대수식자(地代收食者)로 등장해 갔다.

사원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신라의 제19대 "눌지왕<訥祇王, 재위 기간 : 417년~458년> 35년에 왕후사(王后寺)에 10결의 토지를 사급하였다.(以元嘉二十九年壬辰 於元君興皇后合婚之地創寺 額曰王后寺 遣使審量近側平田十結 以爲供億三寶之費)"[404]라는 기록이 있다.

통일 이전의 삼국 시대에 있어서도 사원전이 있었다. 불교가 5세기 초의 법흥왕<法興王, 재위 기간 : 514년~540년> 시대부터 점차 국교(國敎)로 융성해 감에 따라 사원전은 이미 통일 이전의 시기부터 크게 팽창하여 문무왕은 다음과 같은 법령(法令)을 내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에 "문무왕<文武王, 재위 기간 : 661년~681년> 4년(664년) 8월에 국가는 일반인의 사원에 대한 토지의 기증을 금지한다.(文武王四年八月十四日 --- 禁人擅以財貨田地 施佛寺)"[405]라는 기록이 있다.

사원전에는 면세(免稅)의 특전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확대는 국가의 재정기반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토지의 기증에 관한 금지령을 내렸으나, 이러한 조처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와 사원전은 더욱 늘어났다.

사원전은 국가의 토지사급과 국왕·귀족·일반 국민의 기증전(寄贈田)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신라의 제32대 효소왕<孝昭王, 재위 기간 : 692년~702년>은 백율사(栢栗寺)에 1만경(頃)의 토지를 시납(施納)하였고[406] 제35대 경덕왕<景德王, 재위 기간 : 742년~765년>도 민장사(敏藏寺)에 토지를 시납하였으며,[407] 제36대 혜공

403) 김옥근, 1980, 앞의 책, pp.43~46.

404) 『三國遺事』 卷 2, 駕洛國記.

405) 『三國史記』 卷 6, 新羅本紀 2.

406) 王(孝昭王) 施鑄金銀五器二副各重五十兩 摩衲袈裟五領 大綃三千疋 田一萬頃納於寺(栢栗寺) (『三國遺事』 卷 4, 栢栗寺)

407) 即天寶四年 乙酉四月八日也 景德王聞之 施田於寺<敏藏寺> 又納財幣焉 『三國遺事』 卷 4, 敏藏寺.

왕<惠恭王, 재위 기간 : 765년~780년>은 김유신을 위한 공덕보전(功德寶田) 30결(結)을 경선사(驚仙寺)에 사납하였는데, 보전(寶田)은 사원전의 한 형태이다.[408]

3.3.7 농민보유지

농민보유지(農民保有地)라 함은 삼국 시대에 토지국유제의 원칙 아래 봉건적 토지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분여 받고, 봉건적 지배·수조관계에 편제된 농노적 농민이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농민보유지는 집권적 토지소유관계와 그 속성인 지배·수조관계에 의거하는 주종관계가 삼국 시대에 있어서 국가 대 농민의 사회구성의 기축을 이룩하였다.

삼국 시대에 있어서 농민의 토지보유권(土地保有權)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신라 및 고려 전기에 있어서 보유권이 국가에 의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보유지의 매매·임차 등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믿는다.[409]

3.3.8 관료전

관료전(官僚田)이라 함은 문무(文武) 관료들에게 그들의 직위에 맞는 전(田)을 나누어 주어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신라의 제31대 신문왕<神文王, 미상~692년, 재위 기간 : 681년~692년> 7년에 문무관료에게 전(田)을 사(賜)하되 차등 있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에 고려의 전시과(田柴科)와 조선의 과전법(科田法) 및 직전법(職田法), 해방 후의 토지개혁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410]

3.3.9 정전제

정전제(丁田制)라 함은 신라의 제33대 성덕왕<聖德王, 재위 기간 : 702년~737년> 21년(722년)에 시작된 신라의 토지제도로써 중국의 균전제(均田制)와 비슷하게 국가가 일반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부역(賦役)과 전조(田租)를 국가에 바치게 한 제도이다.

중국의 균전제라 함은 485년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411]의 명령으로 시작된 토지분배 및 조세징수제도로써 농지를 성인이 된 모든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토지에서 난 산물의 일정량은 곧바로 현물로 정부에 납부하게 하였다. 북위 때에는 1가구당 총 0.08㎢ 가량의 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영구히 소유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죽을 때 나라에 반납하였다.[412]

408) 김옥근, 1980, 앞의 책, p.47. ; http://search.daum.net/cgi(2008.1.20.)

409) 김옥근, 1980, 위의 책, p.44.

410) 김경열, 1993, 앞의 책, pp.32~33. ; 한영우, 2003, 앞의 책, p.47, p.161.

411) 효문제(孝文帝)는 중국 북위의 제7대 황제(재위 471~499)로서 친정 기간은 겨우 10년이었지만 북위 중흥의 영주로 일컬어지며, 처음으로 관리에게 봉록(俸祿)을 지급하고, 삼장제(三長制)와, 균전제(均田制)를 시행하였다.(http://100.naver.com/100.nhn?docid=174468, 2012.6.20.)

위(魏)나라 이후 수·당대<581년~907년>에 이르기 까지 실시되었으며, 당대의 균전제는 정남<丁男, 21세 이상 59세까지> 및 중남<中男, 16세 이상 20세까지>에 대하여 전(田) 1경<頃, 100무>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서 20무는 영업전(永業田)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되고 나머지 80무는 구분전(口分田)으로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환납하였고 정남(丁男), 중남(中男)으로 취급되지 않는 독질(篤疾), 폐질(廢疾)과 과처첩(寡妻妾)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면적을 감하여 급여하였는데, 그 중 20무는 영업전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분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413]

신라 시대의 정(丁)이라 함은 정남(丁男)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남녀의 연령 구분에 의한 것으로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정전(丁田)을 지급받고 부역(賦役)과 전조(田租)를 국가에 바치는 장정(壯丁)을 말하며, 60세 이상이 되면 정전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성덕왕 21년(722년) 8월에 백성에게 정전을 비로소 급여하였다.(聖德王 二十一年, 秋八月, 始給百姓丁田)"[414]라는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료가 없어 정전제 실시에 관한 실체적인 상항은 파악 할 수 없다.[415]

그러나 정전제는 부세(賦稅)행정에 균일성(均一性)과 통합성(統合性)을 기하고 농민을 토지에 긴박시켜 안착시키고자 시행한 토지양급제(土地量給制)였으나, 지방 군현(郡縣)의 토착세력이 정치적·군사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집권적·군현제적 행정은 갈수록 쇠약하여 정전(丁田)과 정전농민(丁田農民)은 감소하고 새로운 토지의 양급은 어려워져 결국은 신라 왕조의 입지 자체가 함몰하는 지경으로 치달았다.[416]

이상 설명한 삼국 시대의 토지관련 제도를 요약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삼국 시대의 토지관련 제도

구 분		주 요 내 용
토지국유제	국가직영지(國家直營地)	중앙과 지방관부(地方官府)에 소속된 토지
	왕실직영지(王室直營地)	국왕과 그 일족을 위한 생활 자료를 조달하고 제향비(祭享費)를 염출하기 위하여 왕실에 소속된 토지
	식읍지(食邑地)	국가에서 왕족이나 특별한 공이 있는 공신들에게 지급한 지역 또는 수조호(收租戶)
	사전(賜田)	국가나 왕실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왕의 특명으로 주는 토지
	국가수조지(國家收租地)	관유지, 왕실직영지, 식읍지, 사전, 사원전 등을 제외하고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

41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2012.6.20.)

413) 김경열, 1993, 위의 책, p.36.

414) 『삼국사기』, 권 제8, 신라본기, 성덕왕 21년조(條).

415) 김경열, 1993, 앞의 책, p.35.

416) 이경식, 2004, 『한국고대·중세초기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p.146.

	사원전(寺院田)	불교 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
	농민보유지(農民保有地)	국가로부터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분여 받고, 봉건적 지배·수조 관계에 편제된 농노적 농민이 보유한 토지
	관료전(官僚田)	문무 관료들에게 직위에 알맞는 전(田)을 주어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급한 토지
	정전(丁田)	일반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국가에 조를 납부)

출처 : 류병찬, 2012, 『신편한국지적사』, 서울, 건웅출판사, p.168.

위와 같은 삼국 시대 지적제도의 기원을 요약하면 고구려는 주부(主簿)·울절(鬱折)·오졸(烏拙), 백제는 내두좌평(內頭佐平)·곡내부(穀內部)·점구부(點口部), 신라는 품주(稟主)·창부(倉部)·조부(租部) 등을 설치하고 지적관련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고구려의 전부(田簿)와 도부(圖簿)·백제의 전적(田籍)과 도적(圖籍)·신라의 장적(帳籍) 등 오늘날의 지적공부와 유사한 도부(圖簿)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고구려는 경무법 백제는 두락제·결부제 신라는 결부제에 의하여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등 고조선과 부족국가 시대보다는 좀 더 분화된 상태로 지적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헌상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삼국 시대의 지적관련 사료로는 고구려의 자와 백제의 자 및 신라의 장적 이외에는 명확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다.

제4절 고려시대

1. 건국과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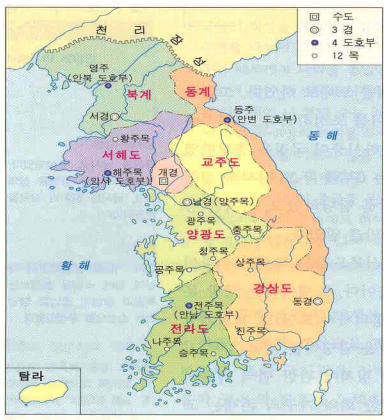
고려(高麗)는 신라와 발해를 계승한 왕조로서 신라 말기인 918년에 송악 지방의 호족 왕건(王建)이 개경<開京, 현재의 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하였다.

태조 왕건<太祖王建, 재위 기간 : 918년~943년>은 신라 궁예의 부하였으나 궁예가 실정을 거듭하자 민심을 잃어 쫓겨났으며,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 형식으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구려의 이름을 줄여 고려(高麗)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코리아(Korea)라는 이름이 나왔으며,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

고려는 926년<태조 왕건 8년>에 발해가 요나라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자 왕족을 비롯한 유민들을 대거 받아들임으로써 한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935년<태조 왕건 17년>에 신라의 제56대 경순왕(敬順王)이 고려에 항복을 하였으며, 936년<태조 왕건 18년>에 후백제를 공격하여 마침내 황산벌<논산>에서 후백제의 왕 신검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후백제를 멸망시켜 후삼국 시대는 고려의 통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는 내부적으로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왜구 및 홍건적의 침입과 원·명 교체에 따른 대외관계의 변동이 있었다. 특히 왜구는 대마도 등 일본 근해의 해적들로써 이미 제23대 고종<재위 기간 : 1213년~1259년> 때부터 우리 연해에 출몰하였는데, 제30대 충정왕<忠定王, 재위 기간 : 1348년~1351년> 때부터는 거의 매년 전국 각지에 침

투하였고 심지어 강화도까지 약탈을 당하여 개경에 계엄령이 내리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1388년에는 원의 쌍성총관부 관할 하에 있던 철령 이북의 땅을 명(明)의 직속령으로 삼겠다고 통고하여 왔다. 이 때 정권을 잡고 있던 최영(崔瑩)은 크게 분개하여 도리어 이 기회에 명이 차지한 요동지방까지 회복하려 하였다.
마침내 고려는 제32대 우왕<禑王, 재위 기간 : 1375년~1388년> 14년에 최영이 8도 도통사가 되고 조민수(曺敏修)를 좌군도통사, 이성계(李成桂)를 우군도통사로 삼아 요동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국내외의 정세로 보아 요동정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병을 반대하였던 이성계는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여 개경에 돌아왔으며, 반대파인 최영 등을 제거하고 우왕을 축출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으니, 이것이 이성계가 고려를 넘어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이성계 일파는 우왕을 폐위시키고 제33대 창왕<昌王, 재위 기간 : 1388년~1389년>을 왕위에 올렸으나, 다시 이성계에 의하여 강화로 쫓겨난 뒤 살해되었다.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제34대 공양왕<恭讓王, 재위 기간 : 1389년~1392년>이 이성계 일파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으나 실권을 빼앗겼고, 정몽주가 살해된 뒤에 폐위당하고 살해됨으로써, 918년에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운 후, 1392년 조선 왕조에게 멸망하기까지 고려는 건국 후 34대 약 450여 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하였다.[417]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지도는 [그림 1-57]과 같은 5도양계(五道兩界圖)도로써, 서해도・교주도・양광도・ 전라도・경상도와 동계・북계의 영토를 관할하였다.



출처 : 정재준, 이기철, 2006,『통합한국사(상)』, p.186.

[그림 1-57] 고려 시대의 5도양계도

2. 지적관련 제도

고려의 지적관련제도는 요사(遼史)에 의하면 1002년 제7대 목종<穆宗, 재위 기간 :

417) http://enc.daum.net/dic100(2007.2.10.)

997년~1009년>왕 5년에 거란에 고려지리도(高麗地理圖)를 보낸 일이 있으며,[418] 이어서 제8대 현종<顯宗, 재위 기간 : 1010년~1031년> 시대에 전국이 5도 양계로 개편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라고 불리는 전국지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419]

그리고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1148년<의종 2년> 10월에 고려의 두 관료가 개인 소장의 고려지도를 송나라에 보내려다 발각되어 옥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려의 이심(李深)과 지지용(智之用) 등이 송나라 사람과 결탁하여 유공식(柳公植)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고려지도를 송의 진회(秦檜)에게 보냈다는 것이다.[420]

어느 나라든지 예나 지금이나 지도는 국가기밀문서로써 대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의 지적관련 행정조직은 <표 1-10>과 같이 전기에는 상서성(尙書省)의 호부(戶部), 후기에는 첨의부(僉議部)의 판도사(版圖司)[421]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의 호부는 호구(戶口)·공부(貢賦)·전토 및 식량과 기타 재화·경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중앙의 통제에 따라 호구(戶口)·공부(貢賦)·양전(量田) 등의 사무에 종사케 하였다.

고려 제11대 문종<文宗, 재위 기간 : 1046년~1083년> 때의 호부(戶部)는 그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제25대 충렬왕<忠烈王, 재위 기간 : 1274년~1308년> 시대에는 1275년에 판도사(版圖司)로, 1298년에 민조(民曹)로, 1308년에는 민부(民部)로, 제31대 공민왕<恭愍王, 재위 기간 : 1351년~1374년> 시대에는 1356년에 호부(戶部)로, 1362년에 판도사로, 1369년에 민부로, 1372년에 다시 판도사로 각각 변경하였다가 1389년에 제34대 공양왕<恭讓王, 재위 기간 : 1389년~1392년>이 호조(戶曹)로 변경하였다.[422]

<표 1-10> 고려의 지적관련 행정조직

418) 『요사』 권11, 열전45 의기 고려전.

419) 한영우 외 2인, 2005, 앞의 책, p.17.

420) 한영우 외 2인, 2005, 위의 책, pp.17~18.

421) 판도사(版圖司)라 함은 1275년부터 고려왕조 말기까지 세금징수를 담당하던 관서의 이름을 말한다.(정인지 외, 『고구려사』(1451년 간행), 권76 지30 백관1 호조)

422) http://cafe.naver.com/parkssiyeonghae.cafe(2007.2.10.)

구 분	중 앙		지 방
	전 기	후 기	
담당기관	상서성(尙書省) 호부(戶部)	첨의부(僉議部) 판도사(版圖司)· 민조(民曹)·민부(民部)· 호부(戶部)·호조(戶曹)	도(道, 節度使), ⇩ 목(牧, 牧使) ⇩ 주·군(州郡, 知事) ⇩ 현(縣, 縣令) ⇩ 진(鎭, 鎭使, 鎭將)
담당업무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 양전사무 등		

출처 : 김영학, 1996, "지적행정의 사적 고찰",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9. 참고 작성.

3. 토지관련 제도

고려(高麗)의 토지관련 제도는 태조 왕건(王建)이 신라의 멸망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제도의 문란임을 알고 개국 후 전제개혁(田制改革)에 착수하였으며, 전제개혁은 당나라의 토지제도를 모방하였다.

제5대 경종(景宗)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전제개혁에 착수하였고 제8대 현종(顯宗), 제9대 덕종(德宗)을 거쳐 제11대 문종(文宗)대에 이르러 전지측량(田地測量)을 단행함으로써 토지제도와 지적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르렀다.[423]

그러나 권문세족(權門勢族)들의 농장 확대와 사원전(寺院田)의 팽창으로 국가경제의 파탄과 농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하였고 관료들에게 분급할 전지(田地)마저 부족하게 되어 토지겸병(土地兼倂)[424]을 억제하고 농장을 몰수하기 위하여 중앙에 식목도감(式目都監)[425], 찰리변위도감(拶里辨違都監)[426]을 설치하였고, 고종 때에 급전도감(給田都監)[427], 충선왕 때에 전민추쇄도감(田民推刷都監), 공민왕 때에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428] 등의 기관을 설치하여 권문세족들의 토지겸병을 억제하고 농장 몰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429]

고려는 역분전(役分田)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창안된 토지제도가 없었으나 경종

423) 김종현, 1978. 앞의 논문, pp.52~56.

424) 토지겸병(土地兼倂)이란 귀족, 토호 또는 양반관리 등에 의한 대토지 소유를 말한다. 즉 인근 소농경영 토지를 매매나 고리대 등의 방법으로 흡수·병합하여 대농장의 지주가 되는 과정으로 많은 소농민의 토지상실을 수반하고 빈농(貧農)과 무전농(無田農)을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토지소유에서 소외·탈락한 이들은 대부분 토지를 벗어 날 수 없어 다시 그 경작에 차경(借耕) 혹은 용작(傭作)으로 얽매이게 되었다.(이경식, 2004, 『한국고대·중세초기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p.81.)

425) 식목도감(式目都監)이라 함은 법제(法制)와 격식(格式)제정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426) 찰리변위도감(拶里辨違都監)이라 함은 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 폐정을 제거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다가 충렬왕 때에 찰리변위도감(察理辨違都監)으로 변경하였는데, 권세가가 점령한 전민(田民)을 색출하여 그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27) 급전도감(給田都監)이라 함은 전시과의 시행과 동시에 전지분급(田地分給)을 맡아 보던 기관을 말한다.

428)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이라 함은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탈취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한영우, 2003, 앞의 책, p.256.)

429) 박순표 외 2인, 1993, p.86.

원년(976년)에 전시과(田柴科)를 창설하여 시행하였고, 고려 말에 공양왕이 과전법(科田法)을 시행하였다.

3.1 역분전

역분전(役分田)이라 함은 직역(職役)의 분수(分數)에 의한 급전(給田)이란 뜻으로, 고려의 건국과 후 삼국의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태조를 도와준 조신(朝臣)과 군사(軍士)들에게 품계가 아닌 충성도와 공로의 대소에 따라 지급된 토지를 말한다. 역분전은 태조 23년(940년)에 실시하였으며 각 공신(功臣)들에게 공훈의 차등에 따라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던 논공행상(論功行賞)에 해당하는 제도로써 후일 공훈전(功勳田)으로 발전하였다.[430]

3.2 전시과

전시과(田柴科)라 함은 문무백관(文武百官)으로부터 말단의 부병(府兵)·한인(閑人)[431]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거나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들의 관품만이 아니라 인품까지 고려하여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전토(田土)와 시지(柴地)[432]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농지와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를 함께 주었기 때문에 전시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433]

전시과는 경종(景宗) 원년(976년)에 당나라의 반전제도(班田制度)를 본 따서 창설한 제도로써,[434]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고도 한다. 시정전시과는 목종 원년(998년)에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로, 다시 문종 30년(1076년)에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로 개정하였다.

개정전시과라 함은 전지의 지급기준에서 인품이 빠지고 관직의 높낮이가 기준이 되었으며, 무반직과 문반직을 차별했고, 시정전시과에서는 한외과(限外科)로 분류되었던 잡색원리·유외잡직이 16과와 18과 사이로 편입되었으며,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이 수급대상에 포함되었고, 모든 품등에 전지(田地)와 시지(柴地)가 지급되었으나 개정전시과에서는 16과 이하에는 전지만 지급하였다.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라 함은 과별로 전지의 지급액을 축소하여 시지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무반의 등급이 상승했는데, 등급별 지급액이 축소되어 실제 지급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산직이 제외되었으며, 개정전시과에서 빠졌던 향직이 포함되었고, 한외과가 완전히 없어져 모두 18과 내로 편입되었다.

430) 원영희, 1988,『한국지적사』(제4정판), 서울, 신라출판사, p.89. ; 한영우, 2003, 앞의 책, p.204.

431) 한인(閑人)이라 함은 6품 이하 관리의 자제로서 아직 관직을 얻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최근에는 관리가 되었으면서도 아직 보직을 얻지 못한 대기자, 즉 동정직(同正職)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는 새로운 학설이 나왔다.(한영우, 2003, 앞의 책, p.205.)

432) 시지(柴地)라 함은 땔 나무를 얻는 땅을 말하는 것으로, 초채지(樵採地)로써 관료들의 주거생활에서 취사 및 온돌 난방에 필요한 시(柴), 탄(炭), 초(草)를 조달할 수 있는 토지로써 주로 임야를 말한다.

433) 한영우, 2003, 앞의 책, pp.204~205.

434) 원영희, 1988, 앞의 책 p.89. ; 김경열, 1993, 앞의 책, pp.45~46.

3.3 과전법

과전법(科田法)이라 함은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년>에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를 말한다.

고려는 권문세족들의 토지겸병을 억제하고 농장 몰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는 사전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민수(曺敏修)·이색(李穡) 등의 반대가 있자 이들과 창왕(昌王)을 축출하고 공양왕을 즉위시킨 뒤, 1391년에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과전법은 이성계와 그를 지지하는 신진 세력들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국유(國有)를 원칙으로 하여 문무 관료에게 품계(品階)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던 제도로써, 현직 관료에게는 토지의 수조권을 주었으며 관료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함이 원칙이었으나 유족의 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그 토지의 일부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전법은 주로 신진 사대부와 그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기 때문에 과전의 지급 대상은 고려 말 당시 현직 관료였던 신진 사대부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에 의하여 세워진 새 왕조인 조선(朝鮮) 시대 토지제도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4. 양전사업

고려는 토지소유에 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지측량(田地測量)인 양전(量田)[435]을 실시하여 양안(量案)을 작성하였다. 양전사업은 기존의 토지소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소유자를 명시하고 토지의 규모와 위치·전품 등을 조사하는 작업으로, 토지의 면적 산정은 생산량을 반영한 결부제(結負制)를 채택하였으며, 국가는 양전을 통하여 조세수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고려의 양전은 말기에 조준(趙浚)[436] 등의 상소에 의하여 1389년 제33대 창왕(昌王)[437] 즉위년에 지역별로 실시하였으며, 과전법(科田法)에 의한 토지 분급(分給)의 기축이 되었다.

이어서 1391년 제34대 공양왕(恭讓王)[438] 3년에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의

435) 양전(量田)이라 함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양안(量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측량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토지조사사업 또는 지적조사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436) 조준(趙浚, 1346년~1405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이성계의 조선왕조 개창과 문물제도의 정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 말의 극도로 문란해진 토지제도의 재편을 통한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는 전제개혁안을 추진하였다.

437) 창왕(昌王, 제33대 임금, 재위기간, 1388년~1389년)은 이성계(李成桂)에 의해 부왕인 우왕(禑王, 제32대 임금, 재위 1375~1388)이 강화도로 추방된 후에 왕위에 올랐으나 1년 만에 폐위되어 강화로 쫓겨 갔다가 시해(弑害)되었다.

438) 공양왕(恭讓王, 제34대 임금, 재위기간, 1389년~1392년)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 임금으로, 이성계 일파에 의하여 폐위된 창왕(昌王)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1392년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면서 폐위된 후 살해되

토지에 대한 양전을 실시하여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와 6개도의 전결수(田結數)는 <표 1-11>과 같이 실전(實田)과 황원전(荒遠田)을 포함하여 798,127결(結)에 달하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439]
양안은 오늘날의 토지대장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남부여 조에 '量田帳籍曰 —所夫里郡田丁柱貼 今言 扶餘郡者 復上古之也'라는 기록에 양전장적(量田帳籍), 전정주첩(田丁柱貼) 등의 단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도 토지대장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연(一然)이 단지 지명 입증에만 활용하고 토지대장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삼국시대 유물도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기록할 때 부여가 소부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양전장적 즉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소부리군 전정주첩이란 문자를 인용한 것이다.
고려 공양왕 2년(1390년) 9월에 전제개혁을 마치고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실시함에 따라, 전국의 구 토지대장 즉 '공사(公私)의 전적(田積)을 수도 개성에 모아 며칠에 걸쳐서 불태우니 불이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아 왕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역대 여러 왕들이 만든 사전의 제도가 내게 이르러 갑자기 혁파되니 애석하다.' 하였다. 이 당시 공사전적을 사장하는 자는 국법에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중벌에 처했다.[440] 이로 인하여 고려시대의 토지대장은 현존하는 것이 없고 내용도 자세히 알 수 없다.

<표 1-11> 고려의 양전사업 결과

구 분	계	실 전	황원전
계	**798,127 결**	**623,097 결**	**175,030 결**
경기도	140,142	131,755	8,387
6개도	657,985	491,342	166,643

출처 : 서울특별시, 1993,『서울지적연혁지』, 1993. p.31. ; 김경열,『한국토지제도사』, 서울, 경영문화원, p.121.

고려 시대의 토지대장은 都田帳, 量田都帳, 量田帳籍, 導行, 作, 都田丁, 田籍, 田簿, 籍, 案, 元籍, 行審冊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중 도행은 준행(遵行)의 뜻이며, 준행장(遵行帳)은 타량성책(打量成冊)의 초안 또는 각 관아에 비치된 결세대장이며 작은 관아의 양안, 준전정(遵田丁)은 준전장(遵田帳)이란 뜻이다.[441]
양안은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장부이지만 실제의 부세행정은 양안을 등서한 행심책(行審冊)을 통해 이루어졌다. '행심(行審)'이란 토지의 작황을 파악하는 과정이며, 행심책은 마상초(馬上草)·마상기(馬上記)·도행장부(導行帳付)·답부(踏簿)·재탈급신기성책(災頉及新起成冊) 등으로도 일컬어졌다.

었다.

439) 김경열, 1993, 앞의 책, p.121.

440) 권영국 외 6인 역주, 1996, 譯註 高麗史 食貨志,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189.

441) 서철수, 지종덕, 2001, 앞의 책, pp.82~83.